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자립지원 대상 확대 등 》

- | | |
|-------------------------------|-------------------------------|
| ■ 한지아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2282호) | ■ 고동진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3401호) |
| ■ 김윤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2283호) | ■ 강준현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3743호) |
| ■ 정춘생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2886호) | ■ 김미애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3788호) |
| ■ 김남희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3014호) | ■ 서영석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3856호) |
| ■ 김미애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3167호) | ■ 김승수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4002호) |
| ■ 김미애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3180호) | ■ 최보운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4124호) |
| ■ 김미애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3223호) | ■ 서명옥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4243호) |
| ■ 남인순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3361호) | ■ 한정애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4274호) |

2024. 11.

보 건 복 지 위 원 회

전문위원 정경윤

목 차

I . 개요	1
II . 검토 의견	23
1. 취업제한 대상기관에 대안교육기관 추가(한지아의원안 제29조의3제1항)	23
2. 아동학대에 정당한 사유 없이 아동 양육의 책임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포함 등(김윤의원안 제3조제7호 등)	28
3. 자립지원 대상에 특별지원 보호시설 아동 포함 등 (정춘생의원안 및 서영석의원안 제38조제1항 등)	38
4. 자립지원 대상자의 범위 확대(김남희의원안 제3조제12호 신설 등) ...	54
5. 친권상실 신고 청구 및 후견인 선임 청구 요건 구체화 [김미애의원안(의안번호 제3167호) 제18조제1항 등]	66
6. 가정위탁보호자의 제한적 범위의 법정대리권 행사 [김미애의원안(의안번호 제3180호) 제20조의2 신설]	78
7. 아동권리보장원의 후견인 선임 등 법률상담 지원 [김미애의원안(의안번호 제3223호) 제20조의2 신설]	87
8. 협동돌봄센터 제도화(남인순의원안 제44조의3 신설 등)	94
9. 자립지원 조치에 ‘의료’ 추가(고동진의원안 제38조제1항)	105

10. 학교 등 취업자의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조회 절차 개선 (강준현의원안 제29조의3제7항 신설)	110
11. 아동학대사망 분석 및 관리체계 마련[김미애의원안 (의안번호 제3788호) 제29조의9부터 제29조의11 신설 등]	114
12. 아동자산형성지원 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 근거 마련 (김승수의원안 제42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신설 등)	126
13. ‘아동학대사례관리대상자’ 정의 규정 신설 등 (최보윤의원안 제3조제8호의2 및 제22조제6항 신설 등)	135
14. 아동학대관련범죄자의 아동관련기관 운영·취업 점검 사무의 지방이양(서명옥의원안 제29조의4 등)	149
15. 아동학대에 정당한 사유 없이 아동에 대하여 편의 제공을 거부하거나 차별하는 것을 포함(한정애의원안 제17조의2 신설 및 제3조제7호, 제75조제2항)	164
※ 참고자료	170
1. 여성가족부 소관 보호시설 퇴소 청소년 자립지원제도 현황	170
2. 보건복지부 소관 보호시설 퇴소 아동 자립지원제도 현황	171
3. 미성년후견인 선임청구 개요	172
4. 후견인 선임 없이도 위탁 부모에게 제한된 범위의 법정대리권 부여하는 해외 사례(독일 및 영국)	173

I. 개요

1. 한지아의원 대표발의안(의안번호 제2202282호)

가. 제안경위

- (1) 제 안 자 : 한지아의원 등 10인
- (2) 제 안 일 : 2024. 7. 26.
- (3) 회 부 일 : 2024. 7. 29.

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아동학대관련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은 사람의 경우, 일정기간 동안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등을 운영하거나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도록 하고 있음.

하지만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도교육감에 등록하고 학생을 대상으로 대안교육을 실시하는 대안교육기관의 경우, 그 운영자와 종사자 등이 직접 학생을 대면하여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가 있음에도 현행법상 취업제한 대상이 되는 아동관련기관에 포함되지 않아 취업제한 관련 규정이 적용되지 않고 있음.

이에 아동학대관련범죄전력자의 취업제한 대상 아동관련기관의 범위에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도교육감에 등록한 대안교육기관을 추가함으로써 아동학대로부터 아동을 폭넓게 보호하려는 것임(안 법률 제20218호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 제29조의3제1항제28호 신설).

2. 김윤의원 대표발의안(의안번호 제2202283호)

가. 제안경위

- (1) 제 안 자 : 김윤의원 등 14인
- (2) 제 안 일 : 2024. 7. 26.
- (3) 회 부 일 : 2024. 7. 29.

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가사소송법」에 따르면 양육비 지급을 하지 아니한 자에 대해서는 법원이 이행 명령을 할 수 있고, 이행 명령에 불응할 경우 감치명령을 할 수 있으며, 감치명령 결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감치명령 결정을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사람에 대해서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이러한 규정들에도 불구하고 여성가족부의 「2021년 한부모가족 실태조사」에 따르면, ‘양육비를 한 번도 받지 못하였다’고 응답한 비율이 72.1%에 이르고 있으며, ‘최근까지 정기지급을 받았다’는 답변은 15%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남.

양육비의 지급은 아동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기본적인 양육의 의무인바, 지급 의무의 불이행은 곧 아동학대라고도 할 수 있음.

이에 아동학대의 정의에 ‘부양의무가 있는 보호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아동 양육의 책임을 이행하지 아니한 것’을 추가하고, 부양의무가

있는 아동에 대한 정당한 사유 없이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7호, 제17조제6호의2 신설 및 제71조제1항제4호 신설 등).

3. 정춘생의원 대표발의안(의안번호 제2202886호)

가. 제안경위

- (1) 제 안 자 : 정춘생의원 등 10인
- (2) 제 안 일 : 2024. 8. 16.
- (3) 회 부 일 : 2024. 8. 19.

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보호자가 아동을 양육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하거나 양육할 능력이 없는 경우의 아동을 ‘보호대상아동’으로 정의하고, 이들의 자립 지원을 위해 필요한 다양한 지원 방안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자립지원의 대상이 되는 아동을 아동복지시설에서 보호 중인 아동 등 일부 아동만으로 규정하고 있어, 이에 해당하지 않는 아동의 경우 자립지원의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동 정책의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문제가 있음.

특히,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별지원 보호시설’은 주로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피해 등을 입은 19세 미만의 피해자에게 보호 및 숙식 등을 지원하는 시설로, 동 시설에 거주하는 아동의 대다수는 원가정으로 돌아갈 수 없는 형편에 놓여 있음. 이러한 사정을 고려할 때 이들에게는 자립 외에는 대안이 없으나 현행법에 따른 자립지원 대상에 포함되어 있지 않음.

이에 특별지원 보호시설에서 보호 중인 아동에 대하여 자립지원금

지급, 자립지원계획 수립, 자립지원전담기관으로부터의 관리, 자산형성 지원 등 자립지원 사업을 실시하도록 하여 자립지원의 범위를 확대하려는 것임(안 제38조제1항 등).

4. 김남희의원 대표발의안(의안번호 제2203014호)

가. 제안경위

(1) 제 안 자 : 김남희의원 등 11인

(2) 제 안 일 : 2024. 8. 20.

(3) 회 부 일 : 2024. 8. 21.

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자립이 필요한 아동에 대하여 자립정착금 지원 등 자립을 준비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자립지원’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 있음.

그런데 자립지원이 필요한 아동의 범위에 비하여 현행법에 따른 자립지원 대상 아동의 범위가 지나치게 협소하다는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음.

현행법은 자립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기준으로 아동보호시설이나 가정위탁 등 보건복지부의 소관에 속한 아동 관련 기관 등에 거주하거나 거주 경험에 있는 자를 규정하고 있는데, 아동복지시설 외에도 장애인 거주시설이나 청소년복지시설 등 자립 지원이 필요한 아동이 거주하는 시설이 다수 있음.

이에 현행법에 따라 자립지원을 받을 수 있는 자를 ‘자립지원아동등’으로 정의하고, 그 범위를 다른 법률에 따라 보호대상아동을 보호하고 있는 시설에 거주하고 있거나 거주한 경험이 있는 아동까지 확대함으로써 자립지원에 관한 부처 칸막이를 없애려는 것임(안 제3조제12호 신설 등).

5. 김미애의원 대표발의안(의안번호 제2203167호)

가. 제안경위

- (1) 제 안 자 : 김미애의원 등 10인
- (2) 제 안 일 : 2024. 8. 23.
- (3) 회 부 일 : 2024. 8. 26.

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등은 보호자가 없는 아동을 발견한 경우 필요 시 법원에 후견인의 선임을 청구하는 등 아동을 위한 법적인 보호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친권상실 신고의 청구, 후견인 선임 청구 등의 역할이행에 소극적이고, 아동의 후견인이 선임되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므로 아동의 법적 보호에 공백이 발생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지방자치단체가 법원에 친권상실 신고의 청구 등을 할 수 있는 사유를 대통령령에서 구체화하도록 위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법원에 적극적으로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기아(棄兒) 등 보호자가 없는 아동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역할과 책임을 명확히 규정하여 친권 남용, 후견인 부재 등으로 인해 아동의 복지가 침해받는 상황을 해소하고자 함(안 제18조 및 제19조).

6. 김미애의원 대표발의안(의안번호 제2203180호)

가. 제안경위

- (1) 제 안 자 : 김미애의원 등 10인
- (2) 제 안 일 : 2024. 8. 26.
- (3) 회 부 일 : 2024. 8. 27.

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가정위탁 제도는 보호대상아동의 보호를 위하여 성범죄, 가정폭력, 아동학대, 정신질환 등의 전력이 없는 요건에 적합한 가정에 보호대상아동을 일정 기간 위탁하는 것으로, 보호조치 유형 중 가정위탁 유형이 차지하는 비율은 약 30% 수준임.

그런데 위탁가정에서의 보호자는 아동의 법정대리인이 아니므로, 아동의 통장 발급, 휴대폰 개통, 수술·입원 등 친권자 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한 상황에서 아동을 위하여 동의권을 행사할 수 없음.

참고로, 위탁가정의 보호자가 법정대리인으로서 권한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민법」에 따른 미성년후견인이 되어야 하나, 법적 절차의 복잡성 및 미성년후견인이 될 경우 지니게 될 법적 책임에 대한 부담감 등으로 인하여 위탁가정의 보호자 중 보호대상아동의 미성년후견인이 되는 경우는 극히 드뭄.

이에 위탁가정에서의 보호자가 미성년후견인이 되지 않더라도 최대 2년의 범위에서 금융계좌 개설 등 아동의 일상 생활에서 친권자 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한 사항에서 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여 보호대상아동에 대하여 일정한 권한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0조의2 신설).

7. 김미애의원 대표발의안(의안번호 제2203223호)

가. 제안경위

- (1) 제 안 자 : 김미애의원 등 10인
- (2) 제 안 일 : 2024. 8. 27.
- (3) 회 부 일 : 2024. 8. 28.

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친권자의 친권 남용이나 아동학대 등이 있는 경우 지자체장 등이 법원에 친권행사의 제한 또는 친권상실의 선고를 청구하도록 하고, 친권자 또는 후견인이 없는 아동의 경우 지자체장 등이 법원에 후견인의 선임을 청구하도록 규정함.

그러나 지자체의 친권·미성년후견제도 관련 지식과 이해도 부족, 법적 절차에 대한 낮은 접근성 등으로 인하여 실제로 지자체장의 친권상실 등 선고 청구나 후견인 선임 청구는 활발히 이행되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있음.

이로 인하여 보호대상아동의 상당수가 부모의 사망·장기간 소재불명·친권상실 등으로 친권 행사가 곤란함에도 후견인이 선임되지 않아,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한 입·퇴원·수술, 금융계좌 개설, 핸드폰 개통, 입학·전학 등에서 어려움을 겪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음.

이에 아동복지시설의 장, 학교의 장, 위탁가정의 보호자, 보호대상아

동의 후견인이 아동권리보장원의 장에게 법률상담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아동권리보장원에서는 일정 요건을 갖춘 기관 등에 이를 위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후견인 선임 절차 등에 어려움을 느끼고 있는 위탁가정의 보호자 등을 지원하려는 것임(안 제20조의2 신설).

8. 남인순의원 대표발의안(의안번호 제2203361호)

가. 제안경위

- (1) 제 안 자 : 남인순의원 등 14인
- (2) 제 안 일 : 2024. 8. 29.
- (3) 회 부 일 : 2024. 8. 30.

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돌봄서비스의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부모와 돌봄종사자가 협력하여 공동으로 운영하는 돌봄 공동체인 ‘초등 마을 방과 후 돌봄 (협동돌봄센터)’이 10년 이상 운영되고 있음. 협동돌봄센터는 비영리조합으로 결성되며, 돌봄의 수요자인 부모가 돌봄의 주체로 참여한다는 점에서 투명성을 높일 뿐만 아니라 공동체 정신의 회복과 함양이라는 측면에서도 의미가 있음.

하지만 현재 지역사회에서 자체적으로 운영 중인 협동돌봄센터는 법적 근거가 없어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이로 인해 돌봄 종사자들 또한 경력 인정을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상황임.

이에 협동돌봄센터의 설치·운영 근거 규정을 신설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협동돌봄센터의 안정적인 운영을 통해 돌봄 문제 해소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44조의3 신설 등).

9. 고동진의원 대표발의안(의안번호 제2203401호)

가. 제안경위

- (1) 제 안 자 : 고동진의원 등 20인
- (2) 제 안 일 : 2024. 8. 30.
- (3) 회 부 일 : 2024. 9. 2.

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아동복지시설이나 가정위탁으로 보호조치 중인 보호대상 아동이 18세가 되어 보호조치를 종료하고 해당시설에서 퇴소하는 경우 자립에 필요한 주거, 생활, 교육, 취업 등을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반면, 의료 지원에 대한 명시적인 규정은 없음.

이 때문에 이들은 의료비 지출에 대한 경제적 부담으로, 적극적으로 치료를 받지 않고 안타깝게 적절한 치료시기를 놓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보호대상아동이 자립하게 되는 경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는 사항에 의료비를 추가함으로써 이들에 대한 보호와 지원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38조제1항제1호).

10. 강준현의원 대표발의안(의안번호 제2203743호)

가. 제안경위

- (1) 제 안 자 : 강준현의원 등 12인
- (2) 제 안 일 : 2024. 9. 6.
- (3) 회 부 일 : 2024. 9. 9.

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법원이 아동학대 관련 범죄자에게 형을 선고하는 경우 아동 관련 기관에 일정 기간 동안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 제공을 제한하는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도록 하고 있으며, 아동 관련 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취업 중이거나 취업하려는 사람,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 중이거나 노무를 제공하려는 사람에 대하여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을 확인하도록 하고 있음.

이에 따라 현재 아동 관련 기관 중 학교, 유치원 및 어린이집의 경우 해당 기관의 장이 개별적으로 취업제한 대상자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해야 하는 실정인데, 이로 인하여 학교와 경찰서 인력의 행정력이 낭비되고 있으며, 현장에서 인력채용이 적기에 이루어지기 어렵다는 등의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

참고로 지난해 말 시행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은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하여 교육감이나 교육장으로 하여금 학교 등 성범죄자 취업 제한을 받는 기관에 취업하려는 자에 대하여

성범죄자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였음.

이에 동 법률에도 교육감 또는 교육장이 어린이집, 유치원 및 학교에 취업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 제도 운영의 미비점을 보완·개선하려는 것임(안 제29조의3제7항 신설).

11. 김미애의원 대표발의안(의안번호 제2203788호)

가. 제안경위

- (1) 제 안 자 : 김미애의원 등 11인
- (2) 제 안 일 : 2024. 9. 9.
- (3) 회 부 일 : 2024. 9. 10.

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아동학대로 인한 사망 사건 이후 대책이 계속 발표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사건이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아동학대로 인한 사망을 방지하기 위한 실질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임.

아동학대 사망 사건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개별 아동사망사건으로부터 현재 아동보호체계의 미흡한 점을 찾고, 이에 대한 개선사항을 반영하여 아동보호체계를 개혁하는 노력이 필요함. 영국이나 일본 등 국가에서도 아동학대 사망 사건 분석에 관하여 법령이나 지침 등을 마련하고 있음.

이에 아동학대로 인한 사망을 예방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아동학대 사망 사건을 분석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위하여 아동학대 사망사건분석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하며, 필요한 경우 관계자에 대한 면담 및 자료 요청 등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아동학대사망이 재발되지 않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9조의9 및 제29조의10 신설 등).

12. 서영석의원 대표발의안(의안번호 제2203856호)

가. 제안경위

- (1) 제 안 자 : 서영석의원 등 11인
- (2) 제 안 일 : 2024. 9. 10.
- (3) 회 부 일 : 2024. 9. 11.

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가정에서 안정적인 양육이 불가하여 타 가정에 위탁보호 중이거나 아동복지시설에 입소하여 거주 중인 아동에 대하여 위탁보호 종료나 시설 퇴소 후의 자립을 위한 지원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별지원 보호시설에서 보호 중인 아동의 경우 아동복지시설에 입소한 아동과 유사한 수준의 자립지원이 필요하나, 이들을 소관하는 주무 부처가 각각 여성가족부와 보건복지부로 상이하고 현행법 또한 보건복지부의 소관임에 따라 특별지원 보호시설에 거주 중인 아동은 현행법에 따른 자립지원 대상에 포함되지 못하고 있음.

이에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별지원 보호시설에서 보호 중인 아동도 현행법에 따른 자립지원 대상에 포함되도록 하여, 부처 간 정책 칸막이로 인한 복지서비스 제공의 한계를 해소하려는 것임(안 제38조제1항, 제38조의2제1항·제3항 및 제39조의2제1항).

13. 김승수의원 대표발의안(의안번호 제2204002호)

가. 제안경위

- (1) 제 안 자 : 김승수의원 등 11인
- (2) 제 안 일 : 2024. 9. 13.
- (3) 회 부 일 : 2024. 9. 19.

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보건복지부는 아동을 위한 자산형성지원사업으로서 보호대상아동, 기초생활수급가정아동 등이 후원 등을 통하여 일정액을 적립하면 국가가 1:1 매칭펀드로 동일 금액을 지원하여 만 18세 이후 사회진출 시 자립자금 등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아동발달지원계좌 사업’을 실시 중임.

2007년 시작된 동 사업의 대상아동과 매칭금액 및 계좌적립금은 꾸준히 확대되어 왔으나, 이를 체계적으로 운영·관리하는 통합시스템은 부재한 상황으로, 이로 인해 전반적인 사업운영의 효율성이 저하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자산형성지원사업 운영에 필요한 정보를 통합관리하기 위한 아동자산형성지원 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42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신설 등).

14. 최보훈의원 대표발의안(의안번호 제2204124호)

가. 제안경위

- (1) 제 안 자 : 최보훈의원 등 10인
- (2) 제 안 일 : 2024. 9. 20.
- (3) 회 부 일 : 2024. 9. 23.

나. 제안이유

현행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에서 아동학대 신고가 접수되면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아동학대 여부를 판단하는 ‘아동학대사례판단’을 실시하고 있음.

그러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아동학대 사례로 판단된 사람을 아동학대 처벌법에 따른 범죄자로 볼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용어를 사용해 범죄자로 오인되거나 불필요한 낙인효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문제가 있음. 또한, 아동통합정보시스템에 입력된 아동학대 사례판단 결과 등의 정보 보존 기간이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아 개인의 권익이 과도하게 침해될 수 있다는 지적도 있음.

이에 아동학대사례판단에 따른 아동학대 행위를 한 자를 ‘아동학대사례관리대상자’로 규정하고, 관련 정보를 명확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하여 아동학대사례 관리 체계를 보다 강화하고자 함.

다. 주요내용

- 1) 아동학대사례판단에 따라 아동학대로 판단한 사례에서 아동학대를 행한 자를 ‘아동학대사례관리대상자’로 정의하고, 이를 판단하기 위한 아동학대사례판단위원회를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소속으로 둠(안 제3조제8호의2 및 제22조제6항 신설 등).
- 2) 아동학대사례관리대상자에 대한 상담·조사, 교육 및 신분조회 등을 아동학대행위자와 유사한 수준으로 규정함(안 제22조제3항제2호 및 제22조의3제1항 등).
- 3)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으로 하여금 아동학대사례판단이 완료된 후 피해아동에 대한 보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되, 긴급히 필요한 경우 아동학대사례판단이 완료되기 전이라도 보호계획 수립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22조의4).
- 4) 아동정보시스템에 아동학대사례관리대상자에 대한 정보를 입력·관리하도록 하되, 그 정보의 보존 기간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안 제28조의2제2항).

15. 서명옥의원 대표발의안(의안번호 제2204243호)

가. 제안경위

- (1) 제 안 자 : 서명옥의원 등 10인
- (2) 제 안 일 : 2024. 9. 24.
- (3) 회 부 일 : 2024. 9. 25.

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아동학대관련범죄자의 아동관련기관 운영·취업 등 여부를 연 1회 이상 점검·확인해야 함. 그러나 실질적으로는 이와 관련된 권한과 사무를 아동관련기관의 설치 또는 설립인가·허가·신고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임받아 처리 중임.

아동관련기관의 설치 또는 설립인가·허가·신고를 관할하는 주체와 그 아동관련기관을 점검·확인하는 등의 사무처리 주체가 상이하여, 이 과정에서 책임과 권한의 불일치로 행정 효율성이 저하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중앙행정기관의 권한·사무를 지방자치단체에 이양하고, 사무처리 주체를 명확하게 하여 자치분권 확대 및 지역 행정수요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고자 함(안 제29조의4, 제29조의5, 제68조 및 제75조).

16. 한정애의원 대표발의안(의안번호 제2204274호)

가. 제안경위

- (1) 제 안 자 : 한정애의원 등 10인
- (2) 제 안 일 : 2024. 9. 25.
- (3) 회 부 일 : 2024. 9. 26.

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로 아동이 자신의 연령 등에 따른 어떠한 종류의 차별도 받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시책을 강구할 것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식당, 카페, 호텔 등 장소에서 아동의 소음이나 안전 문제 발생 가능성 등을 이유로 아동의 출입을 제한하는 노키즈존(No Kids Zone)이 늘어나고 있음. 이는 연령을 이유로 아동을 차별을 받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는 현행법의 취지에 반하는 것임. 또한, 노키즈존의 확산은 대중으로 하여금 아동이 잠재적으로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존재라는 부정적인 인식을 갖도록 하여 아동을 양육하기 어려운 환경을 조성하는 것에 해당됨.

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아동에게 편의 제공을 거부하거나 차별하는 행위를 아동학대로 규정함으로써 아동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 문화를 시정하려는 것임(안 제17조의2 신설 및 제3조제7호, 제75조제2항).

II. 검토 의견

1. 취업제한 대상기관에 대안교육기관 추가(한지아의원안 제29조의3제1항)

가. 개정안의 주요내용

- 개정안은 법원이 아동학대관련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하는 경우 동시에 선고하도록 되어 있는 취업제한명령의 대상기관에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대안교육기관을 추가하려는 것임(안 제29조의3제1항제28호 신설).

현 행	개 정 안
법률 제20218호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 제29조의3(아동관련기관의 취업 제한 등) ① 법원은 아동학대 관련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 를 선고하는 경우에는 판결(약 식명령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로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 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종료하 거나 집행이 유예·면제된 날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그 형이 확정된 날을 말한다) 부터 일정기간(이하 “취업제한	법률 제20218호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 제29조의3(아동관련기관의 취업 제한 등) ① ----- ----- ----- ----- ----- ----- ----- ----- -----

기간”이라 한다) 동안 다음 각 호에 따른 시설 또는 기관(이하 “아동관련기관”이라 한다)을 운영하거나 아동관련기관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도록 하는 명령(이하 “취업제한명령”이라 한다)을 아동학대관련범죄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약식명령의 경우에는 고지를 말한다)하여야 한다. 다만,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은 경우나 그 밖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 27. (생략)

<신 설>

② ~ ⑦ (생략)

This image shows a full page of handwriting practice paper. It features ten identical rows of horizontal dashed lines, each row consisting of three parallel dashes. The first row has a small black dot at its beginning, serving as a starting point for writing. The rest of the page is blank, providing space for practicing letter formation and alignment.

1. ~ 27. (현행과 같음)

28.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
률」 제2조제2호의 대안교육
기관

② ~ ⑦ (현행과 같음)

나. 주요 검토 사항

- 현행 「아동복지법」 제29조의3은 아동학대관련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하는 경우 일정기간 동안 아동관련기관에 취업 또는 노무를 제공할 수 없도록 하는 취업제한명령을 동시에 선고하도록 하면서, 해당 아동관련기관을 아동권리보장원, 지방자치단체, 아동보호전문기관, 가정위탁지원센터, 아동복지시설 등으로 규정하고 있음.

「아동복지법」

제29조의3(아동관련기관의 취업제한 등) ① 법원은 아동학대관련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하는 경우에는 판결(약식명령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유예·면제된 날(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그 형이 확정된 날을 말한다)부터 일정기간(이하 “취업제한기간”이라 한다) 동안 다음 각 호에 따른 시설 또는 기관(이하 “아동관련기관”이라 한다)을 운영하거나 아동관련기관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도록 하는 명령(이하 “취업제한명령”이라 한다)을 아동학대관련범죄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약식명령의 경우에는 고지를 말한다)하여야 한다. 다만,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은 경우나 그 밖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보장원, 지방자치단체(전담공무원, 민간전문인력, 아동학대전담공무원으로 한정한다), 제37조에 따른 취약계층 아동 통합서비스 수행기관, 아동보호전문기관, 제44조의2에 따른 다함께돌봄센터, 제48조에 따른 가정위탁지원센터 및 제52조의 아동복지시설
2.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의6의 긴급전화센터, 같은 법 제5조의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 및 같은 법 제7조의2의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3.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의 건강가정지원센터
4.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2조의 다문화가족지원센터
5.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성매매피해자등을 위한 지원시설 및 같은 법 제10조의 성매매피해상담소
6.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의 성폭력피해상담소 및 같은 법 제12조의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및 같은 법 제18조의 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
7.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3호의 어린이집, 같은 법 제7조에 따른 육아종합지원센터 및 같은 법 제26조의2에 따른 시간제보육서비스지정기관
8.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의 유치원
9. 「의료법」 제3조의 의료기관(같은 법 제2조의 의료인에 한정한다)
10. 「장애인복지법」 제58조의 장애인복지시설
11.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정신건강복지센터, 정신건강증진시설, 정신요양시설 및 정신재활시설

12. 「주택법」 제2조제3호의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경비업무 종사자에 한정한다)
 13. 「청소년기본법」 제3조에 따른 청소년시설, 청소년단체
 14. 「청소년활동진흥법」 제2조제2호의 청소년활동시설
 15.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29조제1항의 청소년상담복지센터, 같은 법 제30조의 이주배경청소년지원센터 및 같은 법 제31조 각 호의 청소년쉼터, 청소년자립지원관, 청소년치료재활센터
 16. 「청소년 보호법」 제35조의 청소년 보호·재활센터
 17.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체육시설 중 아동의 이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체육시설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하는 체육시설
 18. 「초·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 및 같은 법 제28조에 따라 학습부진아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는 기관
 19.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학원 및 같은 조 제2호의 교습소 중 아동의 이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학원과 교습소로서 교육부장관이 지정하는 학원·교습소
 20.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9조의 한부모가족복지시설
 21. 아동보호전문기관 또는 학대피해아동쉼터를 운영하는 법인
 22.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
 23. 「민법」 제32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의 설립 허가를 받아 아동인권, 아동복지 등 아동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법인(대표자 및 아동을 직접 대면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 한정한다)
 24. 「아이돌봄 지원법」 제11조에 따른 서비스제공기관
 25. 「입양특례법」 제20조에 따른 입양기관
 26. 「모자보건법」 제15조의18에 따른 산후조리도우미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을 모집하거나 채용하는 기관(직접 산후조리도우미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에 한정한다)
 27. 「모자보건법」 제15조에 따른 산후조리원
- ② ~ ⑦ (생략)

□ 한편, 개정안과 같이 대안교육을 실시하는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1) 제2조제2호의 대안교육기관²⁾은 현재까지 아동학대관련 범죄경력자의 취업제한명령 대상기관에 포함되어 있지 않음.

1) 인가받은 대안학교 외에 새롭게 대안교육기관 등록제를 도입함으로써 일정한 기준을 갖추어 등록한 경우 공식적인 대안교육기관으로서의 법적 지위를 부여하는 등 대안교육기관에 재학하는 학생을 보호하고 인가 대안학교 외의 다양한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제도적 기반 마련을 위하여 2021.1.12. 법률 제정(2022.1.13.시행)

2)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대안교육"이란 개인적 특성과 필요에 맞는 다양한 교육내용 및 교육방법을 통하여 개개인의 소질과 적성 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학습자 중심의 교육을 말한다.
2. "대안교육기관"이란 「초·중등교육법」 제4조에 따른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이 법 제5조에 따라 등록하여 대안교육을 실시하는 시설·법인 또는 단체(이하 "시설등"이라 한다)를 말한다.

- 참고로, 대안교육을 실시하는 대안교육기관은 2024년 6월 현재 256개 기관이 설립되어 운영 중에 있음.

< 대안교육기관 개요 >

□ 대안교육기관 개요

- (대안교육기관) 「초·중등교육법」 제4조에 따른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시도교육청에 등록하여 대안교육*을 실시하는 시설·법인 또는 단체

* 개인적 특성과 필요에 맞는 다양한 교육내용 및 교육방법을 통하여 개개인의 소질과 적성 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학습자 중심의 교육(「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제2조)

- (대안교육기관 등록제)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안교육기관을 운영하려는 자는 시·도 교육청에 등록하여 운영

※ 17개 교육청, 256개 기관 등록('24.6월 기준)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78	9	7	7	12	11	2	1	69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합계
8	4	7	6	11	11	7	6	256

* 자료 : 교육부

- 취업제한은 아동학대 행위자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 측면이 있다는 점에서 대상이 되는 기관의 특성, 유사입법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취업제한명령이 적용되는 대상기관의 범위를 결정할 필요가 있으나, 대안교육기관 종사자는 아동과 관련하여 교육서비스 등을 제공하고 있어 아동과 상시적으로 밀접한 접촉을 할 개연성이 높고, 현재도 유치원, 학교, 학원 등 아동에게 교육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을 취업제한기관으로 규정하고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금번 개정안은 바람직한 것으로 보임.

개정안에 대하여 보건복지부는 개정 필요성에 공감한다는 의견임.

2. 아동학대에 정당한 사유 없이 아동 양육의 책임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포함 등(김윤의원안 제3조제7호 등)

가. 개정안의 주요 내용

- 개정안은 ‘아동학대’의 정의에 ‘부양의무가 있는 자를 포함한 보호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아동 양육의 책임을 이행하지 아니한 것’을 추가하고, 금지행위에 ‘정당한 사유 없이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를 규정하면서 이를 위반하는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7호, 제17조제6호의2 신설 및 제71조제1항제4호 신설 등).

현행	개정안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6. (생략) 7.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u>것</u> 을 말한다.	제3조(정의) ----- -----. 1. ~ 6. (현행과 같음) 7. ----- ----- ----- ----- ----- ----- ----- ---- <u>것</u> 및 정당한 사유 없이 <u>보호자(아동에 대한 부양의무가 있는 자를 포함한다)로서</u>

7의2. ~ 11. (생략)
제17조(금지행위)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 6. (생략)

<신설>

7. ~ 11. (생략)
제71조(벌칙) ① 제17조를 위반한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
라 처벌한다.

1. 1의2. (생략)

2. 제3호부터 제8호까지에 해당
하는 행위를 한 자(제5호 중
가정폭력에 아동을 노출시키
는 행위로 인한 경우 「가정
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가정폭력행위자를 말한다)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생략)

<신설>

아동 양육의 책임을 이행하지
아니한 것을-----.

7의2. ~ 11. (현행과 같음)

제17조(금지행위) -----

-----.

1. ~ 6. (현행과 같음)

6의2. 부양의무가 있는 아동에
대한 정당한 사유 없이 양육
비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행
위

7. ~ 11. (현행과 같음)

제71조(벌칙) ① -----

-----.

1. 1의2. (현행과 같음)

2. -----제8호까지(제6호의2는
제외한다)-----

-----.

3. (현행과 같음)

4. 제6호의2에 해당하는 행위를

4. (생략) ②·③ (생략)	<u>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u> <u>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u> 5. (현행 제4호와 같음) ②·③ (현행과 같음)
--------------------------------	--

나. 주요 검토 사항

- 양육비 이행과 관련한 현행법 체계를 보면,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양육비 이행법」)에서 “비양육부·모는 양육부·모와의 합의 또는 법원의 판결 등에 따라 정하여진 양육비를 양육비 채권자에게 성실히 지급하여야 한다”는 원칙을 규정하면서, 미성년 자녀의 양육비 청구와 이행확보 지원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양육비이행관리원’을 설립하여 양육비에 관한 상담 및 협의, 양육비 청구 및 이행확보를 위한 법률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있고(제3조제2항 본문, 제7조제1항, 제10조 및 제11조 등),

「가사소송법」에서는 양육비를 정기적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는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2회 이상 양육비를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양육비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가정법원이 양육비채무자에 대하여 정기적 급여채무를 부담하는 자가 급여에서 정기적으로 양육비를 공제하여 양육비 채권자에게 직접 지급하도록 명하는 ‘양육비지급명령’, 양육비 지급 이행을 확보할 수 있도록 ‘담보제공명령’ 및 미이행 시 양육비 일시금지급을 명할 수 있도록 규정(제63조의2제1항, 제63조의3 제1항·제2항 및 제4항)하고 있음.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미성년 자녀에 대한 양육 책임)

① 부 또는 모는 혼인상태 및 양육여부와 관계없이 미성년 자녀가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의식주, 교육 및 건강 등 모든 생활영역에서 최적의 성장환경을 조성하여야 한다.

② 비양육부·모는 양육부·모와의 합의 또는 법원의 판결 등에 따라 정하여진 양육비를 양육비 채권자에게 성실히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비양육부·모가 부양능력이 없는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그 비양육부·모의 부모가 지급하여야 한다.

제7조(양육비이행관리원) ① 미성년 자녀의 양육비 청구와 이행확보 지원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양육비이행관리원(이하 “이행관리원”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② ~ ⑧ (생략)

제10조(양육비에 관한 상담 및 협의 성립의 지원) ① 비양육부·모 또는 양육부·모는 당사자 간 양육비 부담 등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경우 이행관리원의 장에게 양육비에 관한 상담 또는 협의 성립의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② · ③ (생략)

제11조(양육비 청구 및 이행확보를 위한 법률지원 등의 신청) ① 양육부·모는 이행관리원의 장에게 자녀의 인지청구 및 양육비 청구를 위한 소송 대리 등 양육비 집행권원 확보를 위한 법률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양육비 채권자는 합의 또는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양육비를 양육비 채무자로부터 지급받지 못할 경우 이행관리원의 장에게 양육비 직접지급명령, 이행명령 신청의 대리 등 양육비 이행확보에 필요한 법률지원이나 양육비 채권 추심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③ · ④ (생략)

「가사소송법」 제63조의2(양육비 직접지급명령) ① 가정법원은 양육비를 정기적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는 사람(이하 “양육비채무자”라 한다)이 정당한 사유 없이 2회 이상 양육비를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 정기금 양육비 채권에 관한 집행권원을 가진 채권자(이하 “양육비채권자”라 한다)의 신청에 따라 양육비채무자에 대하여 정기적 급여채무를 부담하는 소득세원천징수의무자(이하 “소득세원천징수의무자”라 한다)에게 양육비채무자의 급여에서 정기적으로 양육비를 공제하여 양육비채권자에게 직접 지급하도록 명할 수 있다.

② ~ ⑥ (생략)

제63조의3(담보제공명령 등) ① 가정법원은 양육비를 정기금으로 지급하게 하는 경우에 그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양육비채무자에게 상당한 담보의 제공을 명할 수 있다.

② 가정법원은 양육비채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이행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양육비채권자의 신청에 의하여 양육비채무자에게 상당한 담보의 제공을 명할 수 있다.

③ (생략)

④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양육비채무자가 담보를 제공하여야 할 기간 이내에 담보를 제공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은 양육비채권자의 신청에 의하여 양육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시금으로 지급하도록 명할 수 있다.

⑤ · ⑥ (생략)

□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사소송법」에 따른 직접지급명령제도의 경우 양육비 채무자가 일정한 급여를 지급받고 있는 급여소득자, 그리고 양육비 채무자 명의의 재산이 존재하는 경우에만 가능하다는 등 실효성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³⁾.

3) 허민숙, 『양육비 이행 관리 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과제』, 국회 입법조사처 입법·정책보고서 제19호, 2018. 12 pp.26~27.

□ 이에 따라 양육비이행관리원⁴⁾ 통계에 따르면 양육비 지급 의무 이행률은 2021년 53.8%, 2022년 59.1%, 2023년 66.5% 수준에 그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음.

< 양육비 지급 의무 이행 현황 >

(단위: 건)

구분	양육비 지급 의무 확정(건)	양육비 지급 의무 이행(건)
총 계	25,842(100%)	11,064(42.8%)
2015.3~	2,427(100%)	514(21.2%)
2016	2,831(100%)	1,044(36.9%)
2017	2,783(100%)	1,018(36.6%)
2018	3,494(100%)	1,146(32.8%)
2019	4,538(100%)	1,993(43.9%)
2020	2,428(100%)	965(39.7%)
2021	2,602(100%)	1,400(53.8%)
2022	2,273(100%)	1,343(59.1%)
2023	2,466(100%)	1,641(66.5%)

* 자료: 여성가족부, 양육비이행관리원

□ 특히 ‘2021년 한부모가족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양육비를 한 번도 받지 못하였다고 응답한 비율이 72.1%에 이를 정도로 높고, 최근까지 정기 지급을 받았다는 답변은 15%에 불과한 실정이기도 함⁵⁾.

□ 개정안은 부양의무 있는 자를 포함한 보호자가 아동을 양육할 책임을 이행하지 아니한 것을 아동학대의 범주에 포함시키면서, 부양의무가 있는 아동에 대한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것을 금

4)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양육비이행관리원) ① 미성년 자녀의 양육비 청구와 이행확보 지원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건강가정기본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건강가정진흥원(이하 “한국건강가정진흥원”이라 한다)에 양육비이행관리원(이하 “이행관리원”이라 한다)을 둔다.

5) 여성가족부, 『2021년 한부모가족실태조사』, p.241.

지하고 이에 대한 처벌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특히 비양육부모로 하여금 미성년 자녀의 생존권을 보호하고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위하여 양육비 지급 의무는 반드시 이행해야 하는 것이라는 인식을 제고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 다만, 양육비 지급의무 및 양육비 채무 불이행에 대한 제재는 「양육비 이행법」 등에 별도로 규정되어 있다는 점과 함께, 개정안에서 ‘부양의무가 있는 아동에 대한 정당한 사유 없이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행위’를 금지행위로 규정하고 있으나 아동매매나 학대 등 다른 금지행위⁶⁾의 경우 아동에게 주로 물리적·직접적 피해를 주는 경우로서 그 성격이 다소 다르다는 점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겠음.

「양육비 이행법」 제27조(벌칙) ① (생략)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생략)

2. 「가사소송법」 제68조제1항제1호 또는 제3호에 따른 감치명령 결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감치명령 결정을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사람. 다만,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가사소송법」 제64조(이행 명령) ① 가정법원은 판결, 심판, 조정조서,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또는 양육비부담조서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의무를 이행하여야 할 사람이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일정한 기간 내에 그 의무를 이행할 것을 명할 수 있다.

1. 금전의 지급 등 재산상의 의무

2. · 3. (생략)

② (생략)

제67조(의무 불이행에 대한 제재) ① 당사자 또는 관계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제29조, 제63조의2제1항, 제63조의3제1항·제2항 또는 제64조의 명령이나 제62조의 처분을 위반한 경우에는 가정법원, 조정위원회 또는 조정담당판사는 직권으로 또는 권리자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② · ③ (생략)

제68조(특별한 의무 불이행에 대한 제재) ① 제63조의3제4항 또는 제64조의 명령을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가정법원은 권리자의 신청에 의하

여 결정으로 30일의 범위에서 그 의무를 이행할 때까지 의무자에 대한 감치를 명할 수 있다.

1. 금전의 정기적 지급을 명령받은 사람이 정당한 이유 없이 3기(期) 이상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2. (생략)

3. 양육비의 일시금 지급명령을 받은 사람이 30일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② (생략)

□ 아울러, 「양육비 이행법」은 2020. 6. 9. 개정(2021. 6. 10. 시행)으로 양육비 채무자가 감치명령 결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여성가족부장관은 지방경찰청장에게 해당 양육비 채무자의 운전면허 정지처분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였고,

2021. 1. 12. 개정(2021. 7. 13. 시행)으로 양육비 채무 불이행으로 인하여 가정법원에서 감치명령 결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양육비 채무자에 대한 출국금지 및 명단 공개 등을 규정하는 등 양육비 이행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한 개정을 거쳐 왔고,

양육비 선지급제 실시 등에 관한 내용도 2024. 10. 16. 개정되어 시행을 앞두고 있으므로 진행추이를 지켜 볼 필요도 있어 보임.

6) 「아동복지법」 제17조(금지행위)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아동을 매매하는 행위
2.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이를 매개하는 행위 또는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
3.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
4. 삭제 <2014. 1. 28.>
5.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가정폭력에 아동을 노출시키는 행위로 인한 경우를 포함한다)
6.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아동을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양육·치료 및 교육을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
7. 장애를 가진 아동을 공중에 관람시키는 행위
8. 아동에게 구걸을 시키거나 아동을 이용하여 구걸하는 행위
9. 공중의 오락 또는 흥행을 목적으로 아동의 건강 또는 안전에 유해한 곡예를 시키는 행위 또는 이를 위하여 아동을 제3자에게 인도하는 행위
10. 정당한 권한을 가진 알선기관 외의 자가 아동의 양육을 알선하고 금품을 취득하거나 금품을 요구 또는 약속하는 행위
11. 아동을 위하여 증여 또는 급여된 금품을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

< 최근 양육비 이행 관련 「양육비 이행법」(2025년 7월 1일 시행) 주요 내용 >

1. 양육비 선지급제 실시

- 양육비를 받지 못한 양육부·모에게 정부가 우선 양육비를 지급한 후 나중에 비양육부·모에게 받아내는 제도

※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150% 이하인 한부모가족을 대상으로 함.

2.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명단공개 시일 단축

-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명단 공개 시 사전 소명 기간을 3개월 이상에서 10일 이상으로 단축함.

□ 그 외, 「아동복지법」의 규율대상인 ‘아동’은 18세 미만(「아동복지법」 제3조제1호)인 반면, 「양육비 이행법」의 규율대상인 양육비는 ‘19세 미만의 미성년’(「민법」 제4조) 자녀를 보호·양육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의미한다는 차이도 있음.

□ 개정안과 관련하여 보건복지부는 양육비 채무 미이행에 대한 제재는 양육비 지급 의무를 규정한 「양육비 이행법」에 규정하는 것이 법 체계상 적절하며, 금지행위는 아동에게 직접 피해를 주는 경우로 사적 채무관계에 의해 간접적 피해를 주는 양육비 채무 미이행과는 성격이 다르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임.

< 관계 부처 등 의견 >

부처명	개정안에 대한 의견
보건복지부	양육비 채무 미행에 대한 제재는 양육비 지급 의무를 규정한 「양육비 이행법」에 규정하는 것이 법 체계상 적절하고, 금지행위는 아동에게 직접 피해를 주는 경우로 사적 채무관계에 의한 간접적 피해를 주는 양육비 채무 미이행과 성격이 다르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신중히 검토할 필요
경찰청	양육비 지급 의무는 「양육비 이행법」에 별도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의무 불이행에 대한 벌칙도 같은 법률에서 규정하는 것이 적절하고,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범위를 양육비 지급 미이행까지 확대하기 위해서는 사회적 합의를 통한 입법정책적 결정 필요
아동권리보장원	양육비 지급, 제재조치에 관한 별도의 법률이 존재하므로 「양육비 이행법」을 개선하여 양육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것이 적절하며, 양육비 채무불이행을 「아동복지법」 제17조의 금지행위로 볼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신중한 검토 필요

3. 자립지원 대상에 특별지원 보호시설 아동 포함 등(정춘생 의원안 및 서영석의원안 제38조제1항 등)

가. 개정안의 주요 내용

- 정춘생의원안 및 서영석의원안은 공통적으로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별지원 보호시설 아동도 자립지원 사업 대상에 포함시키려는 것이고(안 제38조제1항 등), 정춘생의원안은 이에 더하여 특별지원 보호시설 아동을 자산형성지원사업 대상에도 포함시키려는 것임(정춘생의원안 제39조 및 제42조 등).

현 행	정춘생의원안	서영석의원안
제38조(자립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보호대상아동의 위탁보호 종료 또는 <u>아동복지시설</u> 퇴소 이후의 자립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조치를 시행하여야 한다.	제38조(자립지원) ① - ----- ----- ----- -아동복지시설이나 <u>특별지원 보호시설</u>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제3항 제3호에 따른 특별지원 보호시설을 말한다. 이하 같다)--- -----.	제38조(자립지원) ① ----- ----- ----- -아동복지시설 등 ----- ----- ----- -----.

1. ~ 5. (생략) ② 제1항에 따른 자립지원 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 3. (생략) <u><신설></u>	1. ~ 5. (현행과 같음) ② ----- ----- ----- ----- -----. 1. ~ 3. (현행과 같음) 4. <u>특별지원 보호시설에서 보호 중인 사람</u>	1. ~ 5. (현행과 같음) ② ----- ----- ----- ----- -----. 1. ~ 3. (현행과 같음) 4. 「<u>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u>」 제12조 제3항 제3호에 따라 <u>특별지원 보호시설에서 보호 중인 사람</u> 5. <u>제1호부터 제4호</u>----- ----- ----- ----- ----- ----- ----- -----
4. (생략)	5. (현행 제4호와 같음)	

③ (생 략) 제38조의2(자립지원 실태조사)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보호대상아동의 위탁보호 종료 또는 <u>아동복지시설</u> 퇴소 이후의 자립지원, 생활 및 정서적·신체적 건강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3년마다 실시하여야 한다.	③ (현행과 같음) 제38조의2(자립지원 실태조사) ① ----- ----- ----- -----<u>아동복지시설이나 특별지원 보호시설 등 보호대상아동을 보호하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u>----- -----.	③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③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u>내용과 방법</u>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② (현행과 같음) ③ (현행과 같음)	③----- -----<u>내용과 방법 및 대상 시설의 범위</u>----- -----.
제39조(자립지원계획의 수립 등) ① 보장원의 장, 가정위탁지원센터의 장 및 <u>아동복지시설의 장</u>은 보호하고 있는 15세 이상의 아동을 대상으로 매	제39조(자립지원계획의 수립 등) ① ----- ----- -----<u>아동복지시설이나 특별지원 보호시설 등 보호대상아동을 보호하는 시설로서 대</u>	제39조(자립지원계획의 수립) (현행과 같음)

년 개별 아동에 대한 자립지원계획을 수립하고, 그 계획을 수행하는 종사자를 대상으로 자립지원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생략) 제39조의2(자립지원 전담기관의 설치·운영)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보호대상아동의 위탁 보호 종료 또는 <u>아동복지시설</u> 퇴소 이후의 자립을 지원하기 위하여 자립지원 전담기관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생략) 제42조(자산형성지원	<u>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u>----- ----- ----- ----- ----- ---. ② (현행과 같음) 제39조의2(자립지원 전담기관의 설치·운영) ① ----- ----- ----- -----<u>아</u> <u>동복지시설이나 특별지원 보호시설 등 보호대상아동을 보호하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u>-----. ② (현행과 같음) 제42조(자산형성지원사	제39조의2(자립지원 전담기관의 설치·운영) ① ----- ----- ----- -----<u>아</u> <u>동복지시설 및 특별지원 보호시설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3항 제3호에 따른 특별지원 보호시설을 말한다)</u> <u>등</u>----- -----. ② (현행과 같음) 제42조(자산형성지원
---	--	---

사업) ① (생 략) <u><신 설></u>	업) ① (현행과 같 음) ② <u>자산형성지원사업의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아동으로 한다.</u> 1. <u>제15조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보호 조치 중인 아동</u> 2. <u>「장애인복지법」 제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에 입 소 중인 아동</u> 3. <u>특별지원 보호시설에서 보호 중인 아동</u> 4. <u>고령, 장애, 질병, 정신질환 또는 약물 등으로 도움이 필요한 가족을 돌 보는 아동</u> 5. <u>「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u>	사업) (현행과 같 음)
--	---	----------------------

	<u>가정의 아동 중 보</u> <u>건복지부장관이 정</u> <u>하는 아동</u> <u>6. 그 밖에 자산형성</u> <u>지원이 필요하다고</u> <u>보건복지부장관이</u> <u>인정하는 아동</u>
<u>② 제1항에 따른</u> <u>자산형성지원사업</u> <u>을 하여야 할 아동</u> <u>의 범위와 해당 아</u> <u>동의 선정·관리</u> <u>등에 필요한 사항</u> <u>은 보건복지부령으</u> <u>로 정한다.</u>	<u>③ 자산형성지원사</u> <u>업 대상-----</u> <u>-----</u> <u>-----</u> <u>-----</u> <u>-----</u> <u>-----</u> <u>---</u> .

나. 주요 검토 사항

- 현행 「아동복지법」(제38조)에서는 국가 및 지자체로 하여금 보호대상아동의 위탁보호 종료 또는 아동복지시설 퇴소 이후 자립지원 지원을 위해 주거·생활·교육·취업 등의 지원, 자립정착금 및 자립수당 지급과 자산형성 지원 등 조치를 시행하도록 하고 있음.

「아동복지법」 제38조(자립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보호대상아동의 위탁보호 종료 또는 아동복지시설 퇴소 이후의 자립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조치를 시행하여야 한다.

1. 자립에 필요한 주거·생활·교육·취업 등의 지원
- 1의2. 자립에 필요한 자립정착금 및 자립수당 지급
2. 자립에 필요한 자산의 형성 및 관리 지원(이하 “자산형성지원”이라 한다)
3. 자립에 관한 실태조사 및 연구
4. 사후관리체계 구축 및 운영
5. 그 밖에 자립지원에 필요하다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자립준비청년에 대한 정부의 자립지원사업 현황 개요

- 주거 지원

- (LH 공공임대) 보호연장아동·자립준비청년 대상 연간 공공임대 2,000호 우선 공급 추진 중('23~: 국토부)

- 교육·취업 지원

- (대학특례) 대학 기회균형선발 대상(전체 모집인원의 10%~15% 의무)에 자립준비청년 포함('22.3. 법령 개정, '24학년도부터 적용: 교육부)
- (국가장학금) 국가장학금('23~자립준비청년 성적 기준 폐지), 근로장학금 우선선발 대상에 자립준비청년 포함('21~) 및 취업 후 상환 학자금(생활비) 대출 무이자 지원('23~): 교육부
- (취업지원) 지역 고용센터에 자립준비청년 전담직원 지정 및 자립지원전담기관과의 협업 강화('23~: 고용노동부)

- 자립정착금 및 자립수당

- (자립정착금) 지자체 자립정착금 1,000만원 이상 지급 권고
 - * 지급액 인상 권고: 1인당 500만원('21)→800만원('22)→ 1,000만원('23)
 - ** 서울 2,000만원, 대전·경기·제주 1,500만원, 경남 1,200만원 외 1,000만원 지급 중('24)
- (자립수당) 보호종료 후 5년간 자립수당 월 50만원 지급
 - * ▶ 지급기간 확대: 보호종료 후 2년('19. 4월)→ 3년('20.1월)→ 5년('21.8월)
 - ▶ 지급액 인상: 월 30만원('19.4월)→ 35만원('22.8월)→ 40만원('23.1월)→ 50만원('24.1월)

- 자산형성

- 보호아동의 자산 형성을 위해 아동발달지원계좌(디딤씨앗통장)에 정부 적립금 지원
 - * 0세~17세 보호아동이 후원 등으로 일정 금액 적립 시 1:2 비율, 월 10만원 한도로 정부 적립금 매칭

□ 이러한 자립지원의 대상으로 「아동복지법」은 ① 가정위탁보호 중인 사람, ② 아동복지시설에서 보호 중인 사람, ③ 보호조치가 종료되거나 해당 시설에서 퇴소한 지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④ 조기보호종료아동을 규정하고 있음⁷⁾.

□ 정춘생의원안 및 서영석의원안은 자립지원 대상자에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성폭력 방지법」)에 따른 특별지원 보호시설 퇴소자를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특별지원 보호시설’은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등 피해를 입은 19세 미만 피해자에게 보호·숙식 제공, 상담 및 치료, 자립·자활 교육의 실시와 취업정보의 제공 등을 하기 위한 시설임.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보호시설의 설치·운영 및 종류)

-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이하 “보호시설”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 ②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법인이나 그 밖의 비영리법인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인가를 받아 보호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호시설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2. (생략)
 3. 특별지원 보호시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8)에 따른 피해자로서 19세 미만의 피해자에게 제13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제공하는 시설
 4. ~ 6. (생략)
 - ④ · ⑤ (생략)

제13조(보호시설의 업무 등) ① 보호시설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다.

1. 피해자등의 보호 및 숙식 제공
2. 피해자등의 심리적 안정과 사회 적응을 위한 상담 및 치료
3. 자립·자활 교육의 실시와 취업정보의 제공
4. 제11조제3호·제4호 및 제5호의 업무
5. 다른 법률에 따라 보호시설에 위탁된 업무
6. 그 밖에 피해자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업무

② (생략)

7) 「아동복지법」 제38조(자립지원) ② 제1항에 따른 자립지원 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가정위탁보호 중인 사람
2. 아동복지시설에서 보호 중인 사람
3. 제16조 및 제16조의3에 따라 보호조치가 종료되거나 해당 시설에서 퇴소한 지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서 규정한 사람 외에 18세에 달하기 전에 보호조치가 종료되거나 해당 시설에서 퇴소한 사람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자립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성폭력피해자를 위한 보호시설 중 특별지원 보호시설은 전국에 4개소가 비공개시설로 운영되고 있고, 정원 66명에 현원은 44명으로, 입소기간은 19세가 될 때까지이나, 피해자가 학교에 재학하는 경우 등에는 입소기간을 최장 2년까지 연장할 수 있음9).

< 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인원 현황 >

(’23년말 기준, 단위: 명)

구분	정원	연도말 기준 현원		
		전체	미성년	비율
일반	173	91	33	36.3%
장애인	103	78	16	20.5%
특별지원	66	46	37	80.4%
자립지원 공동생활시설	42	28	-	-

자료: 여성가족부 자료를 보건복지부에서 입수하여 제출

- 특별지원 보호시설은 주로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피해 등을 입은 19세 미만의 피해자에게 보호 및 숙식 등을 지원하는 시설로, 동 시설에 거주하는 아동의 대다수는 원 가정으로 돌아갈 수 없는 형편에 놓여 있는데, 개정안과 같이 특별지원 보호시설 퇴소자를 자립지원 대상자에 포함하는 경우 자립지원 대상의 범위가 확대됨으로써 자립지원에 대한 국가와 사회의 책임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8)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등) ① 친족관계인 사람이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경우에는 7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 친족관계인 사람이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제추행한 경우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③ 친족관계인 사람이 사람에게 대하여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제1항 또는 제2항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친족의 범위는 4촌 이내의 혈족·인척과 동거하는 친족으로 한다.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친족은 사실상의 관계에 의한 친족을 포함한다.
- 9) 「성폭력방지법」 제16조(보호시설의 입소기간) ① 제12조제3항에 따른 보호시설의 종류별 입소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3. 특별지원 보호시설: 19세가 될 때까지. 다만,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2년의 범위에서 한 차례 연장할 수 있다.
 「성폭력방지법 시행규칙」 제7조의2(보호시설 입소기간의 연장) ① 법 제16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입소기간의 연장은 보호시설의 장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할 수 있다.
 3. 특별지원 보호시설: 피해자가 「초·중등교육법」 제2조 또는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운영되는 각종 학교에 재학(입학이 확정된 사람을 포함한다)중인 경우 입소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한편, 특별지원 보호시설을 소관하는 부처인 여성가족부에서는 「성폭력 방지법」에 따라 퇴소자에 대하여 500만원의 퇴소 자립 지원금 지급¹⁰⁾ 등 다양한 자립지원 사업을 2011년부터 실시¹¹⁾하고 있으며, 특히 2025년 여성가족부 예산안에서 퇴소 자립지원금을 월 1,000만원으로 상향할 뿐만 아니라 친족성폭력 보호시설 퇴소자에게 최대 5년간 월 50만원의 자립지원수당을 지급하도록 하는 등 지원이 강화되고 있는 상황으로, 원만한 입법을 위해서는 부처 간 협의를 통해 관련 지원 업무에 대한 사전 조정도 필요하겠음.

< 특별지원 보호시설 관련 지원 제도 >

○ (지원제도)

- (퇴소 전) 생활지원비 외 **학습지원비·의료 및 법률지원 부대비용·치료회복 관련 프로그램비·직업훈련비** 지급

구분	생활지원비	학습지원비	의료·법률 부대비용	프로그램비	직업훈련비	
용도	입소자 생활지원	학습·학원비 방과후학습비 교육비 등	건강검진 치료소요비용, 의약품구입비 소송관련 비용	치료회복 프로그램 운영	직업훈련비 (국·공립, 민간 사설학원 등 외부기관 포함)	
금액 (천원)	25,200			6,000	2,200	33,400

- (퇴소 시) 퇴소자립지원금('11년~) 500만원 지원, 국민임대주택 우선지원

* 보호시설 퇴소아동에 대한 자립수당 지급 '25년 여성가족부 정부안 반영(50만원, 5년)

자료: 여성가족부의 자료를 보건복지부에서 입수하여 제출

10) 「성폭력방지법」 제14조(보호시설에 대한 보호비용 지원)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보호시설에 입소한 피해자등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보호비용을 보호시설의 장 또는 피해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보호시설에 입소한 피해자등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등 다른 법령에 따라 보호를 받고 있는 경우에는 그 범위에서 이 법에 따른 지원을 하지 아니한다.

1. 생계비
2. 아동교육지원비
3. 아동양육비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

「성폭력방지법 시행령」 제5조(보호시설에 대한 보호비용 지원) 법 제14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이란 퇴소 시 자립지원금을 말한다.

11) 2025 예산안에 따르면 여성가족부는 미성년 성폭력피해자의 안정적 자립지원을 위하여 퇴소 후 5년간 월 50만원의 자립지원수당을 신설하고, 보호시설 퇴소자립금도 기존 500만원에서 1천만으로 확대함.

- 그 외, 「성폭력 방지법」에 따른 특별지원 보호시설은 19세 미만의 피해자를 대상(제12조제3항제3호)으로 하는 반면, 「아동복지법」의 규율대상은 원칙적으로 18세 미만의 아동임.
- 다음으로, 정춘생의원안에서는 현재 「아동복지법 시행규칙」에 규정되어 있는 자산형성지원사업 대상을 법률로 상향 규정하면서 그 범위를 확대하고 있음.
- 국가와 지자체는 현행 「아동복지법」(제42조¹²⁾)을 근거로 아동이 건전한 사회인으로 성장·발전할 수 있도록 자산형성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는바, 「아동복지법 시행규칙」은 동 사업의 지원대상을 ① 위탁가정·아동복지시설·전문치료기관에서 보호조치 중인 아동, ② 장애인복지시설에 입소 중인 아동, ③ 소년소녀가정의 아동, ④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가정의 아동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아동으로 정하고 있음¹³⁾.

12) 「아동복지법」 제42조(자산형성지원사업)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이 건전한 사회인으로 성장·발전할 수 있도록 자산형성지원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자산형성지원사업을 하여야 할 아동의 범위와 해당 아동의 선정·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13) 「아동복지법 시행규칙」 제19조(자산형성지원사업의 대상 등) ① 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자산형성지원사업의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아동으로 한다.
 1. 법 제15조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보호조치 중인 아동
 2. 「장애인복지법」 제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에 입소 중인 아동
 3. 소년소녀가정의 아동
 4.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가정의 아동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아동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아동에게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범위에서 해당 아동이 적립한 금액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매월 지원한다.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아동의 계좌 개설을 법 제44조제2항에 따라 금융자산관리업무를 위탁받은 은행 등에 의뢰하고, 은행 등은 통장을 개설하여 해당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발급하며, 시장·군수·구청장은 그 통장을 해당 아동에게 내주어야 한다.
 ④ 법 제42조제1항에 따라 자산형성지원을 받고 있는 아동이 원가정으로 귀가하더라도 그 아동이 희망할 경우에는 계속 지원할 수 있다.

< 자산형성지원사업 지원 대상 아동 >

보호대상아동	만 18세 미만의 아동복지시설(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보호아동, 가정위탁 보호아동, 장애인거주시설 아동, 소년소녀가정 아동
기초생활수급가구 아동	만 18세 미만의 중위소득 50%이하 수급가구 아동
기가입 아동 중 가정복귀 및 탈수급 아동	보호대상아동이 가정복귀 시, 보호구분을 ‘가정복귀’로 변경하여 계속 지원, 기초생활수급가구 아동 또한, 해당 가정이 중위소득 50%를 초과해도 계속 지원

자료: 보건복지부

- 동 사업의 지원 방식을 살펴보면, 아동이 일정금액을 적립(월 최대 적립금액 50만원)하면 국가 및 지자체¹⁴⁾가 월 최대 10만원 내에서 아동 적립금액의 1:2로 매칭하는 방식으로, 2011년 사업 시작 이후 대상 아동, 정부 적립금, 매칭비율이 점차적으로 확대되어 왔으며, 2025년 예산안에서는 차상위계층 아동까지 대상을 확대함.

< 자산형성지원사업 확대 내역 >

연도	구분	기존	변경사항
2011	대상 확대	보호대상아동으로 한정	기초생활수급가정의 만 12세 아동을 포함하여 확대
2016	대상 확대	기초생활수급가정 아동 신규가입 연령 만 12세로 한정	기초생활수급가정 아동 신규가입 연령 만 12세~13세로 확대
2017	지원금 확대	월 최대 3만원	월 최대 4만원으로 확대
2018	대상 확대	기초생활수급가정 아동 신규가입 연령 만 12세~13세로 한정	기초생활수급가정 아동 신규가입 연령 만 12세~17세로 확대
2020	지원금 확대	월 최대 4만원	월 최대 5만원으로 확대
2022	정부 매칭 비율 확대	아동적립금 1 : 정부지원금 1	아동적립금 1 : 정부지원금 2
2024	대상 확대 소득기준 완화	기초생활수급가구 연령 (만 12세~17세) 소득기준(생계·의료 급여)	기초생활수급가구 아동 연령 확대(만 18세 미만) 소득기준 완화(생계·의료 주가 교육 급여)

자료 : 보건복지부

14) 지자체에 대한 국가 보조율: 서울(40%), 지방(70%), 참고로 2025예산안에서는 서울(30%), 지방(70%)로 변경 예정임.

□ 현행 자산형성지원사업은 취약계층 아동을 대상으로 정부 지원을 통하여 아동이 성인이 되었을 때 빈곤 상태를 예방하고 사회불평등을 완화하려는 것인바, 개정안에서는 이에 대한 법적 근거를 시행규칙에서 법률로 상향하여 규범력을 제고하고, 그 대상에 ‘특별지원 보호시설에서 보호 중인 아동’, ‘고령, 장애, 질병, 정신질환 또는 약물 등으로 도움이 필요한 가족을 돌보는 아동’, ‘그 밖에 자산형성지원이 필요하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아동’을 추가¹⁵⁾함으로써 자립지원대상의 폭을 넓히고 있음.

□ 이처럼 개정안에서 법률로 상향함으로써 그 이행력을 제고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을 것이고, 특히 개정안에서 특별지원 보호시설 아동 및 가족돌봄아동¹⁶⁾을 자산형성지원사업에 포함시킴으로써 취약계층아동의 자산형성을 가능케 하여 아동이 성인이 되었을 때 보다 안정적인 사회생활이 가능하도록 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참고로, 가족돌봄아동·청소년·청년의 규모는 적용범위에 따라 달라지겠으나, 보건복지부가 2022년 전국 중·고등학생 및 만 13~34세 청(소)년을 대상으로 진행한 실태조사에 따르면, 응답자 총 43,832명 중 ‘가족을 돌보고 있다’고 답한 사람은 1,802명으로 약 4.1%에 해당하는 것으로 파악된 바 있음. 관련하여 국회 입법조사처의 연구자료에서도 국가별로 청소년 인구의 약 5~8%가 가족을 돌보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는데, 이를 우리나라 11~18세 청소년 인구 수 368만 4,531명에만 단순 대입하더라도 약 18만

15) 다만, 기존 시행규칙에 규정되어 있던 ‘소년소녀가정의 아동’은 개정안에서 제외되었음.

16) 참고로, 가족돌봄아동·청소년·청년에 대한 자립지원 등을 포함한 다방면의 지원을 규율한 「가족돌봄아동·청소년·청년 지원법안」(서영석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2202436호)도 우리 위원회에 계류 중임.

4천명~29만 5천명의 가족돌봄청소년이 존재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어¹⁷⁾, 상당한 규모의 가족돌봄아동·청소년·청년이 있을 것으로 보임¹⁸⁾.

- 다만, 특별지원 보호시설의 소관 부처인 여성가족부와의 협의가 필요하고, 아동의 자산형성에 대한 국가의 역할 강화를 위한 다른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강선우의원안[의안번호 제486호], 임광현의원안[의안번호 제555호], 이수진의의원안[의안번호 제716호]) 등과도 금번 개정안은 관련이 있어 함께 논의할 필요가 있겠음.

< 아동의 자산 형성에 대한 국가 역할 강화 관련 개정안의 주요내용 >

구분	강선우의원안	임광현의원안	이수진의의원안
사업명	자산형성지원사업	우리아이자립펀드	자산형성지원사업
사업대상	18세 미만 아동	18세 미만 아동	18세 미만 아동
현행 사업과의 관계	현행 대체	현행 존치	현행 대체
정부적립금	월 10만원 이하의 금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의무)	월 10만원(의무)	월 20만원(임의)
보호자 적립금	일정금액(임의)	정부적립금 적립된 달에 한하여 10만원 이하의 금액(임의)	-
추가적립	보호조치아동, 장애인복지시설 입소 아동 등 취약계층 아동	-	-

17) 허민숙, 「해외 영 케어러(young carer) 지원 제도와 시사점」, 국회 입법조사처 NARS 현안분석 제242호, 2022. 2. 22.

18) 초록우산어린이재단이 2022년 6월부터 7월까지 최근 1년 이내 재단으로부터 경제적 지원을 받은 아동 중 양육시설 거주 아동을 제외한 만 7세~만 24세 아동·청소년 총 1,494명을 대상으로 가족돌봄여부, 돌봄대상 등을 조사한 결과, 46%에 해당하는 686명이 가족돌봄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고 응답한 바 있음.

- 참고로, 특별지원 보호시설을 퇴소한 성폭력 피해자들에 대한 자립 지원을 신설하려는 내용¹⁹⁾의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202883호, 정춘생의원 대표 발의)이 국회 여성가족위원회에 계류되어 있기도 함.
- 개정안과 관련하여 보건복지부는 자립지원에 대한 국가·사회의 책임을 강화하는 개정 취지에 공감하나, 특별지원 보호시설의 근거법인 「성폭력방지법」에 자립지원 관련 규정이 있고, 소관 부처인 여성가족부에서 보호시설 퇴소 청소년 자립지원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므로(참고자료 1: 여성가족부 소관 보호시설 퇴소 청소년 자립지원제도 현황) 해당 법률에 근거 규정을 신설하는 것이 적절하고, 자산형성 지원과 관련하여 취약계층(보호대상아동, 기초생활수급가구 아동)에 해당하는 장애인복지시설 아동 및 조손가정 가족돌봄아동 등은 현행법으로도 지원이 가능하다는 점 및 취약계층에 해당하지 않는 가족돌봄아동의 경우 취약계층에 속하지 않는 다른 가족돌봄아동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임.

19) 제17조의2를 신설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특별지원 보호시설을 퇴소한 피해자의 자립을 지원하기 위하여 자립에 필요한 주거·생활·교육·취업 등의 지원, 자립수당 지급, 자립에 필요한 자산의 형성 및 관리 지원 등을 시행하도록 하려는 내용임.

< 관계 부처 등 의견 >

기관명	개정안에 대한 의견
보건복지부	특별지원 보호시설인 근거법인 「성폭력방지법」에 자립지원 관련 규정 및 소관 부처인 여성가족부 실시 자립지원 사업이 이미 존재하므로, 해당 법에 보호시설 퇴소자 자립지원 관련 규정 신설이 필요하고, 자산형성지원사업의 경우 취약계층(보호대상아동, 기초수급아동)에 해당하는 장애인복지시설 아동 및 조손가정 가족돌봄아동 등은 현행 규정으로도 지원이 가능하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여성가족부	특별지원 보호시설 입소 대상자를 자립지원 대상으로 확대하는 것에 공감하며, 법령의 취지를 고려하여 특별지원 보호시설 외에 일반 보호시설 등에 입소해 있는 성폭력 피해아동으로 대상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
충청남도	특별지원 보호시설 입소 대상자는 「아동복지법」상의 ‘보호대상아동’의 범주에 해당하지 않고, 「성폭력방지법」 등 개별법 내 지원·보호대상을 규정한 타법 간의 충돌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신중한 검토가 필요함

4. 자립지원 대상자의 범위 확대(김남희의원안 제3조제12호 신설 등)

가. 개정안의 주요 내용

- 개정안은 현행 자립지원대상의 아동 범위인 아동복지시설이나 위탁 가정에서 보호조치 중인 사람 및 해당 보호조치가 종료된 지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외에 장애인 거주시설, 청소년복지시설, 성폭력 피해자보호시설, 성매매피해자지원시설, 정신요양·재활시설, 노숙인 자활·재활·요양 시설 등에 거주하거나 거주 경험이 있는 아동에까지 자립지원 대상을 확대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12호 신설 등).

현행	개정안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11. (생략) <u><신설></u>	제3조(정의) ----- -----. 1. ~ 11. (현행과 같음) 12. <u>“자립지원아동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이 법에 따른 자립지원을 받을 수 있는 아동 등을 말한다.</u> <u>가. 제15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라 가정이나 아동복지시설에서 보호조치 중인 사람 및 그 보호조치가 종료된 지 5년이 지나지</u>

아니한 사람

나. 다음에 열거된 시설(이하 이 호에서 “시설”이라 한다)에서 거주 중인 아동

1) 「장애인복지법」 제58

조제1항제1호의 장애인

거주시설

2)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31조에 따른 청소년복

지시설

3) 「성폭력방지 및 피해

자보호 등에 관한 법

률」 제12조제1항 및 제

2항에 따른 보호시설

4) 「성매매방지 및 피해

자보호 등에 관한 법

률」 제9조제1항에 따른

지원시설

5) 「정신건강증진 및 정

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

원에 관한 법률」 제22

조에 따른 정신요양시설

및 같은 법 제26조에 따

른 정신재활시설

6)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38조(자립지원) ① 국가와 지방
자치단체는 보호대상아동의 위
탁보호 종료 또는 아동복지시
설 퇴소 이후의 자립을 지원하
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
하는 조치를 시행하여야 한다.
1. ~ 5. (생략)

제16조 제1항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노숙인자활
시설, 노숙인재활시설 및
노숙인요양시설
7) 그 밖에 보호대상아동
을 보호하는 기능을 수
행하는 시설로서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시설
다. 18세에 달하기 전에 제15
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가정이나 아동복지시
설에서의 보호조치가 종료
된 사람으로서 보건복지부
장관이 자립지원이 필요하
다고 인정하는 사람
라. 나목에 열거된 시설에서
거주한 경험이 있는 아동으
로써 보건복지부장관이 자
립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
하는 사람
제38조(자립지원) ① -----
-----자립지원아동등의-----

-----.
1. ~ 5.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른 자립지원 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가정위탁보호 중인 사람

2. 아동복지시설에서 보호 중인 사람

3. 제16조 및 제16조의3에 따라 보호조치가 종료되거나 해당 시설에서 퇴소한 지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서 규정한 사람 외에 18세에 달하기 전에 보호조치가 종료되거나 해당 시설에서 퇴소한 사람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자립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생략)

제38조의2(자립지원 실태조사)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보호대상아동의 위탁보호 종료 또는 아동복지시설 퇴소 이후의 자립지원, 생활 및 정서적·신체적 건강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3년마다 실시하여야 한다.

②·③ (생략)

제39조의2(자립지원전담기관의

<삭 제>

③ (현행과 같음)

제38조의2(자립지원 실태조사) ①
-----자립지원아
동등의-----

-----.

②·③ (현행과 같음)

제39조의2(자립지원전담기관의

설치·운영)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u>보호대상아동의 위탁 보호 종료 또는 아동복지시설 퇴소 이후의</u> 자립을 지원하기 위하여 자립지원전담기관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생략) 제40조(자립지원 관련 업무의 위탁)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 1. ~ 3. (생략) 4. <u>제38조제2항에 따른 자립지원 대상자에 대한 사례관리</u> 5. (생략) 제59조(비용 보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1. ~ 5. (생략) 6. 제38조에 따른 <u>보호대상아동의 자립지원에 필요한 비용</u> 7.·8. (생략)	설치·운영) ① ----- -----<u>자립지원아동등의</u>----- ----- ----- ----- ---. ② (현행과 같음) 제40조(자립지원 관련 업무의 위탁) ----- ----- -----. 1. ~ 3. (현행과 같음) 4. <u>자립지원아동등에</u>----- ----- 5. (현행과 같음) 제59조(비용 보조) ----- ----- ----- ----- ----- --. 1. ~ 5. (현행과 같음) 6. -----<u>자립지원아동등의</u>----- 7.·8. (현행과 같음)
---	--

나. 주요 검토 사항

- 현행법 제3조에는 ‘보호대상아동’, ‘지원대상아동’ 등에 대한 정의 규정은 있으나 ‘자립지원’의 대상인 아동에 대해서는 별도의 정의 규정은 없음. 다만, 제38조에서 보호대상아동의 위탁보호 종료 후 또는 아동복지시설의 퇴소 이후의 자립을 지원하기 위한 ‘자립지원 대상자’를 규정하고 있는데, 가정위탁보호 중인 사람, 아동복지 시설에서 보호 중인 사람 등이 이에 해당함.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4. “보호대상아동”이란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 또는 보호자가 아동을 학대하는 경우 등 그 보호자가 아동을 양육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하거나 양육할 능력이 없는 경우의 아동을 말한다.
5. “지원대상아동”이란 아동이 조화롭고 건강하게 성장하는 데에 필요한 기초적인 조건이 갖추어지지 아니하여 사회적·경제적·정서적 지원이 필요한 아동을 말한다.

제38조(자립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보호대상아동의 위탁보호 종료 또는 아동복지시설 퇴소 이후의 자립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조치를 시행하여야 한다.

1. 자립에 필요한 주거·생활·교육·취업 등의 지원
- 1의2. 자립에 필요한 자립정착금 및 자립수당 지급
2. 자립에 필요한 자산의 형성 및 관리 지원(이하 “자산형성지원”이라 한다)
3. 자립에 관한 실태조사 및 연구
4. 사후관리체계 구축 및 운영
5. 그 밖에 자립지원에 필요하다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자립지원 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가정위탁보호 중인 사람
2. 아동복지시설에서 보호 중인 사람
3. 제16조 및 제16조의3에 따라 보호조치가 종료되거나 해당 시설에서 퇴소한 지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서 규정한 사람 외에 18세에 달하기 전에 보호조치가 종료되거나 해당 시설에서 퇴소한 사람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자립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개정안은 이에 더하여 장애인 거주시설, 청소년복지시설,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등 6개 시설에 거주 중인 아동에 대해서도 자립 지원 대상자가 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 현행 「아동복지법」은 아동정책에 대한 기본법적 성격을 가짐에도 불구하고 자립지원 대상아동의 범위가 협소하다는 문제점을 해소할 수 있고, 통합적인 자립지원 대상으로 관리하게 되면 지원의 사각지대 해소와 지원 업무의 칸막이 해소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됨.

< 추가 시설별 소관 >

보건복지부 소관	여성가족부 소관
- 장애인 거주시설(「장애인복지법」) - 정신요양시설 및 정신재활시설(「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이하 「정신건강복지법」) - 노숙인자활시설, 노숙인재활시설 및 노숙인요양시설(「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이하 「노숙인복지법」)	- 청소년복지시설(「청소년복지 지원법」) -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이하 「성폭력방지법」) - 성매매피해자지원시설(「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이하 「성매매피해자보호법」)

실제적으로도 자립지원 조치 중 자립수당의 경우, 보호종료일 기준으로 「아동복지법」상 아동복지시설에 해당하는 아동양육시설 등에서 2년 이상 연속하여 보호를 받은 사람으로서 18세 이후 만기(연장) 보호종료되거나 15세 이후 조기보호종료된 사람으로서 18세가 된 때로부터 5년간 자립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는데²⁰⁾, 장애인 거주시설의 경우 아동복지시설에 해당하지 않아 자립수당을 지급받을 수 없음.

20) 조기보호종료의 경우, 15세 이전에는 아동복지시설에서 보호 중이었던 경우에만 자립지원 대상자가 됨.

< 자립수당 지원 대상 >

아동복지시설, 가정위탁 보호종료 아동 중 보호종료일을 기준으로 과거 2년 이상 연속하여 보호를 받은 자로 다음 사항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 아동복지시설 : 「아동복지법」 제52조 상 아동양육시설, 아동일시보호시설, 아동보호치료시설
- ※ 과거 2년 계산 시 보호종료일, 보호시작일이 속한 '월' 기준으로 산정함
- 만 18세 이후 만기 또는 연장 보호종료된 자로서 보호종료 5년 이내인 자 (단, '18.8월 이후 보호종료된 자)
- 만 15세 이후 보호조치가 조기 종료된 자로서 만 18세가 된 때로부터 5년 이내인 자 (단, 아동복지법 시행('24.2.9.)이후 만 18세가 된 자부터 적용)
- ※ 지원 불가: ① 보호 조기종료 후 원가정으로 복귀한 경우, ② 자립수당 신청 시 타 법령에 따라 자립수당 등을 지원받고 있는 경우

자료 : 보건복지부(홈페이지)

□ 한편, 위 각 기관별로 소관 법률에 따라, 현행 「아동복지법」에 규정된 자립지원 사항(자립에 필요한 주거·생활·교육·취업 등 지원, 자립수당, 자산형성지원, 실태조사, 사후관리 등²¹⁾)과 관련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부분이 있음.

< 추가 시설 소관 현행법에 따른 자립 지원 사항 >

보건복지부 소관
- 「장애인복지법」 제9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애인 자립 지원 책임 제18조(의료와 재활치료) 장애인이 생활기능을 익히거나 되찾을 수 있도록 필요한 기능치료와 심리치료 등 재활의료 제공 등 제19조(사회적응 훈련) 장애인이 재활치료를 마치고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사회적응 훈련 실시 제20조(교육) 장애인이 연령·능력·장애의 종류 및 정도에 따라 충분히 교육받을 수 있도록 교육 내용과 방법을 개선하는 등 필요한 정책 강구 제21조(직업) 장애인이 적성과 능력에 맞는 직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직업 지도, 직업능력 평가, 직업 적응훈련, 직업훈련, 취업 알선, 고용 및 취업 후 지도 등 필요한 정책 강구

21) 「아동복지법」 제38조(자립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보호대상아동의 위탁보호 종료 또는 아동복지시설 퇴소 이후의 자립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조치를 시행하여야 한다.

1. 자립에 필요한 주거·생활·교육·취업 등의 지원
- 1의2. 자립에 필요한 자립정착금 및 자립수당 지급
2. 자립에 필요한 자산의 형성 및 관리 지원(이하 “자산형성지원”이라 한다)
3. 자립에 관한 실태조사 및 연구
4. 사후관리체계 구축 및 운영
5. 그 밖에 자립지원에 필요하다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27조(주택 보급) 공공주택등 주택 건설 시 장애인에게 장애 정도를 고려하여 우선 분양 또는 임대할 수 있도록 노력 제30조의2(장애인 가족 지원) 사례관리 지원, 역량강화 지원 등 수행 제31조(실태조사) 보건복지부장관이 3년마다 장애실태조사 실시 제32조의6(복지서비스에 관한 장애인 지원 사업) 복지서비스에 관한 상담 및 정보 제공, 장애인 개인별로 필요한 욕구 조사 및 복지서비스 제공 계획 수립 지원 등 제35조(장애 유형·장애 정도별 재활 및 자립지원 서비스 제공 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애인의 일상생활을 편리하게 하고 사회활동 참여를 높이기 위한 재활 및 자립지원 서비스 제공 정책 강구 제53조(자립생활지원) 활동지원사의 파견 등 활동보조서비스 또는 장애인보조기구의 제공, 그 밖의 각종 편의 및 정보제공 제54조(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를 통하여 필요한 각종 지원서비스 제공 제55조(활동지원급여의 지원) 장애인이 일상생활 또는 사회생활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활동지원급여 지원
- 「정신건강복지법」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정신질환자등의 적절한 치료 및 재활과 자립 지원을 위하여 정신질환자등과 그 가족에 대하여 정신건강증진사업등에 관한 정보 제공 등 필요한 시책 강구 제10조(실태조사) 보건복지부장관이 5년마다 실시 제15조(정신건강복지센터의 설치 및 운영) 정신건강증진사업등의 제공 및 연계 사업을 전문적으로 수행 제34조(고용 및 직업재활 지원) 정신질환자가 자신의 능력을 최대한 활용하여 직업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일자리 창출, 창업지원 등 고용촉진에 필요한 조치 강구 제35조(평생교육 지원) 정신질환자에게 평생교육의 기회가 충분히 부여될 수 있도록 평생교육기관을 지정·교육과정 운영 제36조(문화·예술·여가·체육활동 등 지원) 문화·예술·여가·체육활동 등의 영역에서 정신질환자에게 필요한 서비스가 지원되도록 최대한 노력 제37조(지역사회 거주·치료·재활 등 통합 지원) 정신질환자의 지역사회 거주 및 치료를 위한 필요한 시책 강구 제38조(가족에 대한 정보제공과 교육) 정신질환자의 가족이 정신질환자의 적절한 회복과 자립을 지원하는 데 필요한 정보 제공, 관련 교육 실시 제77조(직업훈련 지원) 정신질환으로부터 회복된 사람이 그 능력에 따라 적당한 직업훈련을 받도록 적절한 직종을 개발·보급 등
- 「노숙인복지법」 (「노숙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18세 이상이 대상)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노숙인 보호와 재활 및 자활 지원 정책 마련, 노숙인 등의 사회복귀 및 복지를 향상시킬 책임 제9조(실태조사) 보건복지부장관이 5년마다 실태조사 실시 후 결과 공표 제10조(주거지원) 노숙인 등의 적절한 주거생활을 위한 주거지원 제13조(고용지원) 노숙인 고용 촉진을 위한 고용정보의 제공, 직업지원, 취업알선, 직업능력개발
여성가족부 소관 - 「청소년복지 지원법」 (「청소년 기본법」 제3조에 따라 9세 이상 24세 이하가 대상) 제2조의2(실태조사) 여성가족부장관이 3년마다 위기청소년 실태조사

제13조(상담 및 교육) 위기청소년의 가족 및 보호자에 대한 상담 및 교육 실시
제14조(위기청소년 특별지원) 위기청소년에게 생활지원, 학업지원, 의료지원, 직업훈련지원, 청소년활동지원 등을 물품 또는 서비스의 형태로 제공
제16조(가정 밖 청소년에 대한 지원) 가정 밖 청소년의 가정·사회 복귀를 돕기 위한 상담, 보호, 자립 지원, 사후관리 등
제18조의3(청소년부모에 대한 복지지원) 생활지원, 의료지원, 주거지원, 청소년활동지원 등
제18조의4(청소년부모에 대한 교육지원) 학적유지를 위한 지원, 검정고시 지원, 평생교육시설 교육비 지원 등
제18조의5(청소년부모에 대한 직업체험 및 취업지원) 청소년부모의 직업의 체험·훈련 지원
제32조의3(자립지원) 가정 밖 청소년이 청소년복지시설 퇴소 이후 자립할 수 있도록 1) 자립에 필요한 주거·생활·교육·취업 등의 지원 2) 자립에 필요한 자립정착금 및 자립수당 지급, 3) 자립에 필요한 자산의 형성 및 관리 지원, 4) 사후관리체계 구축 및 운영 등
- 「성폭력방지법」
제3조(국가 등의 책무) 피해자에 대한 주거지원, 직업훈련 및 법률구조 등 사회복귀 지원 등
제4조(성폭력 실태조사) 여성가족부장관이 3년마다 실태조사·결과 발표
제7조(피해자등에 대한 취학 및 취업 지원) 피해자나 피해자의 가족구성원에 대한 취학·취업 지원
제13조(보호시설의 업무 등) 피해자등의 보호 및 숙식 제공, 피해자등의 심리적 안정과 사회적응을 위한 상담 및 치료 및 자립·자활 교육의 실시와 취업정보의 제공 등
제14조(보호시설에 대한 보호비용 지원) 보호시설에 입소한 피해자등에게 생계비, 아동교육지원비, 아동양육비 등 지원
제18조(피해자를 위한 통합지원센터의 설치·운영) 성폭력 피해상담, 치료, 법률상담등 연계, 수사지원 등 지원업무의 종합적 수행을 위한 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 설치·운영
- 「성매매피해자보호법」
제3조(국가 등의 책임) 성매매피해자등의 보호, 피해 회복 및 자립·자활 지원
제4조(성매매 실태조사) 여성가족부장관이 3년마다 국내외 성매매 실태조사
제11조(지원시설의 업무) 숙식제공, 심리적 안정과 피해 회복을 위한 상담 및 치료, 자립·자활 교육의 실시와 취업정보 제공 등
제15조(자활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성매매피해자등의 회복과 자립에 필요한 지원을 제공하기 위한 자활지원센터 설치·운영

□ 이와 같이 각 소관 법률에서도 실태조사, 교육 지원 등 자립지원과 관련된 사항을 규율하고 있는바, 아동정책에 대한 기본법적 성격을 가지는 「아동복지법」에 자립 지원 지원 사항들을 통합하여 규정할 것인지, 각 개별 법률에서 필요한 부분을 수정·보완하는 방법이 적절할 것인지에 대해서 관계 부처간 협의를 포함하여 법안 심사 과정에서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겠음.

□ 아울러, 개정안 제3조제12호 가목의 ‘제15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라 가정이나 아동복지시설에서 보호조치 중인 사람 및 그 보호조치가 종료된 지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및 다목의 ‘18세가 달하기 전에 제15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가정이나 아동복지시설에서의 보호조치가 종료된 사람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자립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현행법 제38조제2항에 있는 부분이라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보이고, 라목의 ‘나목 열거 시설 거주 경험이 있는 아동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자립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의 경우 앞서 본 바와 같이 나목 열거 시설에 대한 운영·관리를 현재 보건복지부(참고자료 2: 보건복지부 소관 보호시설 퇴소 아동 대상 자립지원 현황) 및 여성가족부에서 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하여 지원 대상 선정²²⁾, 지원, 지원 후 관리과정 전반에서 관계 부처 간 협의가 필요하다고 하겠음.

□ 그 외, 「노숙인복지법」에 따른 노숙인자활시설, 노숙인재활시설 및 노숙인요양시설에서 거주 중인 아동을 포함시키려는 부분은, 「노숙인복지법」에 따른 ‘노숙인 등’은 18세 이상이라는 점²³⁾, 18세 미만인 노숙인의 자녀는 「아동복지법」에 따른 보호대상아동²⁴⁾에 포함될 수 있을 것이라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겠음.

22)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복지시설 퇴소 보호대상아동은 희망e음 등 관계시스템을 통한 지원대상 선정·관리가 가능하나, 타 시설 입소아동에 대한 정보 조회는 현재 불가능하다고 함.

23) 「노숙인복지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노숙인 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상당한 기간 동안 일정한 주거 없이 생활하는 사람

나. 노숙인시설을 이용하거나 상당한 기간 동안 노숙인시설에서 생활하는 사람

다. 상당한 기간 동안 주거로서의 적절성이 현저히 낮은 곳에서 생활하는 사람

「노숙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조(정의)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18세 이상인 사람을 말한다.

24)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 또는 보호자가 아동을 학대하는 경우 등 그 보호자가 아동을 양육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하거나 양육할 능력이 없는 경우의 아동(「아동복지법」 제2조제3호)

□ 개정안에 대하여 보건복지부는 현행 「아동복지법」에 따른 자립 지원은 제15조에 따른 보호조치의 연장선상에 있으며, 보호대상아동의 욕구와 특성을 고려하여 설계된 제도로써, 장애인·성폭력피해자·정신질환자 등은 대상자별 특수성을 고려한 자립지원이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하여 각 개별법에서 자립지원 내용을 신설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입장임. 아울러 청소년복지시설 퇴소자에 대해서는 「청소년복지 지원법」에 관련 규정에 따라 관련 사업(자립수당 지급, 자립생활관 입소)이 실시 중이고, 노숙인복지시설의 경우 입소대상이 18세 이상 노숙인으로 만 18세 미만을 규율하는 「아동복지법」에 자립지원 관련 규정을 두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입장임.

5. 친권상실 선고 청구 및 후견인 선임 청구 요건 구체화

[김미애의원안(의안번호 제3167호) 제18조제1항 등]

가. 개정안의 주요 내용

□ 개정안에서는 친권상실 선고 등의 청구와 관련하여, 지자체장 등이 법원에 친권행사의 제한 또는 친권상실의 선고를 청구하는 사유인 ‘그 밖에 친권을 행사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를 대통령령에서 정하도록 하고, 지자체장이 친권상실 선고 등을 법원에 청구하기 전에 사례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면서, ‘친권행사의 제한 또는 친권상실의 선고’를 「민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대로 친권 상실 선고, 친권 일시 정지 선고 등으로 구체화함(안 제18조제1항 및 같은 항 각 호 신설).

또한, 아동의 후견인 선임 청구와 관련하여, 현행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후견인 선임 청구 사유인 친권자 또는 후견인이 없는 경우 외에 민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친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사할 수 없는 경우를 추가하고, 지자체장의 후견인 선임 청구시 사례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면서, 기아(棄兒) 발견 시 발견일부터 후견인 선임시까지 시장·군수·구청장이 그 기아의 후견인이 되도록 규정함(안 제19조제1항 등).

현행	개정안
제18조(친권상실 선고의 청구 등) ①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검사는 아동의 친권자가 그 친권	제18조(친권상실 선고의 청구 등) ① ----- -----

을 남용하거나 현저한 비행이나 아동학대, 그 밖에 친권을 행사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것을 발견한 경우 아동의 복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법원에 친권 행사의 제한 또는 친권상실의 선고를 청구하여야 한다. <후단 신설>

<신 설>

<신 설>

<신 설>

② ~ ⑤ (생 략)

제19조(아동의 후견인의 선임 청구 등)

①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아동복지시설의 장 및 학교의 장은 친권자 또는 후견인이 없는 아동을 발견한 경우 그 복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법원에 후견인의 선임을 청구하여야 한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대한-----

「민법」에 따라 가정법원에 다음 각 호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 . 이 경우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이 이를 청구할 때에는 제12조에 따른 사례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민법」 제924조에 따른 친권 상실의 선고 및 친권 일시 정지의 선고
2. 「민법」 제924조의2에 따른 친권 일부 제한의 선고
3. 「민법」 제925조에 따른 대리권과 재산관리권 상실의 선고

② ~ ⑤ (현행과 같음)

제19조(아동의 후견인의 선임 청구 등)

①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아동을 발견한 경우에는 제12조에 따른 사례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법원에 후견인의 선임을 청구하여야 한다. 다만,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52조에 따라 기아(棄兒)를 발견한 경우에는 그 발견한 날부터 후견인이 선임된 때까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이 그 기아의 후견인이 된다.

1. 친권자나 후견인이 없는 아동
2. 「민법」 제924조, 제924조의2, 제925조 또는 제927조제1항에 따라 친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사할

<u><신 설></u> ② (생 략) ③ 제1항에 따른 후견인의 선임 및 제2항에 따른 후견인의 변경 청구를 할 때에는 해당 아동의 의견을 존중하여야 한다. ④ (생 략)	<u>수 없는 아동</u> ② 아동복지시설의 장 및 학교의 장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아동을 발견한 경우 그 복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법원에 후견인의 선임을 청구하여야 한다. ③ (현행 제2항과 같음) ④ 제1항 및 제2항----- -----제3항----- ----- -----. ⑤ (현행 제4항과 같음)
---	--

나. 주요 검토 사항

□ 먼저 친권상실 선고 등의 청구와 관련된 것임(안 제18조).

「민법」에 따르면, 부모는 미성년자인 자녀의 친권자로서(제909조 제1항 전단), 친권을 행사하는 부 또는 모는 미성년자인 자녀의 법정대리인이 되며(제911조), 구체적으로 자녀를 보호·교양할 권리의무(제913조), 자녀가 거주하는 장소를 지정할 수 있는 거소지정권(제914조), 자녀의 재산에 관한 법률행위의 대리권(제920조) 등을 가짐.

「민법」에서는 부 또는 모가 친권을 남용하여 자녀의 복리를 현저히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자녀, 자녀의 친족, 검사 또는 지사체장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친권의 상실 또는 일시정지를 선고할 수 있도록 하고(제924조), 거소의 지정이나 그 밖의 신상에 관한 결정 등 특정한 사항에 관하여 친권자가 친권을 행사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부적당한 사유가 있어 자녀의 복리를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자녀, 자녀의 친족, 검사 또는 지사체장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구체적 범위를 정하여 친권의 일부 제한을 선고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제924조의2), 법정대리인인 친권자가 부적당한 관리로 인하여 자녀의 재산을 위태롭게 한 경우에는 자녀의 친족, 검사 또는 지사체장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그 법률행위의 대리권과 재산관리권의 상실을 선고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제925조).

한편, 「아동복지법」에서는 법원에 친권 행사의 제한 또는 상실

을 청구할 수 있는 사유를 친권자의 친권 남용이나, 현저한 비행, 아동학대, 그 밖에 친권을 행사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것을 발견한 경우 아동복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로 규정하고 있으며, 특히 아동복지시설의 장과 학교의 장으로 하여금 지자체장 또는 검사에게 친권 상실 등의 선고 청구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며, 지자체장 또는 검사가 이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에 이의가 있을 경우 아동복지시설의 장과 학교의 장이 직접 친권 상실 등 청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민법」과 「아동복지법」의 친권 상실 청구 등 관련 조항 비교 >

구분	「민법」	「아동복지법」
청구 요건	• (상실, 일시정지) 친권을 남용하여 자녀의 복리를 현저히 해치거나 해칠 우려 • (제한) 특정한 사항(거소의 지정이나 그밖의 신상에 관한 결정)에 관해 친권을 행사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부적당한 사유가 있어 자녀의 복리를 해치거나 해칠 우려	• 친권을 남용하거나 현저한 비행이나 아동학대, 그 밖에 친권을 행사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 아동의 복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재판 청구권자	• <u>자녀, 자녀의 친족</u>, 검사, 지방자치단체의 장 (상실, 제한 공통) ※ 대리권, 재산관리권은 '자녀' 제외	•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검사 • <u>아동복지시설의 장, 학교의 장</u> (<u>지자체장, 검사에게 청구를 요청하였으나</u> <u>기각된 데 대한 이의가 있을 경우</u>)
재판청구 요청권자	-	• <u>아동복지시설의 장, 학교의 장</u> (→지자체장 또는 검사에게 요청)

□ 부모의 친권 남용, 아동학대 및 부모가 친권을 행사할 수 없는 사유가 있을 때 그 자녀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친권의 상실 및 일시정지 등의 선고가 필요할 것이나, 그 청구 사유는 친권의 남용, 아동의 복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으로 다소 불명확하게 규정되어 있고, 지자체장의 친권 상실이나 제한 청구 건수는 극히 적은 실정임²⁵⁾.

25) 관계부처 합동 ‘제2차 아동정책 기본계획’(2020~2024년) 35쪽에 따르면, 2016년에서 2018년까지 3년간 지자체장이 법원에 친권상실이나 친권행사 제한을 청구한 건수는 2건으로 나타남.

개정안은 법률에서 직접 정하고 있는 친권자의 친권 남용 등 외에 부모가 친권을 행사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를 하위법령에서 구체적으로 정하여 이를 명확히 함으로써 지자체장 등의 친권상실 신고 등 청구를 활발히 하려는 것으로 이해됨.

아울러 현행법의 ‘친권 행사의 제한 및 친권 상실 신고 청구’를 「민법」에서 규정하고 있는대로 친권 상실 신고, 친권 일시 정지 신고, 친권 일부 제한 신고, 대리권 및 재산관리권 상실 신고로 구체화한 것과 관련하여서는 별다른 문제는 없는 것으로 보임.

그 외 개정안에서는 지자체장의 친권상실 신고 등 청구 시 사례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고 있는바, 「아동복지법」(제12조²⁶⁾)에서는 친권행사의 제한이나 친권상실 신고 청구에 관한 사항을 사례결정위원회의 심의사항으로 이미 규정하고 있으므로, 개정안이 입법화될 경우, 법률조항 간의 정합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특히, 사례결정위원회는 친권상실 신고 청구에 관한 사항 이외에도 보호 및 퇴소 조치, 보호기간 연장 및 보호조치 종료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해 심의하기 위해 시·군·구에 설치된 기구로, 변호사·의사·경찰·아동복지시설 관계장 등 아동 관련 현장전문가 등으로

26) 「아동복지법」 제12조(아동복지심의위원회) ①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그 소속으로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각각 둔다. 이 경우 제2호부터 제8호까지의 사항에 관한 심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심의위원회 소속으로 사례결정위원회를 두고, 사례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사항은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사항으로 본다.

1. 제8조에 따른 시행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제15조에 따른 보호조치에 관한 사항
3. 제16조에 따른 퇴소조치에 관한 사항
4. 제16조의3에 따른 보호기간의 연장 및 보호조치의 종료에 관한 사항
5. 제18조에 따른 친권행사의 제한이나 친권상실 신고 청구에 관한 사항
6. 제19조에 따른 아동의 후견인의 선임이나 변경 청구에 관한 사항
7. 지원대상아동의 선정과 그 지원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아동의 보호 및 지원서비스를 위하여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구성²⁷⁾되는바, 지자체장의 친권 제한 및 상실 선고 청구 업무를 보다 전문적·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게 하고, 이 과정에서 아동의 이익을 보다 우선적으로 고려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보건복지부는 친권 남용 등으로부터 아동보호를 강화할 필요성에 공감하며, 청구 사유 구체화를 통한 청구 활성화가 기대된다는 의견임²⁸⁾.

□ 다음으로, 아동의 후견인 선임 청구와 관련된 것임(안 제19조).

‘후견’이란 친권에 의한 보호를 받지 못하는 미성년자(「민법」 제928조) 또는 장애·질병·노령 등으로 인해 사무처리 능력에 도움이 필요한 성인(「민법」 제9조)에게 폭넓은 보호와 지원을 제공하기 위한 제도로써, 후견사무는 후견인이 수행하며, 후견인의 권한남용을 방지하고 피후견인 보호에 만전을 기하기 위해 가정법원과 후견감독인은 후견인의 후견사무를 감독함(「민법」 제940조의6).

이 중 미성년후견제도는 미성년자에게 친권자가 없거나 친권의 상실 또는 일시 정지, 일부 제한 선고, 대리권·재산관리권 상실선고, 친권자의 대리권·재산관리권 사퇴에 따라 친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사할 수 없는 경우에 후견인을 두도록 하는 것임²⁹⁾.

27) 「아동복지법 시행령」 제13조(아동복지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등) 및 제13조의2(사례결정위원회)에 따른 위원은 다음과 같음.

- 지자체 공무원 중 지자체장이 지명하는 사람(광역은 4급 이상, 기초는 5급 이상)
- 지자체장이 위촉하는 사람
 - 교원, 교육청 및 지방고용노동관서 소속 공무원(아동 관련 업무 3년 이상 수행), 변호사·의사 및 3년 이상 재직한 경찰공무원 및 자치경찰공무원(아동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아동복지시설 등에서 아동분야 업무를 3년 이상 전문적으로 담당한(했던) 사람, 아동복지학, 사회복지학 또는 심리학 분야를 전공한 사람으로서 아동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8) 아울러, 그 밖에 친권을 행사할 수 없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대한 사유의 예시는 「민법」 제908조의2(친양자입양 등 요건)을 참고하여 다음과 같이 정할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음.

1. 1년 이상 소재불명 등의 사유로 사실상 친권행사를 할 수 없는 경우
2. 친권자가 자신에게 책임있는 사유로 3년 이상 자녀에 대한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면접교섭을 하지 않는 경우
3. 자녀를 학대하거나, 그 밖에 자녀의 복리를 현저히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29) 「민법」 제928조(미성년자에 대한 후견의 개시) 미성년자에게 친권자가 없거나 친권자가 제924조, 제924조의2, 제925조 또는 제927조제1항에 따라 친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사할 수 없는 경우에는 미성년 후견인을 두어야 한다.

미성년후견제도와 성년후견제도를 기본적인 내용을 비교하면 다음과 같음.

< 미성년후견제도와 성년후견제도의 비교 >

내용		미성년후견제도	성년후견제도
피후견인	선임사유	친권자가 없거나 친권자가 법률 행위의 대리권과 재산관리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
후견인	자격	친족 또는 제3자 (법인 제외)	친족 또는 제3자 (법인 포함)
	수	1명	여러 명도 가능
	선임	유언에 의한 지정 또는 법원의 선임	법원의 선임
	감독기관	법원, 후견감독인	법원, 후견감독인
후견감독인	선임	유언에 의한 지정 또는 법원의 선임	법원의 선임
공시	방법	가족관계등록부	후견등기부

□ 미성년후견과 관련하여, 「아동복지법」은 기본적으로 「민법」을 따르면서, 아동 보호 필요성을 반영하여 후견인 선임 청구요건, 청구권자 등의 규정에서 아래와 같이 차이가 있음(참고자료 3 미성년후견인 선임 청구 개요).

< 미성년후견 관련 「민법」과 「아동복지법」의 비교 >

구분	「민법」	「아동복지법」
청구요건	미성년자에게 친권자가 없거나, 친권자가 법원의 재판에 의해 친권이 상실, 일시정지, 또는 제한되어 친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사할 수 없는 경우	친권자 또는 후견인이 없는 아동을 발견한 경우 그 복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재판 청구권자	미성년자, 친족, 이해관계인, 검사, 지방자치단체의 장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아동복지시설의 장 및 학교의 장
임시 후견인	-	후견인 선임청구를 받은 경우, 법원은 후견인 선임 전까지 지자체장,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 가정위탁지원센터의 장, 보장원의 장으로 하여금 임시로 아동의 후견인 역할을 하게 할 수 있음

□ 「아동복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보호대상아동의 후견과 관련하여 가정위탁 아동에 대해서는 「민법」과 「아동복지법」이, 아동복지시설 아동에 대해서는 「보호시설에 있는 미성년자의 후견 직무에 관한 법률」³⁰⁾이, 입양대상아동에 대해서는 「입양특례법」³¹⁾이 적용됨.

□ 현행 「아동복지법」에서는 지자체장, 아동복지시설의 장 및 학교의 장이 친권자 또는 후견인이 없는 아동을 발견한 경우 그 복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법원에 후견인의 선임을 청구하도록 규정함. 그러나, 지자체의 소극적인 후견인 선임 청구 역할 이행³²⁾ 등으로 실제 신청은 별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 그에 따라, 현재 아동의 후견인 선임은 양육자(시설장, 위탁부모)에게 의존하는 경향이 있으며, 양육자는 서류준비 등 재판절차에 어려움을 느껴 선임을 포기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음³³⁾(참고자료3).

30) 「보호시설에 있는 미성년자의 후견 직무에 관한 법률」과 「입양특례법」은 아동의 후견인 선임 절차가 민법에 비해 간이(법원의 재판을 거치지 않고 후견인이 선임될 수 있음)하게 규정됨

< 보호시설에서 보호 중인 미성년자의 후견인이 되는 자 >

구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는 보호시설	그 외의 자가 설치·운영하는 보호시설
고아인 미성년자	보호시설의 장	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정하는 자
고아가 아닌 미성년자	보호시설의 장 (단,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함)	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정하는 자 (단,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함)

「입양특례법」 제22조(입양기관의 장의 후견직무) ① 입양기관의 장은 입양을 알선하기 위하여 보장시설의 장, 부모 등으로부터 양자될 아동을 인도받았을 때에는 그 인도받은 날부터 입양이 완료될 때까지 그 아동의 후견인이 된다. 다만, 양자가 될 아동에 대하여 법원이 이미 후견인을 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31) 「입양특례법」은 전부개정되어 2025. 7. 19. 부터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및 「국제입양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
- 32) 법적 절차에 대한 낮은 접근성, 친권 상실 신고 등 청구 사유의 포괄성 등이 원인으로 지적되고(보건복지부, 『보호대상아동 후견인제도 실태조사 및 개선방안』(연구책임기관: 한양대학교 산학협력단, 2017, pp.38~43.), 다른 청구권자와의 관계에서 부모가 소재불명인 경우에는 자녀의 친족도 찾기 어려운 경우가 대부분이고(설령 찾는다고 해도 적지 않은 비용과 시간을 감수해 가면서까지 친권상실선고를 청구할 의사가 없을 가능성이 높음), 검사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이러한 경우에 친권상실선고를 청구한 사례는 거의 없음. 김상용, 「위탁아동의 친권과 후견」, 『중앙법학』 제19집제4호, 2017. 12, p. 221.
- 33) 2023. 4. 13. 아동정책조정위원회, 『보호대상아동 후견제도 개선방안』

후견인 선임 청구 건수를 살펴보면, 최근 3년간 보호조치된 아동 및 누적 보호조치 아동 현황에 비해 미성년후견인 선임 사건 현황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남.

< 최근 3년간 신규발생 및 누적 보호대상아동 현황 >

연도	2021	2022	2023
신규발생(명)	3,437	2,289	2,054
누 적(명)	13,737	16,364	21,207

* 자료: 보건복지부((신규)는 KOSIS 보호대상아동통계, (누적)은 사회보장통계정보시스템 <2024. 8.8. 추출> 출처로 밝힘)

< 최근 3년간 미성년후견인 선임 사건 현황 >

	2021	2022	2023
해당연도 접수	1,141	1,136	1,236
처리	1,161	1,130	1,230

* 자료: 보건복지부(법원행정처 '사법연감' 통계 참조)

□ 2023. 4. 아동정책조정위원회의 ‘보호대상아동 후견제도 개선방안’에 따르면 보호대상아동의 상당수('22. 아동실태조사 시 보호대상아동 20,505명 중 12%에 해당하는 2,462명)가 부모의 사망·장기간 소재 불명·친권상실 등으로 친권 행사가 곤란함에도 「민법」 제928조에 따른 미성년자에 대한 후견 개시 사유에 해당되지 않아 후견인이 선임되지 않음으로써,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한 입·퇴원·수술, 금융계좌 개설, 핸드폰 개통, 입학·전학 등에서 어려움 등 일상생활에서 제약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개정안은 현행 「아동복지법」 제19조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후견인 선임 청구 사유인 ‘친권자 또는 후견인이 없는 경우’ 외에, 「민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친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사할 수

없는 경우를 구체화하여³⁴⁾ 지자체장의 후견인 선임 청구 사유가 명확해짐에 따라 후견인 선임 청구가 활성화되고, 선임된 후견인의 후견 사무 수행을 통해 일상생활에서 아동의 보호가 더욱 두터워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후견인 선임 청구시 사례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한 것은 앞서 친권상실 선고 등 청구 시 사례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한 것과 동일한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한편, 현행 「아동복지법」(제20조제2항)에서는 후견인의 선임청구를 받은 법원은 후견인이 없는 아동에 대하여 후견인을 선임하기 전까지 지자체장,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 가정위탁지원센터의 장, 아동권리보장원의 장으로 하여금 임시로 그 아동의 후견인 역할을 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개정안에서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52조³⁵⁾에 따른 ‘기아’(棄兒)를 발견한 경우 발견일부터 후견인 선임 시까지 시·장·군수·구청장이 그 기아의 후견인이 되도록 규정함.

기아로 신고된 아동의 보호절차에 대해 살펴보면, 신고를 받은 경찰은 시·군·구에 보호를 의뢰하고, 시·군·구는 건강검진 후 아동을 일시보호시설 등에서 일시보호하면서 원가정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성·본 창설 및 후견인 선임을 진행하고, 보호계획을 수립하여

34) 친권 상실 선고 및 친권 일시정지 선고(「민법」 제924조), 친권 일부 제한 선고(「민법」 제924조의2), 대리권 및 재산관리권 상실 선고(「민법」 제925조), 친권자의 대리권 및 재산관리권 사퇴(「민법」 제927조제1항)

35)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52조(기아) ① 기아(棄兒)를 발견한 사람 또는 기아발견의 통지를 받은 경찰공무원은 24시간 이내에 그 사실을 시·읍·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통보를 받은 시·읍·면의 장은 소지품, 발견장소, 발견연월일시, 그 밖의 상황, 성별, 출생의 추정연월일을 조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조서를 신고서로 본다.
③ 시·읍·면의 장은 「민법」 제781조제4항에 따라 기아의 성과 본을 창설한 후 이름과 등록기준지를 정하여 등록부에 기록하여야 한다.

사례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호조치를 결정함³⁶⁾.

이에 따르면 기아는 발견일부터 후견인 선임 전까지는 친권자나 후견인이 없는 상태에 놓이게 되고, 후견인 선임 청구부터 후견인 선임까지 3~6개월이 소요되는 것으로 파악되는바³⁷⁾, 개정안은 기아 발견일부터 지자체의 장이 후견인이 되도록 함으로써 해당 아동을 신속히 보호하려는 취지로 이해됨.

□ 기아의 친권자 확인이 어려운 경우,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동의가 필요한 입양이 곤란하여 양육시설에 보호하는 경우가 많으며, 이후 보호조치 변경 없이 시설에서 장기 양육되는 경향이 있다는 점에서 금번 개정안을 통하여 후견인이 없는 보호의 공백상태를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됨. 다만, 법률에서 자동적으로 관할 지자체장이 후견인이 되게 하도록 하는 것은 기존 법 체계와는 상이한 내용으로 법원의 의견을 청취할 필요가 있겠음.

□ 개정안과 관련하여 보건복지부는 친권남용 등으로부터 아동보호를 강화할 필요성에 공감하고, 친권상실 청구 요건 구체화로 보호대상 아동의 후견인 선임 청구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하며, 법률에서 자동적으로 관할 지자체장이 후견인이 되게 하도록 함으로써 기아(棄兒)에 대한 신속한 법적 보호가 가능할 것이라는 의견임.

36) 보건복지부·아동권리보장원, 『2024 아동보호서비스 업무매뉴얼』, pp.24~29.

37) 보건복지부, 『보호대상아동 후견인제도 실태조사 및 개선방안』(연구책임기관: 한양대학교 산학협력단), 2017. 8.에 따르면, 서류 접수부터 법원의 심사와 판결까지 약 6개월 정도(보정명령이 없는 경우)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나는데, 사전의 서류준비기간이 일반적으로 약 2개월 정도 걸리는 것을 감안하면, 후견인이 되기로 결심하고 서류준비를 하기 시작한 시점부터 법원판결까지 약 7개월~1년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남.

6. 가정위탁보호자의 제한적 범위의 법정대리권 행사

[김미애의원안(의안번호 제3180호) 제20조의2 신설]

가. 개정안의 주요 내용

- 개정안은 보호대상아동을 가정위탁 보호하는 자로 하여금 보호대상아동의 금융계좌 개설 등 금융 거래에 관한 사항, 이동통신단말장치 개통에 관한 사항, 수술·입원 등 의료에 관한 사항, 학교 생활에서 친권자의 동의가 필요한 사항 등 제한적 범위에서 후견인이 선임될 때까지 법정대리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0조의2 신설).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20조의2(제한적 범위의 권한 행사) ① 미성년후견인이 없는 보호대상아동의 가정위탁보호자(보호대상아동을 가정위탁 보호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그 보호조치가 있던 날부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에 관하여 해당 아동의 법정대리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아동의 의견을 존중하여야 한다. 1. 금융계좌 개설 등 금융 거래에 관한 사항 2. 이동통신단말장치 개통에 관한 사항 3. 수술·입원 등 의료에 관한 사항 4. 학교 생활에서 친권자의 동의

가 필요한 사항

5. 그 밖에 일상 생활에서 친권자 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한 사항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법정대리권은 해당 보호조치가 종료된 때 또는 해당 아동의 후견인이 선임된 때 중 빠른 때까지 행사할 수 있다. 이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권한 행사 기간은 2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법정대리권의 남용 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법정대리권 행사 및 제3항에 따른 점검의 방법,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나. 주요 검토 사항

- ‘가정위탁’은 보호대상아동의 보호를 위하여 성범죄, 가정폭력, 아동학대, 정신질환 등의 전력이 없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가정에 보호대상아동을 일정 기간 위탁하는 것으로 (「아동복지법」 제3조제6호), 집단시설의 심리적·환경적 한계에서 벗어나 정상적인 가정환경 속에서 위탁가정 부모와의 정서적 교류를 통하여 심리적 안정을 기할 수 있고, 가정과 유사한 안정적인 보호 환경을 제공할 수 있으며, 친부모와의 가족 재결합이라는 목적도 포기하지 않는 장점을 가진 제도로 평가되고 있는바³⁸⁾, 2023년 기준 보호대상아동의 가정위탁보호율은 38.1%에 이르고 있음.

< 2022~2023년 보호조치 유형 >

(단위: 명, %)

연도	합계	시설입소							가정보호			
		소계	양육시설	자립지원시설	보호치료시설	공동생활가정	일시보호	기타	소계	가정위탁	입양대상아동	일시보호
'23	2,054	1,067 (51.9)	524 (25.5)	-	13 (0.6)	222 (10.8)	266 (13.0)	42 (2.0)	987 (48.1)	783 (38.1)	162 (7.9)	42 (2.0)
'22	2,289	1,294 (56.5)	567 (24.8)	-	12 (0.5)	287 (12.5)	381 (16.6)	47 (2.0)	995 (43.5)	802 (35.0)	166 (7.3)	27 (1.8)

- 아울러 가정위탁의 세부 비율을 살펴보면 친인척이 대다수(아동수 기준 87.9%)를 차지하고 있음.

38) 윤우일, 「가정위탁에서 후견제도 활용의 한계」, 『서울법학』 제28권 제1호, 2020, p.76.

<'23년 가정위탁 보호아동 현황('23.12월 말 기준)>

(단위: 명)

구분	계		일반가정위탁 (친인척)		일반가정위탁 (친인척 외)		전문가정위탁		일시가정위탁	
	세대수	아동수	세대수	아동수	세대수	아동수	세대수	아동수	세대수	아동수
위탁 보호 현황	7,591	9,330	6,617	8,204	748	871	209	237	17	18

□ 현행 「민법」과 「아동복지법」은 친권상실 신고 등의 청구, 후견인 선임 청구 등을 규정하고 있어, 친권 상실·정지 및 미성년후견인 선임 청구 시 위탁가정 부모가 미성년후견인으로 선임될 수도 있으나 지자체에서 후견인 선임 청구 등에 소극적이며³⁹⁾, 친권 상실 및 미성년후견인 선임 청구를 하더라도 미성년후견인이 선임되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므로⁴⁰⁾ 그 기간 동안 위탁아동 보호 및 권리 행사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음.

□ 특히, 보호받고 있는 아동이 가족관계등록부상 친권자가 있으나 친권자의 소재불명 등으로 친권의 행사를 기대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탁가정 부모는 법적 후견인으로서의 권한이 없어, 금융계좌 개설, 휴대전화 개통, 아동의 수술 등 의료행위에 대한 동의 등을 할 수 없는 상황으로 아동의 보호에 법적 공백이 발생하고 있는바, 이를 해소하기 위한 조치로서 금번 개정안의 의미가 있음.

39) 법적 절차에 대한 낮은 접근성, 친권 상실 신고 등 청구 사유의 포괄성 등이 원인으로 지적되고(보건복지부, 『보호대상아동 후견인제도 실태조사 및 개선방안』(연구책임기관: 한양대학교 산학협력단), 2017, pp.38~43.), 다른 청구권자와의 관계에서 부모가 소재불명인 경우에는 자녀의 친족도 찾기 어려운 경우가 대부분이고(설령 찾는다고 해도 적지 않은 비용과 시간을 감수해 가면서까지 친권상실선고를 청구할 의사가 없을 가능성이 높음), 검사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이러한 경우에 친권상실선고를 청구한 사례는 거의 없음. 김상용, 「위탁아동의 친권과 후견」, 『중앙법학』 제19집제4호, 2017. 12, p. 221.

40) 한국가정법률사무소의 2021년 위탁가정 후견인 선임 지원 사례에서는 3~6개월이 소요된 것으로 알려짐. 상기 사례 외에 「보호대상아동 후견인제도 실태조사 및 개선방안」, 보건복지부(연구수행기관: 한양대학교 산학협력단, 2017. 8.)에 따르면, 서류 접수부터 법원의 심사와 판결까지 약 6개월 정도(보정명령이 없는 경우) 소요된 것으로 나타났는데, 사전 서류 준비 기간이 일반적으로 약 2개월 정도 걸리는 점을 감안하면, 후견인이 되기로 결심하고 서류준비를 하기 시작한 시점부터 법원 판결까지 약 7개월~1년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음.

□ 첫째, 가정위탁보호자의 권한 행사 범위와 관련된 것임. 개정안에서는 가정위탁보호자의 권한 행사 범위에 대하여 ‘금융계좌 개설 등 금융 거래에 관한 사항, 이동통신단말장치 개통에 관한 사항, 수술·입원 등 의료에 관한 사항, 학교 생활에서 친권자의 동의가 필요한 사항, 그 밖에 일상 생활에서 친권자 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한 사항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음.

□ 관련 입법례로 임시 후견인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 「보호시설에 있는 미성년자의 후견 직무에 관한 법률」(제3조제4항)과 개정안의 역할을 비교하여 보면, 전반적으로 개정안의 내용이 보다 확대되어 있는 것으로 보임.

< 개정안과 「보호시설에 있는 미성년자의 후견 직무에 관한 법률」 비교 >

개정안(가정위탁보호자의 법정대리권 행사 범위)	「보호시설에 있는 미성년자의 후견 직무에 관한 법률」
제20조의2(제한적 범위의 권한 행사) ① 미성년후견인이 없는 보호대상아동의 가정위탁보호자(보호대상아동을 가정위탁 보호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그 보호조치가 있던 날부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에 관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에 관하여 해당 아동의 법정대리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아동의 의견을 존중하여야 한다. <u>1. 금융계좌 개설 등 금융 거래에 관한 사항</u> <u>2. 이동통신단말장치 개통에 관한 사항</u> <u>3. 수술·입원 등 의료에 관한 사항</u> <u>4. 학교 생활에서 친권자의 동의가 필요한 사항</u> <u>5. 그 밖에 일상 생활에서 친권자 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한 사항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u>	제3조(후견인)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는 보호시설에 있는 미성년자인 고아에 대하여는 그 보호시설의 장이 후견인이 된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설치·운영하는 보호시설에 있는 미성년자인 고아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보호시설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시장(「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행정시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후견인을 지정한다. ③ 보호시설에 있는 고아가 아닌 미성년자에 대하여도 제1항과 제2항을 준용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④ 법원은 제3항에 따른 허가를 하기 전까지 후견인이 되기 위하여 신청을 한 사람으로 하여금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 임시로 후견인 역할을 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미성년자의 의견을 존중하여야 한다. <u>1. 금융계좌 개설 및 이동통신서비스 이용에 관한 사항</u> <u>2. 수술, 입원·퇴원 등 의료서비스 이용에 관한 사항</u> <u>3. 입학, 전학 등 학적관리에 필요한 사항</u>
--	---

□ 법원이 임시후견인 지정에 관련되어 있음에도 이처럼 「보호시설에 있는 미성년자의 후견 직무에 관한 법률」에서 임시후견인의 역할을 한정적으로 특정한 것은 임시후견인 제도 자체가 예외적이고 한시적이라는 점이 감안된 것으로, 유사 제도인 만큼 금번 개정안 심사에서도 고려가 필요한 것으로 보임.

구체적으로 보면 개정안의 ‘금융계좌 개설 등 금융 거래에 관한 사항’과 관련하여 계좌 ‘해지’도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는바, 계좌 해지 문제는 친권자와 재산 분쟁 가능성 등의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겠음.

아울러, ‘이동통신단말장치 개통에 관한 사항’과 관련, 개통 이후 요금제 변경 등 다양한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잦은 변경이 있을 수 있으므로, 「보호시설에 있는 미성년자의 후견 직무에 관한 법률」과 마찬가지로 ‘이동통신서비스 이용에 관한 사항’으로 규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임.

□ 참고로 금융계좌 개설 등과 관련해서는 「개인정보보호법」에서 “개인정보처리자는 만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를 처리하기 위하여 이 법에 따른 동의를 받아야 할 때에는 그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법정대리인이 동의하였는지를 확인하여야 한

다”(제22조의2제1항)고 규정하여, 14세 미만의 아동에 대한 예금계좌 개설 시 법정대리인의 개인정보제공에 대한 동의가 필요하고, 특히 예금계좌 개설에 관한 동의도 명시적으로 받도록 하고 있음⁴¹⁾.

□ 그 외, 개정안 제20조의2제1항제5호의 ‘일상 생활에서 친권자 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한 사항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또한 그 적정성에 대해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 둘째, 안 제20조의2제1항 중 가정위탁보호자의 법정대리권 행사의 대상인 ‘미성년후견인이 없는 보호대상아동’과 관련된 것임.

□ 개정안은 가정위탁 중인 보호대상아동의 일상생활에서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한 상황이 발생하였음에도 친권자 및 후견인과 같이 ‘법정대리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자가 없는 경우’를 상정한 것으로 보임.

□ 이에 따라 친권자가 없으면서 미성년후견인이 선임되지 않은 아동 외에 친권자가 있으나 장기부재, 연락두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실상의 사유로 친권을 행사할 수 없는 상황에서 미성년후견인이 없는 아동에 적용될 수 있도록 하는 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겠음.

□ 참고로, 후견인 선임 청구 이후 실제로 후견인이 선임되기까지의 기간에 대한 법정대리권의 공백에 대해서는 현행 「아동복지법」

41) 금융감독원, 「은행의 미성년자 명의 예금계좌 개설업무 지도방안 마련」, 2023. 2. 14. 보도자료에 따르면, 예금계좌 개설행위는 단순히 권리만을 얻는 행위로서 민법상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미성년자 단독으로 가능하나, 특정 연령층 이하 미성년자의 경우 의사무능력자로서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개설된 예금계좌가 사후에 무효가 되는 등 법적 안정성이 저하될 수 있는 문제가 있어, 만 14세 미만 미성년자의 경우 개인정보 제공에 대한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을 때 예금계좌 개설에 관한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함께 받도록 지도하였다고 하였음.

제20조제2항⁴²⁾에 따라 지자체장이나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 가정위탁기관의 장 및 아동권리보장원의 장이 임시로 아동의 후견인 역할을 할 수도 있음.

□ 다만, 개정안에서는 가정위탁보호자에 대해 아동의 법정대리권한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되,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기간은 2년을 초과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해당 사항은 권한 행사와 관련된 중요 사항인 만큼 특별한 사유는 대통령령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겠고, 한정적으로 주어지는 법정대리권의 행사 기간으로 2년은 지나치게 긴 것은 아닌지 추가적 검토가 필요하겠음.

□ 아울러, 후견인 선임 없이 법정대리권한을 법률에서 직접 부여함에 따른 부작용 등에 관하여 법원의 의견도 들어볼 필요가 있겠음 (참고자료 4: 후견인 선임 없이도 위탁 부모에게 제한된 범위의 법정대리권을 부여하는 해외 사례).

□ 셋째, 지자체장의 법정대리권 남용 점검과 관련된 부분임. 개정안은 시장·군수·구청장으로 하여금 법정대리권의 남용 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바, 이와 함께 점검 후 후속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점검의 실효성을 담보할 장치를 함께 규정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겠음.

42) 제20조(아동의 후견인 선임) ① 삭제

② 법원은 제1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후견인의 선임청구를 받은 경우 후견인이 없는 아동에 대하여 후견인을 선임하기 전까지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제45조에 따른 아동보호전문기관(이하 “아동보호전문기관”이라 한다)의 장, 가정위탁지원센터의 장 및 보장원의 장으로 하여금 임시로 그 아동의 후견인 역할을 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아동의 의견을 존중하여야 한다.

(제19조(아동의 후견인의 선임 청구 등) ①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아동복지시설의 장 및 학교의 장은 친권자 또는 후견인이 없는 아동을 발견한 경우 그 복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법원에 후견인의 선임을 청구하여야 한다.

②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아동복지시설의 장, 학교의 장 또는 검사는 후견인이 해당 아동을 학대하는 등 현저한 비행을 저지른 경우에는 후견인 변경을 법원에 청구하여야 한다.)

□ 개정안에 대하여 보건복지부는 미성년후견인 선임을 오로지 위탁 부모 개인의 의지·역량에 의지하는 가정위탁의 경우 후견인 선임이 다른 보호유형에 비하여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므로, 후견인 선임 전까지 그 보호자에게 필수적 범위 및 제한된 기간 내에 아동에 대한 법정대리권한을 부여하여 아동보호를 강화할 필요성에 공감한다는 입장임.

7. 아동권리보장원의 후견인 선임 등 법률상담 지원

[김미애의원안(의안번호 제3223호) 제20조의2 신설]

가. 개정안의 주요 내용

- 개정안은 아동권리보장원의 장이 친권행사의 제한 또는 친권상실의 선고 청구, 후견인 선임 청구, 보호대상아동 후견인의 권한 행사에 관한 사항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법률상담을 할 수 있도록 하면서, 아동복지시설의 장, 학교의 장, 가정위탁을 하고 있는 자, 보호대상아동의 후견인으로 선임된 사람이 아동권리보장원의 장에게 법률상담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려는 등의 내용임(안 제20조의2 신설).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20조의2(후견인 선임 지원) ① 보장원의 장은 다음 각 호에 따른 사항을 지원하기 위하여 법률상담을 할 수 있다. 1. 제18조에 따른 친권행사 제한 또는 친권상실의 선고 청구에 관한 사항 2. 제19조에 따른 보호대상아동의 후견인 선임 청구에 관한 사항 3. 보호대상아동 후견인의 권한 행사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보호대상아동의 후견인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아동복지시설의 장, 학교의 장, 가정위탁을 하고 있는 자 및 보

	<u>호대상아동의 후견인으로 선임된 사람은 보장원의 장에게 제1항에 따른 법률상담을 요청할 수 있다.</u> <u>③ 보장원의 장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기관·법인·단체에 제1항에 따른 법률상담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u> <u>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법률상담의 내용 및 절차, 업무위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u>
--	---

나. 주요 검토 사항

□ 현행 「아동복지법」 제18조 및 제19조⁴³⁾에서는 친권자의 친권 남용, 아동학대 등이 있는 경우 지자체장 등이 법원에 친권행사의 제한 또는 친권상실의 선고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친권자 또는 후견인이 없는 아동의 경우 지자체장 등이 법원에 후견인의 선임을 청구하도록 규정함. 그러나, 지자체의 소극적인 후견인 선임 청구 역할 이행⁴⁴⁾ 등으로 실제 신청은 별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 그에 따라, 현재 아동의 후견인 선임은 양육자(시설장, 위탁부모)에게 의존하는 경향이 있으며, 양육자는 서류준비 등 재판 절차에 어려움을 느껴 선임을 포기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음⁴⁵⁾.

43) 「아동복지법」 제18조(친권상실 선고의 청구 등) ①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검사는 아동의 친권자가 그 친권을 남용하거나 현저한 비행이나 아동학대, 그 밖에 친권을 행사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것을 발견한 경우 아동의 복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법원에 친권행사의 제한 또는 친권상실의 선고를 청구하여야 한다.

② 아동복지시설의 장 및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의 장(이하 “학교의 장”이라 한다)은 제1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검사에게 법원에 친권행사의 제한 또는 친권상실의 선고를 청구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③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검사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친권행사의 제한 또는 친권상실의 선고 청구를 할 경우 보장원 또는 아동보호전문기관 등 아동복지시설의 장, 아동을 상담·치료한 의사 및 해당 아동의 의견을 존중하여야 한다.

④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검사는 제2항에 따라 친권행사의 제한 또는 친권상실의 선고 청구를 요청받은 경우에는 요청받은 날부터 30일 내에 청구 여부를 결정한 후 해당 요청기관에 청구 또는 미청구 요지 및 이유를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라 처리결과를 통보받은 아동복지시설의 장 및 학교의 장은 그 처리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내에 직접 법원에 친권행사의 제한 또는 친권상실의 선고를 청구할 수 있다.

제19조(아동의 후견인의 선임 청구 등) ①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아동복지시설의 장 및 학교의 장은 친권자 또는 후견인이 없는 아동을 발견한 경우 그 복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법원에 후견인의 선임을 청구하여야 한다.

②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아동복지시설의 장, 학교의 장 또는 검사는 후견인이 해당 아동을 학대하는 등 현저한 비행을 저지른 경우에는 후견인 변경을 법원에 청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6. 3. 22.>

③ 제1항에 따른 후견인의 선임 및 제2항에 따른 후견인의 변경 청구를 할 때에는 해당 아동의 의견을 존중하여야 한다.

④ 아동복지시설에 입소 중인 보호대상아동에 대하여는 「보호시설에 있는 미성년자의 후견직무에 관한 법률」을 적용한다.

44) 법적 절차에 대한 낮은 접근성, 친권 상실 선고 등 청구 사유의 포괄성 등이 원인으로 지적되고(보건복지부, 『보호대상아동 후견인제도 실태조사 및 개선방안』(연구책임기관: 한양대학교 산학협력단), 2017, pp.38~43.), 다른 청구권자와의 관계에서 부모가 소재불명인 경우에는 자녀의 친족도 찾기 어려운 경우가 대부분이고(설령 찾는다고 해도 적지 않은 비용과 시간을 감수해 가면서까지 친권상실선고를 청구할 의사가 없을 가능성이 높음), 검사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이러한 경우에 친권상실선고를 청구한 사례는 거의 없음. 김상용, 「위탁아동의 친권과 후견」, 『중앙법학』 제19집제4호, 2017. 12, p. 221.

□ 2023. 4. 아동정책조정위원회의 ‘보호대상아동 후견제도 개선방안’에 따르면 보호대상아동의 상당수('22. 아동실태조사 시 보호대상아동 20,505명 중 12%에 해당하는 2,462명)가 부모의 사망·장기간 소재 불명·친권상실 등으로 친권 행사가 곤란함에도 후견인이 선임되지 않아,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한 입·퇴원·수술, 금융계좌 개설, 핸드폰 개통, 입학·전학 등에서 어려움 등 일상생활에서 제약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개정안은 친권 상실 등 신고나 후견인 선임이 필요한 아동을 보호하고 있거나 발견할 수 있는 아동복지시설의 장, 학교의 장, 가정위탁을 하고 있는 보호자, 보호대상아동의 후견인이 아동권리보장원의 장에게 법률상담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아동권리보장원에서는 일정한 요건을 갖춘 기관 등에 이를 위탁하여 법률적 전문성을 가진 기관이 재판 절차 등에 어려움을 느끼고 있는 보호자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로, 후견인 선임 청구 등을 활성화함으로써 아동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 한편, 보건복지부는 가정위탁아동 후견인 선임·활동지원사업⁴⁶⁾을 통하여, 친권자가 없거나 친권 행사가 불가능하여 일상생활에 불편함을 겪고 있는 가정위탁아동(「아동복지법」 제15조제1항제3호⁴⁷⁾)

45) 2023. 4. 13. 아동정책조정위원회, 『보호대상아동 후견제도 개선방안』

46) <가정위탁아동 후견인 선임·활동 지원 사업 집행내역>

(단위:백만원, %)

구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비비	예산 현액(A)	집행액(B) (실집행액)	집행율(B/A) (실집행율)	차년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2023년	300	300	-	-	-	300	129	43.0	163	8
2024년 (8월 현재)	-	-	163	-	-	163	107	65.6		

* 자료: 보건복지부

47) 제15조(보호조치) 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그 관할 구역에서 보호대상아동을 발견하거나 보호자의 의뢰를 받은 때에는 아동의 최상의 이익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보호조치를 하여야 한다.

3. 보호대상아동을 적합한 유형의 가정에 위탁하여 보호·양육할 수 있도록 조치하는 것

의 후견인 선임 및 후견인 활동에 필요한 비용과 후견인 역할 수행에 필요한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기도 함. 이는 구체적으로 아동권리보장원이 한국가정법률상담소와 연계⁴⁸⁾하여 후견인 선임 등에 관한 법률구조를 무상으로 지원하고, 위탁부모, 후견인, 지자체 공무원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는 사업임.

□ 위 사업에서 아동권리보장원은 신청 관련 문의 대응 및 추천자 서류 검토, 소송지원의 역할을 수행하고, 한국가정법률상담소에서 친권 상실, 미성년후견인 선임 등 가사소송 지원을 하고 있음.

- 2016년부터 2023년까지 총 지원 건수 236건 중 231건이 종결되었고, 종결된 231건 중 인용은 206건, 자진 취소 및 기각은 25건으로 나타남.

48) 2016년부터 중앙가정위탁지원센터(현 아동권리보장원)이 한국가정법률상담소와 연계하여 수행함.

<가정위탁아동 미성년후견인 선임 소송지원 결과 현황>

[2024년 8월 기준, 단위: 건]

구분	지원 사례	법률지원 사례 구분				소송 및 심판 청구 결과					
		친권상실 미성년 후견인 선임	미성년 후견인 선임	성변경	기타	인용			자진 취소	기각	진행중
						계	당해 인용	이월 인용			
계	236	149	59	22	6	206	64	142	11	14	5
2023	59	36	14	9	-	47	21	26	6	2	4
2022	44	28	8	6	2*	39	12	27	1	3	1
2021	48	35	7	5	1*	44	11	33	-	4	-
2020	36	23	11	2	-	32	9	23	-	4	-
2019	20	10	8	-	2*	18	4	14	2	-	-
2018	17	6	10	-	1*	17	3	14	-	-	-
2017	6	5	1	-	-	5	1	4	1	-	-
2016	6	6	-	-	-	4	3	1	1	1	-

* 미성년후견인 변경

자료: 보건복지부(2024. 8. 현재)

□ 다만, 개정안에 따라 아동권리보장원의 장이 법률상담을 하는 사항의 범위는 ‘후견인 선임 지원’에 한정되지 않으므로 ‘후견인 선임 지원 등’으로 조 제목을 변경하는 것이 필요하겠고, 아동권리보장원의 업무규정(제10조의2제2항49))에 법률상담 지원 업무를 추가하는

49) 제10조의2(아동권리보장원의 설립 및 운영) ② 보장원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아동정책 수립을 위한 자료 개발 및 정책 분석
2. 제7조의 기본계획 수립 및 제8조제2항의 시행계획 평가 지원
3. 제10조의 위원회 운영 지원
4. 제11조의2의 아동정책영향평가 지원
5. 제15조, 제15조의2, 제15조의3, 제16조, 제16조의2의 아동보호서비스에 대한 기술지원
6. 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를 위한 제22조제6항 각 호의 업무
7. 가정위탁사업 활성화 등을 위한 제48조제6항 각 호의 업무
8. 지역 아동복지사업 및 아동복지시설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지원
9. 「입양특례법」에 따른 국내입양 활성화 및 입양 사후관리를 위한 다음 각 목의 업무
 - 가. 국내외 입양정책 및 서비스에 관한 조사·연구
 - 나. 입양 관련 국제협력 업무
 - 다. 그 밖에 「입양특례법」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위탁받은 업무
10. 아동 관련 조사 및 통계 구축
11. 아동 관련 교육 및 홍보
12. 아동 관련 해외정책 조사 및 사례분석
13. 그 밖에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은 업무

것도 필요하겠음. 그 외, 제20조의2제4항 중 법률상담의 ‘내용’을 법률상담의 ‘범위’로 수정하는 것이 필요하겠음.

- 개정안과 관련하여 보건복지부는 친권 행사가 곤란함에도 후견인 선임이 잘 이루어지지 않아 일상생활에서 제약을 받는 아동들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개정안의 취지에 공감한다는 입장임.

8. 협동돌봄센터 제도화(남인순의원안 제44조의3 신설 등)

가. 개정안의 주요 내용

- 개정안은 보호자 등이 비영리조합을 결성하여 방과 후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협동형돌봄센터를 지자체장의 인가를 받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국가 및 지자체가 이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며, 설치기준 및 종사자의 자격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함과 아울러, 아동통합정보시스템에 필요한 정보, 아동학대 발생 방지를 위해 필요한 정보, 아동관련기관 취업제한대상에 협동돌봄센터 관련 내용을 추가하려는 것임(안 제44조의3 신설 등).

현행	개정안
제15조의2(아동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① (생략)	제15조의2(아동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① (현행과 같음)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아동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하는 데 필요한 정보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수집·관리·보유할 수 있으며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관계 기관 및 단체의 장 등에게 필요한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기관의 장은 정당한	② ----- ----- ----- ----- ----- ----- ----- ----- ----- -----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1. ~ 6. (생략)

<신설>

7. ~ 14. (생략)

③ ~ ⑥ (생략)

제28조의2(아동학대정보의 관리 및 제공) ①·② (생략)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아동의 보호 및 아동학대 발생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아동정보시스템상의 피해아동, 그 가족 및 아동학대행위자에 관한 정보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목적과 필요한 정보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한다.

1. ~ 4의2. (생략)

<신설>

5. ~ 7. (생략)

④·⑤ (생략)

제29조의3(아동관련기관의 취업 제한 등) ① 법원은 아동학대

-----.

1. ~ 6. (현행과 같음)

6의2. 제44조의3에 따른 협동돌

봄센터가 보유한 정보

7. ~ 14. (현행과 같음)

③ ~ ⑥ (현행과 같음)

제28조의2(아동학대정보의 관리 및 제공)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

1. ~ 4의2. (현행과 같음)

4의3. 제44조의3에 따른 협동돌

봄센터의 대표자

5. ~ 7. (현행과 같음)

④·⑤ (현행과 같음)

제29조의3(아동관련기관의 취업 제한 등) ① -----

관련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하는 경우에는 판결(약식명령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유예·면제된 날(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그 형이 확정된 날을 말한다)부터 일정기간(이하 “취업제한기간”이라 한다) 동안 다음 각 호에 따른 시설 또는 기관(이하 “아동관련기관”이라 한다)을 운영하거나 아동관련기관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도록 하는 명령(이하 “취업제한명령”이라 한다)을 아동학대관련범죄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약식명령의 경우에는 고지를 말한다)하여야 한다. 다만,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은 경우나 그 밖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보장원, 지방자치단체(전담 공무원, 민간전문인력, 아동학

1.

대전담공무원으로 한정한다), 제37조에 따른 취약계층 아동 통합서비스 수행기관, 아동보호전문기관, 제44조의2에 따른 다함께돌봄센터, 제48조에 따른 가정위탁지원센터 및 제52조의 아동복지시설

2. ~ 26. (생략)

② ~ ⑦ (생략)

<신설>

-----제44조의2에
따른 다함께돌봄센터, 제44조
의3에 따른 협동돌봄센터-----

2. ~ 26. (현행과 같음)

② ~ ⑦ (현행과 같음)

제44조의3(협동돌봄센터) ① 보호

자 또는 보호자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돌봄종사자(협동돌봄센터에서 방과 후 돌봄서비스를 직접 제공하는 보호자 이외의 자를 말한다)는 조합(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조합에 한정한다)을 결성하여 초등학교의 정규교육 이외의 시간 동안 방과 후 돌봄서비스를 실시할 수 있는 협동돌봄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협동돌봄센터를 설치·운영하려는 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인가받은 사항 중 보건복지부령으

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
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협
동돌봄센터의 설치·운영에 필
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④ 협동돌봄센터는 제1항에 따
른 조합이 정하는 바에 따라
아동의 보호자에게 방과 후 돌봄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

⑤ 그 밖에 협동돌봄센터의 설
치기준, 운영, 돌봄종사자의 자
격 및 인가 등에 필요한 사항
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나. 주요 검토 사항

- 현행 「아동복지법」에서는 초등학생 대상 방과 후 돌봄 기관으로 다함께돌봄센터 및 지역아동센터를 규정하고 있는데, 두 기관 모두 방과 후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보호, 교육, 체험 등의 돌봄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방과 후 아동 보호 및 가정의 양육 부담 완화에 기여하고 있음. 두 기관은 서비스의 내용은 유사하나 설치 주체, 이용 대상에서 차이가 있는데, 지역아동센터는 지자체 외 개인 또는 법인이 설치할 수 있고, 기초수급자·차상위계층 등 우선돌봄아동이 정원의 50% 이상이 되어야 함.

< 지역아동센터 및 다함께돌봄센터 비교 >

구분	지역아동센터	다함께돌봄센터
돌봄서비스 내용	○ 아동의 보호·교육 ○ 건전한 놀이와 오락의 제공 ○ 보호자와 지역사회의 연계	○ 아동의 안전한 보호 ○ 안전하고 균형 있는 급식 및 간식의 제공 ○ 등·하교 전후, 야간 또는 긴급상황 발생 시 돌봄서비스 제공 ○ 체험활동 등 교육·문화·예술·체육 프로그램의 연계·제공 ○ 돌봄 상담, 관련 정보의 제공 및 서비스의 연계 ○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방과 후 돌봄서비스의 제공
설치 근거	「아동복지법」 제52조제1항제8호	「아동복지법」 제44조의2
설치주체	개인 또는 법인/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
설치현황	4,235개소('24. 6 기준) (종사자 9,733명, 센터별 평균 2.3명)	1,119개소('24. 6 기준) (종사자 3,476명)
아동현황	110,404명('24. 6 기준)	현원 25,637명(정원 26,631명) ('24. 6 기준)
이용대상	우선돌봄아동(50% 이상)* 및 일반아동 *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다문화·한부모·조손가구 등	일반아동 * 맞벌이부모 가정 아동 중심 (소득수준과 상관없이 누구나 이용 가능하나, 각 지자체는 지역여건에 따라 맞벌이 등 이용우선순위 정할 수 있음)

연령기준	만18세 미만	만6세~12세 아동(초등학생)
자부담	무료 (일반아동은 월10만원 내 프로그램비 부담 가능)	아동 1인당 월 10만원 범위 내 센터(지자체) 자율 부과
지원조건	시설평가 후 적합시설에 신고일로부터 24개월부터 운영비 지원	「아동복지법」 및 사업지침 등에 따른 설치·운영 기준 충족 필요
예산지원	(법인 시설) 인건비, 사업비 지원	인건비, 사업비 전액 지원 (국공립 돌봄기관)

자료: 보건복지부

- 아울러, 2024년 2월 교육부는 초등학교 정규수업 외에 학교와 지역사회의 다양한 교육자원을 연계하여 학생 성장·발달을 위해 제공하는 종합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늘봄학교 추진방안을 발표한바, 2024년 9월 현재 모든 초등학교에서 1학년을 대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2026년까지 모든 초등학생으로 이용대상을 확대하면서, 장애학생, 이주배경학생 등 대상별 맞춤형 지원을 강화한다는 계획임.
- 한편, 일·가정 양립 등을 위한 돌봄서비스의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부모와 돌봄종사자가 협력하여 공동으로 운영하는 돌봄 공동체인 ‘초등 마을 방과 후 돌봄(협동돌봄센터)’가 10년 이상 운영되고 있는바, 돌봄 수요자인 부모가 돌봄 주체로 참여한다는 점에서 투명성 및 민주적 운영 면에서 장점이 많은 제도로 알려져 있음.
- 참고로, 협동돌봄센터의 경우 운영주체는 보호자 10인(또는 보호자와 돌봄교사 포함) 이상으로 구성된 비영리법인으로,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이용 아동 현황은 약 800명으로 파악되며, 비용과 관련하여 출자금(공간 보증금) 납부 및 아동 1인당 월 40만원 이상 전액을 자부담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음.

□ 현재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협동돌봄센터의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정확한 현황을 파악할 수는 없으나, 일부 사단법인에서 초등 방과후 육아공동체로 23곳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는데, 개정안은 이러한 협동돌봄센터의 설치·운영, 비용 지원 등의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협동돌봄센터가 보다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여 부모의 돌봄 선택지를 다양화하고, 부모와 돌봄 종사자 간 유대감을 바탕으로 다함께돌봄센터 등 다른 센터와 차별화하여 돌봄서비스의 질 제고에 기여할 수 있는 긍정적 입법조치로 보임.

< 공동육아 초등 방과후 분포 현황 >

지역	서울	경기	부산	인천	대구	대전	충남	제주
개소수	8	6	4	1	1	1	1	1

자료: (사)공동육아와 공동체교육

□ 아울러, 협동돌봄센터에서도 아동과 돌봄 종사자 간 밀접한 접촉이 예상되므로, 아동통합정보시스템 운영에 필요한 정보의 수집, 아동의 보호 및 학대 발생 방지를 위한 정보제공 요청, 아동관련 취업제한대상 기관에 협동돌봄센터를 추가하려는 개정안의 내용에는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하겠음.

□ 관련 입법례로 「영유아보육법」에서는 ‘협동형 어린이집’의 근거를 두고 있고⁵⁰⁾ 2022년 말 기준 전국에 132개소가 운영되고 있기도 함.

50) 「영유아보육법」 제10조(어린이집의 종류) 어린이집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공립어린이집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는 어린이집
2. 사회복지법인어린이집 :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법인(이하 “사회복지법인”이라 한다)이 설치·운영하는 어린이집
3. 법인·단체등어린이집: 각종 법인(사회복지법인을 제외한 비영리법인)이나 단체 등이 설치·운영하는 어린이집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어린이집
4. 직장어린이집 : 사업주가 사업장의 근로자를 위하여 설치·운영하는 어린이집(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소속 공무원 및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자로서 공무원이 아닌 자를 위하여 설치·운영하는 어린이집을 포함한다)

□ 다만, 개정안 제44조의3제5항에 따라 협동돌봄센터의 설치 기준, 운영 등과 관련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게 되는데, 효과적인 제도 운영을 위해 충분한 사전 준비가 필요하겠고, 관련하여 개정안에서는 시행일을 공포 후 3개월로 규정하고 있는데 신규 제도 준비에 충분한 기간을 부여할 필요가 있겠음.

□ 아울러, 협동돌봄센터와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게 되는 지역아동센터의 경우 「아동복지법」상 아동복지시설의 한 유형으로 되어 있는 만큼(「아동복지법」 제52조제1항제8호⁵¹⁾), 협동돌봄센터도 아동복지시설의 한 유형으로 규정하는 것이 필요하겠고, 이러한 경우 협동돌봄센터의 설치·신고 절차에 따르게 됨⁵²⁾.

구체적으로 협동돌봄센터가 아동복지시설에 포함되는 경우, 「아동복지법」에 아동복지시설 관련 비용 지원⁵³⁾, 신고 및 설치 기준, 운영⁵⁴⁾, 종사자의 자격⁵⁵⁾ 등에 필요한 사항 규정이 마련되어 있으

5. 가정어린이집 : 개인이 가정이나 그에 준하는 곳에 설치·운영하는 어린이집

6. 협동어린이집 : 보호자 또는 보호자와 보육교직원이 조합(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조합에 한한다)을 결성하여 설치·운영하는 어린이집

7. 민간어린이집 :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어린이집

51) 「아동복지법」 제52조(아동복지시설의 종류) ① 아동복지시설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8. 지역아동센터: 지역사회 아동의 보호·교육, 건전한 놀이와 오락의 제공, 보호자와 지역사회의 연계 등 아동의 건전육성을 위하여 종합적인 아동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

52) 「아동복지법」 제50조(아동복지시설의 설치)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아동복지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는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고 아동복지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④ 아동복지시설의 시설기준 및 설치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53) 「아동복지법」 제59조(비용 보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1. 아동복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과 프로그램의 운용에 필요한 비용 또는 수탁보호 중인 아동의 양육 및 보호관리에 필요한 비용

54) 「아동복지법」 제50조(아동복지시설의 설치)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아동복지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는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고 아동복지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④ 아동복지시설의 시설기준 및 설치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55) 「아동복지법」 제54조(아동복지시설의 종사자) ① 아동복지시설에는 필요한 전문인력을 배치하여야 한다.

② 아동복지시설 종사자의 직종과 수, 그 자격 및 배치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므로, 개정안 중 제44조3의3제2항(인가), 같은 조 제3항(비용 지원), 같은 제5항(설치 기준)은 정비가 필요하겠음.

□ 그 외, 부칙에 현재 운영되고 있는 협동돌봄센터를 개정안에 따른 협동돌봄센터로 간주하는 경과규정을 두고, 일정 유예 기간 내에 법정 설치·운영 기준을 득(得)하도록 하는 내용도 추가할 필요가 있겠음.

□ 개정안에 대하여 보건복지부는 초등학생을 위한 방과 후 돌봄 확충의 필요성 및 부모, 종사자 등이 협력하여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돌봄시설의 안정적 운영을 지원하고자 하는 개정 취지에 공감하나, 지자체를 설립·운영 주체로 한정하고 있는 다함께돌봄센터와 구별하여 협동돌봄센터는 국가·지자체 외의 자가 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아동복지법」 제52조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의 한 유형으로 포함하고, 인가가 아닌 신고 수리 절차에 따라 설치하는 방향으로 수정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입장임.

< 관계 부처 등 의견 >

기관명	개정안에 대한 의견
보건복지부	초등학생을 위한 방과 후 돌봄 확충 필요성 및 부모, 종사자 등이 협력하여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돌봄시설의 안정적 운영을 지원하고자 하는 개정 취지에 공감하나, 사회복지시설·아동복지시설 설치 규정을 고려하여 인가가 아닌 신고 수리 절차에 따라 설치하는 방향으로 수정이 필요하고, 국가·지자체 외의 자가 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아동복지시설의 한 유형으로 규정하는 방향 검토 필요
사단법인 공동육아와 공동체교육	협동돌봄센터는 돌봄의 수요자인 부모가 돌봄의 주체로 참여한다는 점에서 투명성을 높일 뿐만 아니라 공동체 정신의 회복과 함양이라는 측면에서도 의미가 있는바, 그 설치·운영 규정을 신설하고 국가 및 지자체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보다 안정적 운영을 통하여 돌봄 문제 해소에 기여할 수 있을 것임
사단법인 전국지역 아동센터협의회	마을 후 방과후시설의 역사성, 역할, 부모가 돌봄의 주체로 참여한다는 협동조합 취지와 목적에 맞는 다양한 돌봄 형태 확대의 필요성에 공감하나, 기존 여성가족부 공동육아나눔터, 협동조합 운영 지역아동센터, 지자체로부터 다함께돌봄센터를 위탁운영하고 있는 협동조합도 있으므로 현재 법적 근거를 가지고 운영 중인 돌봄체계에 편입하는 것이 효과적이라 할 것임

9. 자립지원 조치에 ‘의료’ 추가(고동진의원안 제38조제1항)

가. 개정안의 주요 내용

- 개정안에서는 보호대상아동의 위탁보호 종료 또는 아동복지시설 퇴소 이후 자립 지원을 위한 조치에 ‘의료’를 추가함(안 제38조 제1항제1호).

현행	개정안
제38조(자립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보호대상아동의 위탁보호 종료 또는 아동복지시설 퇴소 이후의 자립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조치를 시행하여야 한다.	제38조(자립지원) ① ----- ----- ----- ----- -----.
1. 자립에 필요한 주거·생활·교육·취업 등의 지원	1. ----- <u>취업·의료</u> -----
1의2. ~ 5. (생략)	1의2. ~ 5. (현행과 같음)
②·③ (생략)	②·③ (현행과 같음)

나. 주요 검토 사항

- 최근 보호종료아동(자립준비청년) 현황을 살펴보면, 2019~2023년까지 5년간 매년 약 1,200~2,600명이 보호종료되어 2023년말 기준으로 보호종료아동은 9,970명에 이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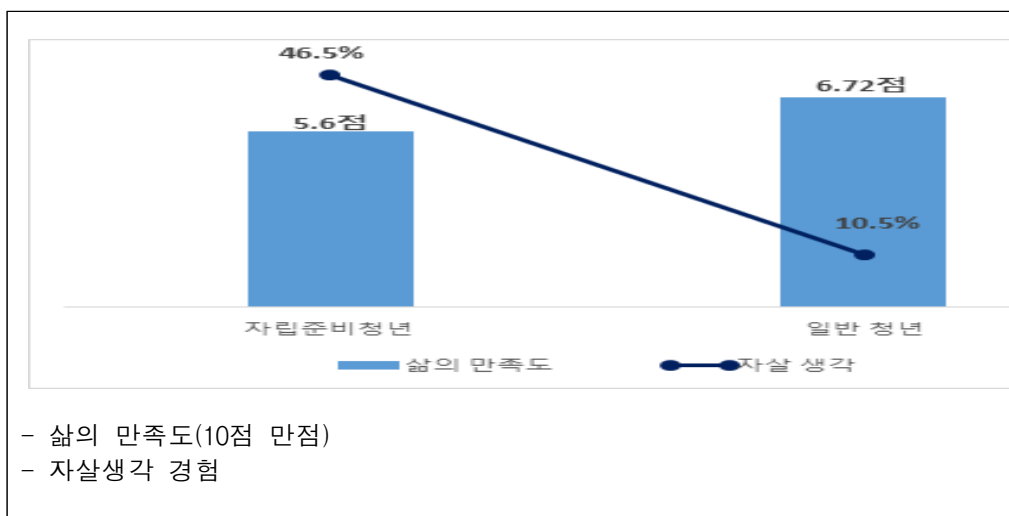
< 연도별 보호종료아동 현황 >

연 도	합 계	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가정위탁
보호종료 5년	9,970명	3,843명	767명	5,360명
2023년	1,173명	581명	146명	446명
2022년	1,740명	717명	124명	899명
2021년	2,102명	726명	157명	1,219명
2020년	2,368명	827명	168명	1,373명
2019년	2,587명	992명	172명	1,423명

* 자료 : 보건복지부

- 보건복지부가 실시한 ‘2023 자립지원 실태조사’ 결과, 보호종료아동 중 20.7%가 최근 1년간 병·의원 진료가 필요했지만 받지 못하였으며, 그 주된 이유는 ‘진료비 부담’(58.5%) 때문인 것으로 조사되었고, 또한, 보호종료아동의 삶의 만족도(5.6점)는 일반청년·청소년의 삶의 만족도(6.72점)에 비해 낮고, 자살생각 경험 등이 높아 심리·정서적으로도 취약한 상태(보호종료아동 중 한 번이라도 자살 생각을 해 본 적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46.5%로, 전체 청년 10.5%보다 상당히 높음)이므로 의료 지원이 강화될 필요가 있겠습니다.

< 보호종료아동의 삶의 만족도, 자살생각 경험 비교 >



* 자료: '2023 자립지원 실태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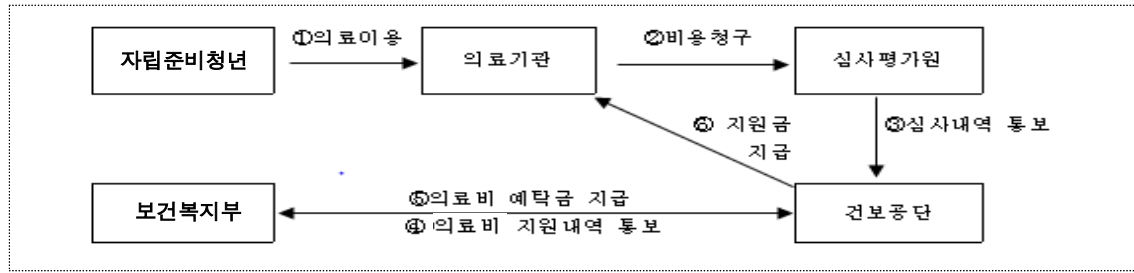
□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행 「아동복지법」 제38조에서는 국가 및 지자체로 하여금 보호대상아동의 위탁보호 종료 또는 아동복지시설 퇴소 이후 자립 지원을 위해 주거·생활·교육·취업 등 지원을 규정하고 있고, 의료 지원에 대해서는 명시되어 있지 않음.

한편, 보건복지부는 2024년부터 보호종료아동(자립준비청년) 대상으로 의료비 지원 사업을 실시하고 있는바, 개정안과 같이 자립지원 조치에 '의료'가 추가되는 경우 동 사업의 안정적 추진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임.

< 자립준비청년 의료비 지원 사업 개요 >

- (목적) 자립준비청년에게 의료비 본인부담금을 지원하여 자립 초기 건강한 생활을 보장하고 안정적 자립기반 형성을 지원
- (지원대상) ① 아동복지시설, 가정위탁 보호종료 후 5년 이내 자립준비청년* 중 ②지역·직장 건강보험 가입자**(소득수준 무관)
 - * 보호종료 후 5년 이내 자립준비청년 12,300명 중 약 8,000명(약 65%)
 - ** 「국민건강보험법」 제5조제1항에 따른 건강보험 적용대상

- (지원내용) 대상자는 의료서비스 이용 시 의료급여 2종과 유사한 수준의 본인부담금*만 납부하고 차액은 국고에서 지원
 - * 건강보험 가입자 중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본인부담률은 이와 유사한 수준(14%)으로 설정
- ('24년 예산) 1,300백만원 (국비 100%, 민간경상보조)
- (추진체계) 건강보험공단 위탁을 통한 본인부담금 사전 경감 방식*
 - * 의료이용 시 경감된 본인부담금만 부담하므로 체감도가 높고, 건강보험공단의 지원 내역 관리가 가능하여 타 의료비 지원 제도와 중복지원 문제 완화



자료: 보건복지부

- 그 외, 의료 지원 규정방식과 관련하여, 이를 자립의 기본적 조건으로 보아 자립지원 조치의 한 종류로 규정하는 방식 외에 다른 입법례를 참고하여 의료비 지원에 대한 별도의 규정 신설 방식도 함께 검토할 필요도 있겠음.

< 의료비 지원 별도 규정을 둔 입법례 >

법률	규정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제17조(의료비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의료비를 부담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장애인에게 장애 정도와 경제적 능력 등을 고려하여 장애 정도에 따라 의료비에 사용되는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제19조(의료비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아동의 의료적 욕구에 따라 적절한 의료비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의료비지원은 「국민건강보험법」과 「의료급여법」에 따라 제공되는 의료에 드는 비용 중 장애아동의 부담을 지원하는 것으로 한다.
「치매관리법」	제12조(치매환자의 의료비 지원사업)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치매환자의 경제적 부담능력을 고려하여 치매 치료 및 진단에 드는 비용을 예산에서 지원할 수 있다.
「암관리법」	제13조(암환자의 의료비 지원사업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암환자의 암 종류별 경제적 부담능력 등을 고려하여 암 치료에 드는 비용을 예산 또는 국민건강증진기금에서 지원할 수 있다.
「희귀질환 관리법」	제12조(의료비 지원 사업)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희귀질환자의 경제적 부담능력 등을 고려하여 희귀질환의 진단 및 치료에 드는 비용을 예산 또는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른 국민건강증진기금에서 지원할 수 있다.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의료비의 지원)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3조제3항 및 제18조제4호에 따라 상담소등의 장이 의료기관에 질병치료 등을 의뢰한 경우에는 「의료급여법」상의 급여가 지급되지 아니하는 치료항목에 대한 의료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인신매매등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의료비 지원)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피해자권익보호기관 또는 제33조에 따른 인신매매등피해자지원시설의 장이 피해자등에 대하여 의료기관에 질병치료 등을 의뢰한 경우에는 「의료급여법」 제7조에 따른 의료급여가 지급되지 아니하는 치료항목에 관한 의료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0. 학교 등 취업자의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조회 절차 개선 (강준현의원안 제29조의3제7항 신설)

가. 개정안의 주요 내용

- 개정안에서는 교육감 또는 교육장이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등 아동관련기관에 취업 중이거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 중인 사람 또는 취업하려 하거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려는 사람(이하 ‘취업자등’이라 함)에 대하여 취업자등의 동의를 받아 아동학대관련범죄⁵⁶⁾ 전력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함(안 제29조의3제7항 신설).

현 행	개 정 안
제29조의3(아동관련기관의 취업제한 등) ① ~ ⑥ (생략) <u><신설></u>	제29조의3(아동관련기관의 취업제한 등) ① ~ ⑥ (현행과 같음) <u>⑦ 제5항에도 불구하고 교육감 또는 교육장은 다음 각 호의 아동관련기관의 취업자등에 대하여는 본인의 동의를 받아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을 확인할 수 있다. 이 경우 아동관련기관의 장이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를 한 것으로 본다.</u> <u>1. 제1항제7호의 어린이집</u> <u>2. 제1항제8호의 유치원</u> <u>3. 제1항제18호의 학교 및 학습부진아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는 기관</u> <u>⑧ (현행 제7항과 같음)</u>
<u>⑦</u> (생략)	

56) 「아동복지법」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7의2. “아동학대관련범죄”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말한다.

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아동학대범죄

나. 아동에 대한 「형법」 제2편 제24장 살인의 죄 중 제250조부터 제255조까지의 죄

나. 주요 검토 사항

- 현행 「아동복지법」 제29조의3제5항⁵⁷⁾에 따라 학교, 유치원 등 아동학대관련범죄자의 취업제한 대상기관에 취업하려는 자에 대해서는 학교 등 기관의 장이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을 개별적으로 확인해야 하고, 이에 따라 일선 학교와 경찰서의 행정력이 낭비되고 인력 채용도 적기에 이루어지기 어렵다는 문제도 있음.
- 특히, 최근에는 학교 등 교육기관에서 전문 강사 등을 직접 채용하기보다는 교육청에서 일괄 모집하여 각 교육기관에 파견 등의 형태로 지원하는 경우가 많고, 강사마다 여러 교육기관에서 수업을 함에 따라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가 중복된다는 지적⁵⁸⁾이 있음.
- 개정안은 교육기관 지원 인력을 총괄하는 교육감 또는 교육장이 어린이집, 유치원 및 학교에 취업하려는 자에 대하여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을 일괄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는 점에서 이러한 문제 해소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임.
- 관련하여, 개정안과 동일한 취지로 교육감 또는 교육장이 아동·청소년 관련기관의 취업자에 대하여는 본인의 동의를 받아 성범죄의 경력을 확인한 경우 아동·청소년 관련기관의 장이 성범죄 경력 조회를 한 것으로 간주하는 내용으로 「아동·청소년의 성보

57) 「아동복지법」 제29조의3(아동관련기관의 취업제한 등) ⑤ 아동관련기관의 장은 그 기관에 취업 중이거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 중인 사람 또는 취업하려 하거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려는 사람(이하 “취업자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을 확인하여야 하며, 이 경우 본인의 동의를 받아 관계기관의 장에게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를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취업자등이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회신서를 아동관련기관의 장에게 직접 제출한 경우에는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를 한 것으로 본다.

58) 학교폭력조사관을 교육지원청이 위촉하면서 일괄적으로 범죄경력을 조회하지 않고 각 학교에서 범죄경력 조회를 실시하도록 한 것에 대하여 한국교총이 교육부에 개선을 요구하기도 함(한국교육신문, 2024. 3. 19. 자 기사)

호에 관한 법률」이 개정(2023. 4. 11.)되어 시행(2023. 10. 12.) 중에 있기도 함⁵⁹⁾.

□ 다만, 현행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국·공립 어린이집 외의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려는 경우 시장 등 지자체장의 인가를 받아야 하고⁶⁰⁾, 이에 따라 아동학대관련범죄 경력자료에 대한 조회 요청권자도 지자체장으로 규정⁶¹⁾되어 있는 등 어린이집은 지자체에서 관리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개정안 중 ‘어린이집’은 삭제되어야 하겠고, 어린이집 포함 여부는 유·보 통합에 따른 「영유아보육법」 개정 진행 상황을 고려하여 추후 판단되어야 하겠음.

□ 개정안에 대하여 보건복지부는 유치원·학교 등 취업자등에 대한 신속한 아동관련 범죄 전력 확인을 통해 교육기관에서의 아동보호를 강화하고, 교육 현장의 행정 부담 완화 및 혼란·비효율의 조속한 해소가 필요하므로 개정 취지에 공감하나, 어린이집의 경우 「영유아보육법」

59)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에의 취업제한 등) ⑧ 제5항에도 불구하고 교육감 또는 교육장은 다음 각 호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의 취업자등에 대하여는 본인의 동의를 받아 성범죄의 경력을 확인할 수 있다. 이 경우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의 장이 성범죄 경력 조회를 한 것으로 본다.

1. 제1항제1호의 유치원
2. 제1항제2호의 학교 및 위탁 교육기관
3. 제1항제2호의2의 학생상담지원시설 및 위탁 교육시설
4. 제1항제19호의 특수교육지원센터 및 특수교육 관련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단체
5. 제1항제21호의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기관

60) 「영유아보육법」 제13조(국공립어린이집 외의 어린이집의 설치) ① 국공립어린이집 외의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인가 받은 사항 중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61) 「영유아보육법」 제51조의3(관계 기관 간 업무협조) 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16조 또는 제20조에 따른 결격사유 확인을 위하여 관계 기관의 장에게 범죄경력자료 등에 대한 조회요청을 할 수 있다.

(제16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할 수 없다.

5.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아동복지법」 제3조제7호의2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20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6.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다만, 「아동복지법」 제3조제7호의2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에는 그 집행유예가 확정된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제54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또는 「아동복지법」 제3조제7호의2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로 벌금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에 따라 교육감이 아닌 지자체에서 관리하고 있다는 점에서 대상 기관에서 삭제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임.

- 참고로, 교육감 또는 교육장이 유치원, 학교 및 학습부진아 등에 대한 교육기관의 취업자등에 대하여 본인의 동의를 받아 아동학대 관련범죄 전력을 확인할 수 있고, 이 경우 아동관련기관의 장이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를 한 것으로 본다는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정성국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2202090호)이 우리 위원회에 계류되어 있음.

11. 아동학대사망 분석 및 관리체계 마련(김미애의원안

제29조의9부터 제29조의 11까지 신설 등)

가. 개정안의 주요 내용

- 개정안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아동학대사망사건의 사례를 분석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위하여 아동정책조정위원회에 아동학대사망사건분석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하며, 피해아동등 면담·의견청취와 함께 형사사법정보 및 기타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9조의9부터 제29조의 11까지 신설 등).

현행	개정안
<신설>	제29조의9(아동학대사망사건의 사례 분석)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아동학대로 인한 아동 사망 사건(이하 “아동학대사망사건”이라 한다)의 예방과 효과적인 아동학대 대응 체계 구축을 위하여 아동학대사망사건의 사례를 분석할 수 있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분석(이하 “아동학대사망사건분석”이라 한다)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장원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아동학대사망사건분석 및 아동학대사망사건의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아동학대사망사건분석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 이 경우 아동학대사망사건분석특별위원회의

<신 설>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9조의10(아동학대사망사건 관련 면담 및 자료 요청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제29조의9제2항에 따라 아동학대사망사건분석 업무를 위탁받은 보장원의 장은 아동학대사망사건분석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면담하여 아동학대사망사건 및 피해아동과 그 유족, 아동학대행위자(이하 이 조에서 “피해아동등”이라 한다)에 관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1. 아동학대사망사건의 유족, 아동학대행위자와 그 밖의 관계인, 피해아동등의 관계인 및 주변인
2. 아동학대사망사건 및 피해아동등과 관련된 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아동보호전문기관이나 그 밖의 기관·단체에 소속된 직원
3. 피해아동등과 관련된 법원(지원을 포함한다)에 소속된 직원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아동학대사망사건분석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아동학대사망사건 및 피해아동등에 관한 정보나 자료(형사사법 정보는 제외한다)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정보나 자료 제출을 요구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구에 협조하여야 한다.

<신 설>

1. 아동학대사망사건 및 피해아동등과 관련된 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이나 그 밖의 기관·단체의 장

2. 아동학대사망사건 및 피해아동등과 관련된 법원(지원을 포함한다) 및 수사기관의 장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아동학대사망사건분석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제1항에 따른 면담으로 알게 된 정보 및 제2항에 따라 얻은 정보나 자료를 제29조의9제2항에 따라 아동학대사망사건분석 업무를 위탁받은 보장원의 장에게 제공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면담으로 알게 된 정보 및 제2항에 따라 제공받은 정보나 자료를 활용하여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했던 사람은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업무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제1항에 따라 면담에 응하여 의견을 말하거나 제2항에 따라 정보나 자료를 제출한 사람은 이를 이유로 소속 기관·단체로부터 해고·전보·징계·부당한 대우 또는 그 밖에 신분이나 처우와 관련하여 불이익을 받지 아니한다.

제29조의11(형사사법정보의 제공 요청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아동학대사망사건분석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검찰총장, 경찰청장 및 해양경

찰청장에게 형사사법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형사사법정보의 제공을 요청받은 기관(이하 이 조에서 “제공기관”이라 한다)의 장은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 제6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아동학대사망사건분석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제2항에 따라 제공받은 형사사법정보를 보장원의 장에게 제공할 수 있다.

④ 제공기관의 장은 보건복지부장관 및 제29조의9제2항에 따라 아동학대사망사건분석 업무를 위탁받은 보장원의 장(제3항에 따라 형사사법정보를 제공받은 경우로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형사사법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개인의 정보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사용방법·사용부서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제한을 하거나 형사사법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이하 이 조에서 “정보보호조치”라 한다)를 강구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⑤ 누구든지 이 법에 따라 제공받은 형사사법정보를 목적의 범위를 초과하여 사용하거나 목적의 범위를 초과하여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 제공기관의 장은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보장원의 장이 정보보호조치를

제71조(벌칙) ① (생략)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생략) <u><신설></u> <u><신설></u> 2. (생략) ③ (생략) 제75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2. (생략) <u><신설></u> ② ~ ④ (생략)	<u>하지 아니하거나 제5항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형사사법정보의 제공을 중지 또는 제한할 수 있다.</u> ⑦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것 외에 형사사법정보의 제공 범위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과 제공기관의 장이 협의하여 정한다. 제71조(벌칙) ① (현행과 같음) ② ----- ----- -----. 1. (현행과 같음) 1의2. 제29조의10제4항을 위반하여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업무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사람 1의3. 제29조의11제5항을 위반하여 형사사법정보를 목적의 범위를 초과하여 사용하거나 목적의 범위를 초과하여 제3자에게 제공한 자 2. (현행과 같음) ③ (현행과 같음) 제75조(과태료) ① ----- ----- -----. 1. 2. (현행과 같음) 3. 제29조의10제5항을 위반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한 사람 ② ~ ④ (현행과 같음)
--	--

나. 주요 검토 사항

- 보건복지부의 「2023 아동학대 주요통계」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최종 학대 판단 건수는 2021년 37,605건으로 정점을 보이다 이후 감소하여 2023년 25,739건이며, 아동학대 사망 사건은 일정한 추세는 없는 것으로 보이는데, 2021년 40건, 2022년 50건, 2023년 44건임. 다만, 아동학대 사망사건의 경우 유관 기관 간 정보 연계 부족 등으로 실제보다 축소되었을 수 있다는 문제가 2024년도 국정감사에서 지적된 바 있음⁶²⁾.

< 최근 5년간 아동학대 관련 일반 통계 >

(단위:건)

구분	2019	2020	2021	2022	2023
전체 신고건수	41,389	42,251	53,932	46,103	48,522
아동학대의심사례건수	38,380	38,929	52,083	44,531	45,771
최종 학대 판단건수	30,045	30,905	37,605	27,971	25,739
아동학대 사망사건 발생건수	42	43	40	50	44

* 자료: 보건복지부(「2023 아동학대 주요통계」)

- 아동학대는 아동에게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입히고, 장기적인 트라우마도 남기게 될 수 있는데, 무엇보다도 아동학대로 인한 가장 중대한 피해는 아동의 사망일 것임에도, 아동학대 사망사건은 개별 사건이 국민적 관심 대상이 된 후 사후적인 대책 마련 수준에 그칠 뿐 이에 대한 공적 조사 체계가 미흡하며, 사건의 원인과 문제를 충분히 진단한 후 실효성 있는 아동학대 사망사건 방지체계의 마련으로 나아가지 못했다는 지적이 있어 왔음⁶³⁾.

62) 2024년도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 김선민의원실 보도자료: 2020년 인천에서 발생한 소위 라면형제 방임 및 화재 사망사건의 경우 친모가 「아동복지법」 위반으로 형벌을 받았음에도 행복e음시스템에는 ‘일반 사망’으로 입력되어 있었고, 관할 경찰서로부터 사건을 통보받지 못해 해당 지자체가 아동학대 사망 사건으로 인지하지 못한 사례들이 지적되었음.

63) 소라미, 「아동학대 사망사건에 대한 공적 진상조사의 필요성 및 법제화 방안에 대한 검토」, 『사회복지법제연구』 제12권 제2호, 2021. 8. p.160.

< 아동학대대응체계 강화방안 등 >

□ 「포용국가 아동정책」('19.5월) -아동학대 관련 내용-

- (대응체계) 학대조사 공공화로 민간에서 수행하던 학대 조사 업무를 시군구로 이관, 아동보호 전문기관은 전문 사례관리 기관으로 개편
- (전수조사) 만3세 전수조사 연 1회 실시('19~)
- (징계권) 민법 제915조에 규정된 친권자의 '징계권' 용어 변경 또는 한계 설정

□ 「아동·청소년 학대 방지대책」('20.7월)

- (정보연계) 지역별 정보연계협의체 구성하여 학교 등 위기아동 정보 공유
- (대응체계) 아동학대전담공무원 전 지자체 배치 '22→ '21년 단축
- (보호) 학대 발생 즉시 아동을 가정에서 분리하는 즉각분리제도 도입
- (단계별 실효성) 대응인력 출입범위 확대, 사례관리 거부 시 제재규정 신설 등

□ 「아동학대 대응체계 강화방안」('21.1월)

- (초기대응) 교육 확대·지침 마련 등 초기대응의 전문성 및 이행력 강화
- (대응인력) 전담공무원 등 대응인력의 조속한 배치, 업무여건 개선(조사차량 등)
- (분리보호) 쉼터 확충, 일시보호체계 강화로 차질 없는 즉각분리제도 시행
- (인식개선) 아동학대범죄 양형기준 개선 제안, 대국민 아동학대 예방캠페인 전개
- (입양) 입양기관 관리감독 강화 등 입양절차의 공적 책임 강화

□ 「아동학대 대응체계 보완방안」('21.8월)

- (발굴) 위기아동 발굴·사례관리체계 내실화, 영유아 특화 발굴로 신고 전 위기 포착
- (대응체계) 진술부담 완화를 위한 협업, 분리보호 시 학습권 보장, 전담의료기관 활성화 및 아동보호전문기관 사례관리 강화 등 아동 관점의 대응체계 보완
- (인식개선) 보편적 부모교육 제공 및 '긍정 양육 129원칙' 확산
- (인프라) 인력(아동학대전담공무원, 아동보호전문요원, 학대예방경찰관-APO) 및 시설(아동보호전문기관, 학대피해아동쉼터 등) 지속 확충

□ 「학대위기·피해아동 발굴 및 보호 강화방안」('23.4월)

- (예방) 2세 이하 아동 집중 조사, 정보 연계 강화 등 촘촘한 위기아동 발굴 추진, 조기개입체계 구축 및 신고활성화
- (대응) 아동학대대응인력 전문성 제고, 아동 안전 중심의 대응체계 보완
- (사후관리) 학대피해아동 회복지원 서비스(아동보호전문기관 사례관리 등) 강화 등

□ 특히, 아동학대 사망사건은 법령, 관행, 제도 등을 포함하는 복합적인 원인에 의한 경우가 많은바⁶⁴⁾, 충분한 시간과 인력을 투입하여 개선방안을 도출하는 심층분석의 필요성이 있다고 할 것으로,

64) 아동학대의 발생 원인으로가정폭력, 경제문제(무직, 빈곤, 감당 못할 부채), 범죄경력, 불안정한 혼인 형태, 정신병력(우울증, 자해 및 자살 시도, 알코올 문제), 불우한 어린 시절(피학대경험, 가정폭력, 빈곤 등), 지지체계 부족 등이 지적됨(강현아 외 5, 「아동학대 사망사건의 유형 및 특성」, 『한국아동복지학』 제 68호, 2019).

이를 통해 마련된 개선책은 향후 유사 사건 재발 방지에 기여할 수 있을 것임.

□ 이러한 점에서 개정안과 같이 아동학대 사망사건과 관련 국가 수준의 예방 정책을 수립하고 평가하기 위해 국무총리 소속의 아동정책조정위원회의 특별위원회로 아동학대사망사건분석특별위원회를 두어 아동학대 사망사건을 분석하도록 한 것은 의미가 크다고 하겠음.

□ 외국의 사례를 보면, 영국의 경우 「아동법」에서 ‘아동사망조사파트너(Child Death Review Partner: CDRP)’를 두어 아동사망 관련 사항을 조사·분석하게 하며, 미국의 경우 각 주에서 주(州)법으로 아동사망의 발생 및 원인 등을 검토하는 ‘아동사망검토팀/위원회’를 설치하고 연방 정부는 이 운영을 위해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음.

< 해외 사례 >

1 영국

- 「아동법」에서 “아동사망조사파트너”(Child Death Review Partner: CDRP)에 대하여 명시적으로 규정함. “아동사망조사파트너”는 아동사망 관련 사항을 조사하고 분석하는 역할 수행
- 아동 사망 고지 등이 있는 경우, ①아동사망개관패널(CDOP)에서 관련 조사 및 정보수집 후 관련 전문가들의 ②아동사망조사회의(CDRM)를 개최, 이후 ③아동사망조사파트너(CDRP, ‘17~)의 독립적인 검토를 거쳐 ④전국 아동사망 데이터베이스(NCMD, ‘19~)에 입력하는 방식
 - 아동사망이 발생한 경우 ① ‘아동사망개관패널’ 등에 통지(notification)
 - ‘아동사망개관패널’은, 사망 원인 등에 따라 아동의 생전 또는 사망 후의 정보를 가장 적합한 기관이 보고양식에 따라 작성하도록 요청
 - 보고양식 완성 후 ② 지역의 아동사망조사회의가 소집되는데 해당 아동의 생전 또는 사후 사항과 관련된 전문가들이 포함되어 분석서 초안 작성
 - ③ 아동사망조사파트너의 검토를 거친 최종 분석서는 ④‘전국 아동사망데이터베이스’에 입력

- 아동사망조사파트너의 업무: 해당 지역 내 아동 복지 및 공중보건·안전과 관련하여 아동이 죽음에 이르기까지 모든 법적 의무가 이행되었는지 확인함으로써 관련한 조치의 적절성을 판단
- 아동사망조사파트너의 권한: 정보요청권; 업무 수행을 위하여 정보를 요청할 수 있음. 뿐만 아니라 아동사망검토포트너는 ‘정보요청을 받은 자’에 대하여 강제집행(injunction)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음.

2

미 국

- 아동사망조사에 대해서는 각 주에서 주법으로 아동사망의 발생 및 원인 등을 검토하는 ‘아동사망검토팀/위원회’를 설치하고, 연방정부는 이 운영을 위해 보조금을 지원
- (예시)메릴랜드 주법 (제5-701조~제5-709조)
 - ‘주(州)아동사망검토팀’(State Child Fatality Review Team)을 두고 있는데 최소 25명. 해당 팀은 주(州)법무장관, 의료심사책임자, 인력부장관, 보건부장관, 주(州)교육감, 주(州)경찰책임자 또는 그 지정자로 구성
 - 주(州)아동사망검토팀의 목적: 아동사망의 원인 및 발생에 대한 분석, 아동사망 방지를 위한 아동사망검토팀의 대응, 아동사망 방지를 위한 법률, 정책, 실무에 있어서의 개선권고
 - 주(州)아동사망검토팀의 주 업무:
 - 주(州)내의 아동 사망의 원인 및 발생에 대한 연간 통계 작성
 - 지역 아동사망검토팀(local team)으로부터의 보고서 검토
 - 지역팀과 협력하여 ‘아동사망자조사’에 대한 기준(protocol) 개발
 - (비공개 원칙) 아동사망조사팀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제공받은 정보에서 특정 아동의 신원 정보 등을 공개하지 않음. 위반 시 500달러 이하의 민사벌칙금(civil penalty) 부과
 - 주 내 각 카운티에 기관복합(multiagency)형태의 ‘(지역)아동사망검토팀’(local child fatality review team)을 두도록 규정. ‘(지역)아동사망검토팀’ 역시 의료, 교육, 경찰, 학대대응프로그램의 책임자, 교육부 관계자 등으로 다양하게 구성
 - ‘(지역)아동사망검토팀’은 사망 아동에 대한 보육 정보, 의료서비스제공자가 관리하던 정보 등의 제공을 요청할 권한이 있음
 - 주(州)아동사망검토팀 및 ‘(지역)아동사망검토팀’의 회의는 아동사망에 대한 개별 사례를 검토하는 경우 비공개로 함.

* 자료 : 보건복지부

- 첫째, 아동학대 사망사건의 분석 실시 시점과 관련하여 개정안에서는 별다른 규정을 두고 있지는 않음. 사망사건의 사안에 따라 사망사건 발생 시점에 분석이 필요한 경우도 있을 수 있겠으나, 사망사건 발생 초기의 경우 경찰이나 검찰 등 수사기관을 중심으로 한 수사 및 조사로 인해 개정안에서의 분석은 제한적일 수 있는바, 이러한 상황을 대비하여 관계 기관 간 사전협의도 필요한 것으로 보임.
- 둘째, 「아동복지법」 제10조제4항⁶⁵⁾에서는 국무총리 소속의 아동정책조정위원회에 아동정책과 관련한 특정 사안을 효율적으로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이에 따라 개정안(제29조의9제3항)의 아동학대사망사건분석특별위원회의 경우 법 개정 없이도 둘 수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하여 명시적으로 아동학대사망사건 분석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명시적으로 둔 것으로 이해됨.
- 관련 입법례로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제12조⁶⁶⁾, 2025. 7. 19. 시행)에서는 국내입양활성화 정책에 관한 주요 사항과 입양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아동정책조정위원회의 특별위원회로 입양정책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있음.
- 개정안에서는 아동정책조정위원회에 아동학대사망사건분석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과 같

65) 「아동복지법」 제10조(아동정책조정위원회) ④ 위원회는 아동정책과 관련한 특정 사안을 효율적으로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 이 경우 제3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위원회의 위원을 달리 구성할 수 있다.

66)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제12조(입양정책위원회) ① 국내입양 활성화 정책에 관한 주요 사항과 입양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아동복지법」 제10조제4항에 따른 아동정책조정위원회의 특별위원회로 입양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이 아동정책조정위원회의 특별위원회로 아동학대사망사건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현행 규정과의 연계성 측면에서 바람직한 면도 있다고 보임.

□ 한편, 아동학대사망사건분석특별위원회는 아동학대 사망사건 분석 및 아동학대 사망사건의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 등에 관한 사항을 논의하기 위한 국가적 차원의 핵심 기구로서 작동하게 되는데, 아동학대 사망사건의 발생이 증가하거나 미시적 차원의 사례분석 병행이 필요한 경우 등에는 지역 차원의 분석 기구 설치도 고려해 볼 필요는 있겠음.

□ 그 외, 법 체계적인 내용과 관련하여 먼저 안 제29조의9제3항 후단의 “아동학대사망사건분석특별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는 “아동학대사망사건분석특별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로 수정할 필요가 있겠음.

□ 다음, 안 제29조의10제2항 및 제29조의11에서 규정하고 있는 형사사법정보와 관련된 것으로, 「자살 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제12조의3⁶⁷⁾) 및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1조⁶⁸⁾) 등 관련 입법례에 따라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 제2조제3호의 형사사법정보”로 구체화할 필요가 있겠음.

67)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제12조의3(형사사법정보의 제공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1조제1항에 따른 자살실태조사를 실시하거나, 제12조에 따른 자살통계 수집·분석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경찰청장 및 해양경찰청장에게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 제2조제3호의 형사사법정보(이하 “형사사법정보”라 한다)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다만, 요청하는 정보의 범위는 자살자의 성별, 연령, 사고원인, 사고발생지 등에 대한 관련 정보 및 자료로서 필요최소한으로 한다.

68)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형사사법정보의 제공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0조제1항에 따른 고독사 실태조사를 실시하거나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고독사 통계를 작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경찰청장 및 해양경찰청장에게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 제2조제3호의 형사사법정보(이하 “형사사법정보”라 한다)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 아울러, 안 제29조의10제5항의 정보나 자료를 제출한 사람 등에 대한 불이익 처우 금지와 관련하여서는 유사 입법례를 반영하여⁶⁹⁾ 재정리가 필요하겠고, 그 외 불이익 처우 금지 위반과 관련하여 개정안 제75조제1항제3호에서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이를 상향 조정할 필요도 있겠음⁷⁰⁾.

□ 개정안에 대하여 보건복지부는 아동학대 사망사건 분석을 통하여 사망사건을 예방하고 아동학대 대응체계를 개선하려는 개정 취지에 공감하고, 실질적인 심층적 분석을 위해서는 분석 대상사건 및 피해 아동과 그 유족, 아동학대행위자에 관한 자료 수집 및 분석이 필수적임에도 법적 근거가 부재하여 그간 국회나 민간 차원의 아동학대 사망사건 조사에서 자료 수집에 어려움을 겪었으므로 형사사법정보의 제공을 포함한 자료 요구, 의견 청취 내용도 필요하다는 입장임.

69)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8조(신분보장) 누구든지 이 법에 따른 정당한 정보공개를 이 유로 징계조치 등 어떠한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의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제30조(위원의 보호) ④ 누구든지 진실규명사건의 조사와 관련하여 정보를 제공하였거나 제공하려 한다는 이유로 해고, 정직, 감봉, 전보 등 어떠한 불이익도 받지 아니한다.

70) 「고용보험법」 제116조(벌칙)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05조(제77조의5제3항·제4항 및 제77조의10제3항·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그 밖에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처우를 한 사업주

12. 아동자산형성지원 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 근거 마련

(김승수의원안 제42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신설 등)

가. 개정안의 주요 내용

- 개정안은 자산형성지원사업 관련 정보를 통합적으로 처리·기록·관리하기 위한 아동자산형성지원 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42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신설 등).

현행	개정안
제42조(자산형성지원사업)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이 건전한 사회인으로 성장·발전할 수 있도록 <u>자산형성지원사업</u> 을 실시할 수 있다.	제42조(자산형성지원사업 및 자산형성정보시스템) ① ----- ----- ----- <u>자산형성지원사업</u> (이하 “ <u>자산형성지원사업</u> ”이라 한다)-----.
<신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u>자산형성지원사업</u> 을 <u>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제43조제2항에 따른 자산형성지원사업 운영업무 및 제43조제3항에 따른 금융자산관리업무를 통합하여 관리하는 아동자산형성지원 통합정보시스템(이하 “<u>자산형성정보시스템</u>”이라 한다)을 구축·운영하여야 한다.</u>
<신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u>자산형성정보시스템</u> 을 <u>구축·운영하는 데 필요한 정보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u>

<신 설>

<신 설>

② 제1항에 따른 자산형성지원사업을 하여야 할 아동의 범위와 해당 아동의 선정·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수집·관리·보유할 수 있으며,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관계 기관 및 단체의 장 등에게 필요한 정보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1. 자산형성지원사업 대상 아동
관련 정보

2. 자산형성지원사업 후원자 관련
정보

3. 그 밖에 자산형성지원사업 관련 업무 수행에 필요한 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자산형성정보시스템 구축·운영의 전 과정에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⑤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자산형성정보시스템의 자료 또는 정보를 취득하여 관리·이용하는 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자료·정보를 목적 외로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 자산형성지원사업을-----

-----.

정한다. 제43조(자산형성지원사업 관련 업무)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u>제42조에 따른 자산형성지원사업을</u>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자산형성지원사업 운영업무 및 금융자산관리업무를 하여야 한다. ②·③ (생략) 제71조(벌칙) ① (생략)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생략) <u><신설></u> 2. (생략) ③ (생략)	제43조(자산형성지원사업 관련 업무) ① -----<u>자산형성지원사업을</u>----- ----- ----- -----. ②·③ (현행과 같음) 제71조(벌칙) ① (현행과 같음) ②----- ----- ----- --. 1. (현행과 같음) <u>1의2. 제42조제5항을 위반하여 자산형성정보시스템의 자료·정보를 목적 외로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누설한 사람</u> 2. (현행과 같음) ③ (현행과 같음)
---	---

나. 주요 검토 사항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복지법」 제42조⁷¹⁾를 근거로 아동이 건전한 사회인으로 성장·발전할 수 있도록 자산형성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는바, 「아동복지법 시행규칙」은 동 사업의 지원대상을 ① 위탁가정·아동복지시설·전문치료기관에서 보호조치 중인 아동, ② 장애인복지시설에 입소 중인 아동, ③ 소년소녀가정의 아동, ④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가정의 아동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아동으로 정하고 있음⁷²⁾.

< 자산형성지원사업 지원 대상 아동 >

보호대상아동	만 18세 미만의 아동복지시설(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보호아동, 가정위탁 보호아동, 장애인거주시설 아동, 소년소녀가정 아동
기초생활수급가구 아동	만 18세 미만의 중위소득 50%이하 수급가구 아동
기가입 아동 중 가정복귀 및 탈수급 아동	보호대상아동이 가정복귀 시, 보호구분을 '가정복귀'로 변경하여 계속 지원, 기초생활수급가구 아동 또한, 해당 가정이 중위소득 50%를 초과해도 계속 지원

자료: 보건복지부

- 동 사업의 지원 방식을 살펴보면, 아동이 일정금액을 적립(월 최대 적립금액 50만원)하면 국가 및 지자체⁷³⁾가 월 최대 10만원 내에서

71) 제42조(자산형성지원사업)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이 건전한 사회인으로 성장·발전할 수 있도록 자산형성지원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자산형성지원사업을 하여야 할 아동의 범위와 해당 아동의 선정·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72) 「아동복지법 시행규칙」 제19조(자산형성지원사업의 대상 등) ① 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자산형성지원사업의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아동으로 한다.
1. 법 제15조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보호조치 중인 아동
2. 「장애인복지법」 제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에 입소 중인 아동
3. 소년소녀가정의 아동
4.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가정의 아동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아동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아동에게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범위에서 해당 아동이 적립한 금액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매월 지원한다.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아동의 계좌 개설을 법 제44조제2항에 따라 금융자산관리업무를 위탁받은 은행 등에 의뢰하고, 은행 등은 통장을 개설하여 해당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발급하며, 시장·군수·구청장은 그 통장을 해당 아동에게 내주어야 한다.
④ 법 제42조제1항에 따라 자산형성지원을 받고 있는 아동이 원가정으로 귀가하더라도 그 아동이 희망할 경우에는 계속 지원할 수 있다.

73) 지자체에 대한 국가 보조율: 서울(40%), 지방(70%)

아동 적립금액의 1:2로 매칭하는 방식으로, 2007년 사업 시작 이후 대상 아동, 정부 적립금, 매칭비율이 점차적으로 확대되어 왔음.

< 자산형성지원사업 확대 내역 >

연도	구분	기존	변경사항
2011	대상 확대	보호대상아동으로 한정	기초생활수급가정의 만 12세 아동을 포함하여 확대
2016	대상 확대	기초생활수급가정 아동 신규가입 연령 만 12세로 한정	기초생활수급가정 아동 신규가입 연령 만 12세~13세로 확대
2017	지원금 확대	월 최대 3만원	월 최대 4만원으로 확대
2018	대상 확대	기초생활수급가정 아동 신규가입 연령 만 12세~13세로 한정	기초생활수급가정 아동 신규가입 연령 만 12세~17세로 확대
2020	지원금 확대	월 최대 4만원	월 최대 5만원으로 확대
2022	정부 매칭비율 확대	아동적립금 1 : 정부지원금 1	아동적립금 1 : 정부지원금 2
2024	대상 확대 소득기준 완화	기초생활수급가구 (만 12세~17세) 소득기준(생계·의료 급여)	기초생활수급가구 아동 (만 18세 미만) 소득기준 (생계·의료·주거·교육 급여)

자료 : 보건복지부

□ 해당 아동은 만기(18세) 후 특정 자립 용도⁷⁴⁾에 한해 사용이 가능하고, 만 24세 도달 시 사용용도 제한 없이 사용 가능함⁷⁵⁾.

< 아동발달지원계좌 가입 및 저축 현황 >

연 도		지원(가입) 아동(명)	월평균 적립금(원)	월평균 매칭금(원)	적립금 누계액(억원)		
					아동	정부	계
2021	보호대상	24,669	87,362	41,102	3,668	2,526	6,194
	기초수급	43,812	52,752	41,552			
	계	68,481	66,034	41,379			

74) 학자금, 기술자격, 취업훈련비, 창업자금, 주거마련, 의료비, 결혼자금 지원 등

75) 예외적 조기인출: 만 15세 이상 적립기간 3년 이상이면 만 18세 이전이라도 학자금, 기술자격, 취업훈련비에 한해 2회까지 사용 가능(단, 정부매칭금 제외)

2022	보호대상	23,887	101,154	89,039	4,204	3,155	7,359
	기초수급	40,904	60,615	90,454			
	계	64,791	76,308	89,582			
2023	보호대상	23,334	106,002	78,294	4,754	3,774	8,528
	기초수급	39,866	63,826	71,862			
	계	63,200	80,691	80,813			

* 2024년 기초수급아동 확대: 12~17세→ 0~17세/ 생계·의료급여→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 평균 저축률 추이: ('21) 86.5%→('22) 87.4%→('23) 88.8%→('24.7) 83.8%

자료: 보건복지부

□ 위 자산형성지원 사업의 대상아동 및 매칭금액, 적립금 확대 등에 따라 이를 체계적으로 운영·관리하는 통합시스템의 필요성이 제기되는바, 현재 각 정보가 지자체·은행·아동권리보장원에서 분산 관리됨으로써 가입 아동·후원자 대상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만기·해지 등 아동 계좌 상태 및 저축 현황 등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확인하여 분석·활용할 수 없는 한계가 있어 대상아동 정보와 금융·후원 정보의 통합 관리가 필요하다는 것임.

- ▶ (아동권리보장원) 現 디딤씨앗통장 시스템은 '08년 9월 한국아동복지협의회에서 후원자 관리, 기부금 출금을 위해 CMS 프로그램 임대계약(월 단위) 후 지속 사용 중.
연간 운영비는 약 2백만원 수준(* 출금 건수 약 2만여 건 기준 매월 약 150천원 사용료 지출)
- ▶ (위탁 은행) 취약계층 아동 본인(보호자) 저축액, 후원자 기부금, 정부 매칭금은 위탁 은행(신한은행)이 자체 프로그램 활용 관리, 월별 적립 현황은 수기 관리
- ▶ (지자체) 대상 아동의 자격, 가입·해지 심사 및 승인 등 행복e음 시스템 이용, 월 적립금 매칭 명세서 수신, 입금지시서 전송 등 위탁 은행 인터넷뱅킹 이용, 위탁 은행에 계좌개설요청은 수기 관리

□ 한편, 2020. 12. 29. 「아동복지법」 개정(2022. 7. 1. 시행)으로, 보건복지부장관은 아동복지 관련 자료 또는 정보의 효율적 관리 및 통합관리를 위하여 사회보장정보시스템 및 사회서비스정보시스템을 연계·활용하여 아동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하여야 한다는 규정이 명시되었고, 아동통합정보시스템에는 「아동복지법」 제15

조의2제2항제5호에 의하여 ‘자립지원에 관한 정보’도 포함되어, 개
정안과 같은 통합정보시스템 구축의 법적 근거는 마련된 것으로
볼 수 있음.

제15조의2(아동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아동복지 관련
자료 또는 정보의 효율적 처리 및 통합관리를 위하여 「사회보장기본법」 제37조제2
항에 따라 설치된 사회보장정보시스템 및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24조의2에 따라 설치된 사회서비스정보시스템을 연계·활용하
여 아동통합정보시스템(이하 “아동정보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운영하여야 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아동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하는 데 필요한 정보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수집·관리·보유할 수 있으며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관계 기관 및 단체의 장 등에게 필요한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5. 제38조부터 제44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자립지원에 관한 정보
제43조(자산형성지원사업 관련 업무)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제42조에 따른 자산형성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자산형성지원사업 운영업무 및 금융자산관리업무를 하여야 한다.
② (생략)
③ 제1항에 따른 금융자산관리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산형성지원사업을 위한 금융상품의 개발 및 관리
2. 자산형성지원사업을 위한 금융상품의 운영에 관한 사항

□ 다만, 구체적으로 아동발달지원계좌와 관련한 통합시스템을 위해서
는 금융기관 시스템, 행복e음(지자체)과 연계하여 아동 정보를 실시
간 반영하는 시스템 구축이 완료되어야 하는바, 현재 차세대 사회
보장정보시스템 구축사업의 미완료 과제⁷⁶⁾에 포함되어 진행 중임.

76) 이 통합정보시스템 구축 사업은 ‘차세대사회보장정보시스템 구축사업(’20.4.~’23.12.)에 포함되었으나 추진
되지 못하고, 미완료 과제에 포함되어 2024년부터 재추진 중임.

< 아동발달지원계좌 통합정보시스템 구축(안) >

금융 시스템	연 계	아동자산형성지원 통합정보시스템		연 계	행복e음	
•통장 개설·해지 정보 •입출금내역 •매칭지원금 지급 내역		후원자정보	연계 ↔		후원아동 계좌번호	•대상아동정보 •아동상태정보 (사망, 전출입 등)
		은행 시스템 정보			행복e음 시스템 정보	

* 개발 필요 범위

- ☐ 차세대 시스템 구축 일정(안) : '24년 ~ '26년 하반기 개통
-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 구축 잔여 사업 과제* 확정(~'24.6월)
 - * 아동발달지원계좌(디딤씨앗통장) 포함, 사회서비스 개별시스템 13종 통합 및 통계정보시스템 구축
 - (추진 일정) '25~'26년(2년간)
 - 재추진 예산확보, 과제 상세화 및 사업계획 수립(~'24.12월)
 - 잔여 과업 구축 추진('25년~'26년)

자료: 보건복지부

☐ 개정안에 대하여 보건복지부는 아동자산형성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정보를 통합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운영의 근거를 마련하려는 입법 취지에 공감하나, 아동통합정보시스템 구축에 대한 제15조의2 규정으로 아동자산형성지원 통합정보시스템 운영이 가능함에 따라 별도 근거는 불필요하며, 현재 아동-금융기관-후원자 정보를 종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통합 관리 시스템 구축을 추진 중이라는 입장임.

그리고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아동이 건전한 사회인으로 성장·발전하기 위하여 자산형성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려는 개정안의 취지에는 공감하나, 수집·관리·보유 목적과 대상 정보(자산형성지원사업의 대상 아동 및 후원자 관련 정보)의 범위가 특정되지 않아

포괄적으로 처리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해당 정보의 처리 목적을 명확히 하고, 처리 대상 정보를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임.

< 관계 부처 등 의견 >

기관명	개정안에 대한 의견
보건복지부	시스템 구축·운영의 근거를 마련하려는 입법 취지에 공감하나, 아동 통합정보시스템 구축 관련 규정에 따라 아동자산형성지원 통합정보 시스템 운영 가능
개인정보보호 위원회	개정안의 취지에 공감하나, 수집·관리·보유의 목적과 대상정보(자산 형성지원사업의 대상 아동 및 후원자 관련 정보)의 범위가 특정되지 않아 포괄적으로 처리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해당 정보의 처리 목적을 명확히 하고, 처리 대상 정보를 구체화할 필요

13. ‘아동학대사례관리대상자’ 정의 규정 신설 등(최보윤의원안
제3조제8호의2 및 제22조제6항 신설 등)

가. 개정안의 주요 내용

- 개정안은 지자체장이 아동학대로 판단한 사례의 행위자를 사례관리대상자로 정의하면서 아동학대행위자와 동일한 수준으로 관리하도록 하고, 아동학대사례판단위원회를 지자체장 소속으로 두며, 아동정보시스템에 아동학대사례관리대상자에 대한 정보를 입력·관리하도록 하면서 정보의 보존 기간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8호의2 및 제22조제6항 신설, 제22조의3제1항 및 제28조의2제2항 등).

현행	개정안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8. (생략) <u><신설></u>	제3조(정의) ----- -----. 1. ~ 8. (현행과 같음) 8의2. <u>“아동학대사례관리대상자”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아동학대로 판단한 사례에서 아동학대를 행한 자를 말한다.</u>
9. ~ 11. (생략) 제12조(아동복지심의위원회) ①	9. ~ 11. (현행과 같음) 제12조(아동복지심의위원회) ① -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그 소속으로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각각 둔다. 이 경우 제2호부터 제8호까지의 사항에 관한 심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심의위원회 소속으로 사례결정위원회를 두고, 사례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사항은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사항으로 본다.

1. ~ 8. (생략)

② · ③ (생략)

제15조(보호조치) ① ~ ④ (생략)

⑤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보호조치 및 제6항의 일시보호조치를 함에 있어서 해당 보호대상아동의 의사를 존중하여야 하며, 보호자가 있을 때에는 그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아동의 보호

자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5호의 아동학대행위자(이하 “아동학대행위자”라 한다)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 설>

<신 설>

<신 설>

⑥ ~ ⑪ (생략)

제16조(보호대상아동의 퇴소조치 등) ①·② (생략)

③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가정 복귀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보장원 또는 아동보호전문기관 등 아동복지시설의 장, 아동을 상담·치료한 의사의 의견을 들은 후 보호조치의 종료 또는 퇴소조치가 보호대상아동의 복귀에 반하지 아니한다고 인정되면 해당 보호대상아동을 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

1.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5호의 아동학대행위자(이하 “아동학대행위자”라 한다)

2. 아동학대사례관리대상자

3.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따른 신고로 조사 또는 수사를 받고 있는 자

⑥ ~ ⑪ (현행과 같음)

제16조(보호대상아동의 퇴소조치 등)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정으로 복귀시킬 수 있다. 다만, 보호대상아동이 복귀하는 가정에 거주하는 아동학대행위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담·교육·심리적 치료 등에 참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④·⑤ (생략)

제22조(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 의무) ①·② (생략)

③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피해아동의 발견 및 보호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생략)

2. 피해아동, 피해아동의 가족 및 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한 상담·조사

<신설>

3. (생략)

④·⑤ (생략)

<신설>

-----.

-----아동학대행위자 또는 아동학대사례관리대상자가-----

④·⑤ (현행과 같음)

제22조(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 의무) ①·② (현행과 같음)

③ -----발견, 보호 및 지원-----

1. (현행과 같음)

2. -----피해아동의 가족, 아동학대행위자 및 아동학대 사례관리대상자-----

3. 아동학대로 신고접수된 사례에 대한 아동학대 여부 판단 (이하 “아동학대사례판단”이라 한다).

4. (현행 제3호와 같음)

④·⑤ (현행과 같음)

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그 소속으로 아

⑥·⑦ (생략)

제22조의3(피해아동 등에 대한 신분조회 등 조치) ① 보장원의 장 및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은 피해아동의 보호, 치료 등을 수행함에 있어서 피해아동, 그 보호자 또는 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조치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협조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1. ~ 5. (생략)

동학대사례판단위원회를 두며, 아동학대사례판단 시 아동학대사례판단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한다. 이 경우 아동학대사례판단위원회의 조직·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⑦·⑧ (현행 제6항 및 제7항과 같음)

제22조의3(피해아동 등에 대한 신분조회 등 조치) ① -----

피해아동의 보호자, 아동학대행위자 또는 아동학대사례관리대상자-----

-----.

1. ~ 5.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제22조의4(피해아동보호계획의 수립 등) 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피해아동에 대한 조사를 한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피해아동보호계획(이하 “보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그 계획을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단서 신설>

1. ~ 4. (생 략)

②·③ (생 략)

④ 제1항에 따라 보호계획을 통보받은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은 아동학대 재발 가능성 등 위험도를 고려하여 피해아동 및 그 가족, 아동학대행위자를 대상으로 치료·교육·상담 프로그램 등이 포함된 피해아동 사례관리계획(이하 “사례관리 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② (현행과 같음)

제22조의4(피해아동보호계획의 수립 등) ① -----

-----조사 및 아동학대사례판단을 완료한-----

-----. 다만, 피해아동의 보호를 위하여 긴급히 필요한 경우에는 아동학대사례판단이 완료되기 전이라도 보호계획 수립 및 통보를 우선 실시하고 사후에 아동학대사례판단을 완료할 수 있다.

1. ~ 4. (현행과 같음)

②·③ (현행과 같음)

④ -----

-----피해아동, 피해아동의 가족, 아동학대행위자 및 아동학대사례관리대상자-----

시행하여야 한다.

⑤·⑥ (생략)

제28조의2(아동학대정보의 관리 및 제공) ① (생략)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아동학대 관련 정보를 공유하고 아동학대를 예방하기 위하여 피해아동, 그 가족 및 아동학대행위자에 관한 정보와 아동학대예방 사업에 관한 정보를 아동정보 시스템에 입력·관리하여야 한다. <후단 신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아동의 보호 및 아동학대 발생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아동정보시스템상의 피해아동, 그 가족 및 아동학대행위자에 관한 정보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목적과 필요한 정보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한다.

1. ~ 7. (생략)

-----.

⑤·⑥ (현행과 같음)

제28조의2(아동학대정보의 관리 및 제공) ① (현행과 같음)

② -----

---피해아동의 가족, 아동학대 행위자 및 아동학대사례관리대상자-----

----. 이 경우 아동학대사례관리대상자에 관하여 입력된 정보의 보존 기간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

-----피해아동의 가족, 아동학대행위자 및 아동학대사례관리대상자-----

-----.

-----.

1. ~ 7. (현행과 같음)

④·⑤ (생략) 제29조의2(<u>아동학대행위자</u>에 대한 상담·교육 등의 제공) ①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보장원의 장 또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은 <u>아동학대행위자</u>에 대하여 상담·교육 및 심리적 치료 등 필요한 지원을 제공하여야 하며, 이 경우 <u>아동학대행위자</u>는 상담·교육 및 심리적 치료 등에 성실히 참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상담·교육 및 심리적 치료 등에 참여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u>아동학대행위자</u>는 그 사유가 해소되는 즉시 이에 참여하여야 한다. ③ (생략) 제46조(<u>아동보호전문기관의 업무</u>) ① (생략) ② 아동보호전문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2. (생략) 3. <u>피해아동, 피해아동의 가족</u> 및 <u>아동학대행위자</u>를 위한 상담·치료 및 교육	④·⑤ (현행과 같음) 제29조의2(<u>아동학대행위자등</u>에 대한 상담·교육 등의 제공) ① ----- ----- -----<u>아동학대행위자 및 아동학대사례관리대상자</u>(이하 이 조에서 “<u>아동학대행위자등</u>”이라 한다)----- <u>아동학대행위자등</u>----- ----- -----. ② ----- ----- -----<u>아동학대행위자등</u>----- ----- -----. ③ (현행과 같음) 제46조(<u>아동보호전문기관의 업무</u>) ① (현행과 같음) ② ----- -----. 1.·2. (현행과 같음) 3. -----<u>피해아동의 가족, 아동학대행위자 및 아동학대사례대상자</u>-----
--	---

4. ~ 7. (생 략) 제75조(과태료) ①·② (생 략)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 1의4. (생 략) 1의5. 제29조의2를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상담·교육·심리적 치료 등에 참여하지 아니한 <u>아동학대행위자</u> 2. ~ 4. (생 략) ④ (생 략)	4. ~ 7. (현행과 같음) 제75조(과태료)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 -----. 1. ~ 1의4. (현행과 같음) 1의5. ----- ----- ----- ----<u>아동학대행위자등</u> 2. ~ 4. (현행과 같음) ④ (현행과 같음)
--	---

나. 주요 검토 사항

- 현행 「아동복지법」에서는 아동학대범죄를 범한 사람 및 공범을 의미하는 아동학대행위자⁷⁷⁾를 대상으로 아동통합정보시스템 등에 관리하도록 하고 있음(제28조의2제2항⁷⁸⁾).
- 그러나, 지자체에서 아동학대로 판단하였으나 아동학대범죄에 이르지 않은 경우가 있음에도 현행법에서 이를 구분하지 아니하고 있어 범죄자와 혼동되거나 불필요한 낙인효과를 초래하고, 아동통합정보시스템에 그 정보가 기한 없이 보존되는 것은 과잉금지원칙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문제의 소지가 있음. 특히 현행법(제28조의2제2항)상 아동통합정보시스템에 관리되는 대상자는 아동학대범죄를 범한 사람 및 공범을 의미하는 아동학대행위자나 범죄에 이르지 아니한 사람도 관리되고 있음.

< 최근 5년간 아동학대 신고 및 사례 판단 현황 >

(단위: 건)

구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아동학대 신고건수	41,389	42,251	53,932	46,103	48,522
아동학대의심사례 건수	38,380	38,929	52,083	44,531	45,771
아동학대 판단건수	30,045	30,905	37,605	27,971	25,739

자료: 보건복지부(아동학대 주요통계)

77) 「아동복지법」 제15조(보호조치) ⑤ (전단 생략) 다만,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5호의 아동학대행위자(이하 “아동학대행위자”라 한다)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5. “아동학대행위자”란 아동학대범죄를 범한 사람 및 그 공범을 말한다.

78) 「아동복지법」 제28조의2(아동학대정보의 관리 및 제공)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아동학대 관련 정보를 공유하고 아동학대를 예방하기 위하여 피해아동, 그 가족 및 아동학대행위자에 관한 정보와 아동학대 예방사업에 관한 정보를 아동정보시스템에 입력·관리하여야 한다.

- 개정안은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지자체에서 아동학대로 판단한 사례의 행위자를 아동학대사례관리대상자로 정의하고, 「아동복지법」 내 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하여 규율하고 있는 규정에 아동학대사례관리대상자도 추가하여 규정하는 등 아동학대 사례관리 체계를 보다 강화하려는 것임.
- 첫째, 현행 「아동복지법」 제15조제5항⁷⁹⁾에서는 지자체장이 아동을 보호조치 및 일시보호조치를 함에 있어 보호자가 있을 경우에는 의견을 듣도록 하고 있으나, 보호자가 아동학대행위자인 경우에는 예외인 것으로 하고 있음.
- 개정안에서는 예외 대상으로 아동학대행위자 외에 아동학대사례관리대상자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⁸⁰⁾에 따른 신고로 조사 또는 수사를 받고 있는 자도 포함하고 있음.
- 이 중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따른 신고로 조사 또는 수사를 받고 있는 자와 관련하여, 동 규정에 따라 누구든지 아동학대범죄를 알게 된 경우나 그 의심이 있는 경우 지자체나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는데, 과도한 친권 제한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범위를 한정하는 방안도 고려할 필요가 있겠음.

79) 「아동복지법」 제15조(보호조치) ⑤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보호조치 및 제6항의 일시보호조치를 함에 있어서 해당 보호대상아동의 의사를 존중하여야 하며, 보호자가 있을 때에는 그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5호의 아동학대행위자(이하 “아동학대행위자”라 한다)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80)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아동학대범죄 신고의무와 절차) ① 누구든지 아동학대범죄를 알게 된 경우나 그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직무를 수행하면서 아동학대범죄를 알게 된 경우나 그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시·도, 시·군·구 또는 수사기관에 즉시 신고하여야 한다.

1. ~ 26. (생략)

③ (생략)

④ 제2항에 따른 신고가 있는 경우 시·도, 시·군·구 또는 수사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즉시 조사 또는 수사에 착수하여야 한다.

□ 아울러, 신고에 따른 조사 또는 수사 외에 경찰의 인지수사 등 다른 경로로 조사 또는 수사를 받게 될 경우도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개정안의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따른 신고로 조사 또는 수사를 받고 있는 자”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따른 신고 등으로 조사 또는 수사를 받고 있는 자”로 수정할 필요가 있음.

□ 둘째, 개정안 제22조제3항제3호에서는 지자체장의 피해아동 보호 등을 위한 업무에 현행 「아동복지법 시행령」(제23조제2항제1호81))에서 규정하고 있는 아동학대 사례의 판단 업무를 법률에 명시하면서, 아동학대 판단을 위하여 지자체 소속으로 아동학대사례 판단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함.

□ 아동학대 판단과 관련하여 현행은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을 중심으로 한 아동보호팀 사례회의에서 판단하고 있는데, 전담위원회 신설을 통해 보다 전문적이고 객관적인 판단 결정이 가능할 것으로 보임.

□ 다만, 전담위원회 운영으로 현행보다 사례판단이 늦어질 수 있다는 문제와 함께, 현행 「아동복지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아동의 보호조치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지자체 소속으로 사례

81) 「아동복지법」 제22조(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 의무) ③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피해 아동의 발견 및 보호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아동학대 신고접수, 현장조사 및 응급보호
2. 피해아동, 피해아동의 가족 및 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한 상담·조사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아동학대 관련 업무

「아동복지법 시행령」 제23조(아동학대의 예방 및 방지) ② 법 제22조제3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아동학대 관련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1. 신체적·정서적 학대 등 아동학대 사례의 판단
2. 법 제22조제4항에 따른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하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라 한다)에 대한 직무교육 및 역량강화에 관한 업무
3. 아동정보시스템을 통한 피해아동, 그 가족 및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아동학대행위자(이하 “아동학대행위자”라 한다)에 대한 정보와 아동학대예방사업에 관한 정보의 처리
4. 아동보호전문기관의 피해아동 사례관리에 대한 지도·감독

결정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있는데, 동 위원회를 활용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겠음. 특히 현재에도 필요한 경우 사례결정위원회를 통해 아동학대 사례판단이 이루어지고 있음.

< 사례결정위원회의 역할과 기능 >

근거	「아동복지법」 제12조제1항
소속	아동복지심의위원회(지자체장 소속) 내
역할 및 기능	보호조치, 퇴소조치, 보호기간의 연장 및 보호조치의 종료, 재보호조치 및 보호조치의 종료, 친권행사의 제한이나 친권상실 선고 청구, 아동의 후견인의 선임이나 변경 청구, 지원대상아동의 선정과 그 지원, 그 밖에 아동의 보호 및 지원서비스를 위하여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심의

□ 그 외, 현행법 제22조제3항⁸²⁾에서 지자체장은 피해아동의 발견 및 보호 등을 위하여 각 호에서 정하고 있는 아동학대 신고접수, 현장조사 및 응급보호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개정안에서는 발견 및 보호 외에 지원을 추가하고 있음. 그럼에도 세부 업무를 정하고 있는 각 호에서는 지원과 관련된 업무가 추가되어 있지 않은데, 피해아동 및 피해아동의 가족에 대한 지원을 추가할 필요가 있음.

□ 아울러, 개정안(제22조제3항제3호)의 아동학대로 신고접수된 사례에 대한 아동학대 여부 판단과 관련하여 재판단 등에 따른 사례판단이 누락되지 않도록 문구를 재정리할 필요도 있겠음.

82) 「아동복지법」 제22조(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 의무) ③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피해아동의 발견 및 보호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아동학대 신고접수, 현장조사 및 응급보호
2. 피해아동, 피해아동의 가족 및 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한 상담·조사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아동학대 관련 업무

- 셋째, 개정안 제28조의2제2항에서는 아동학대행위자 외에 아동학대사례관리대상자에 대해서도 아동통합정보시스템에 입력하도록 하되, 이 경우 아동학대사례관리대상자에 관하여 입력된 정보의 보존 기간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다만, 아동학대사례관리대상자의 정보를 비롯해 아동학대로 신고되었지만 학대로 판단하지 아니한 일반사례 정보⁸³⁾의 보존 기간도 규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적절해 보임.
- 개정안에 대하여 보건복지부는 아동학대 사례판단·사례관리 체계를 강화하려는 취지에 공감하나, 개정 취지와 현장 상황을 보다 잘 반영할 수 있도록 보호조치 시 보호자 의견청취의 예외 범위, 아동학대 사례판단, 아동학대 관련 정보의 보존기간에 관한 규정을 일부 수정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⁸⁴⁾이고, 군산시는 아동학대사례판단위원회 신설로 인한 업무가증으로 사례판단이 늦어질 수 있으며, 전담공무원의 소신 있는 업무 추진에 부담이 될 수 있어 아동학대사례판단위원회 신설 규정은 삭제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음.

83) 현재 「아동복지법 시행령」 제26조의3에 근거하여 아동통합정보시스템에 입력되고 있음.
 (「아동복지법 시행령」 제26조의3(아동학대정보의 관리 및 제공)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아동정보시스템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5. 아동학대 신고접수, 현장조사 및 응급보호 관리)

84) <보건복지부 의견>

개정안	보건복지부 수정의견
<(일시)보호조치 시 보호자 의견 청취의 예외> 3.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따른 신고로 조사 또는 수사를 받고 있는 자	3.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따른 신고 등으로 조사 또는 수사를 받고 있는 자
<지자체의 업무> 3. 아동학대로 신고접수된 사례에 대한 아동학대 여부 판단	3. 피해아동, 피해아동의 가족 및 아동학대사례관리대상자에 대한 지원을 위한 신체적·정서적 학대 등 아동학대 사례의 판단
<아동학대정보의 보존기간> ② ---- 이 경우 아동학대사례관리대상자에 관하여 입력된 정보의 보존 기간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 이 경우 입력관리하는 정보의 보존기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4. 아동학대관련범죄자의 아동관련기관 운영·취업 점검

사무의 지방이양(서명옥의원안 제29조의4 등)

가. 개정안의 주요 내용

- 개정안은 아동관련기관의 설치 또는 설립인가·허가·신고를 관할하는 주체와 아동학대관련범죄로 취업제한명령을 선고받은 자의 아동관련기관 운영·취업 점검 및 확인에 관한 사무 처리 주체를 일치시키려는 것임(안 제29조의4, 제29조의5, 제68조 및 제75조).

현행	개정안
제29조의4(취업제한명령을 선고 받은 자에 대한 취업 등의 점검·확인) ①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u>아동학대관련범죄로 취업제한명령을 선고받은 자가 제29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다음 각 호의 아동관련기관을 운영하거나 아동관련기관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고 있는지를 직접 또는 관계 기관 조회 등의 방법으로 연 1회 이상 점검·확인하여야 한다.</u>	제29조의4(취업제한명령을 선고 받은 자에 대한 취업 등의 점검·확인) ① ----- ----- -- <u>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아동학대관련범죄로 취업제한명령을 선고받은 자가 아동관련기관을 운영하거나 아동관련기관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고 있는지를</u> ----- ----- ----- -----.
1. <u>교육부장관: 제29조의3제1항 제7호·제8호·제18호·제19</u>	1. <u>문화체육관광부장관: 제29조의3제1항제14호의 청소년활동</u>

<u>호에 따른 아동관련기관</u> 2. <u>문화체육관광부장관: 제29조의3제1항제17호에 따른 아동관련기관</u> 3. <u>보건복지부장관: 제29조의3제1항제1호 · 제9호 · 제10호 · 제11호 · 제23호 · 제25호 · 제26호에 따른 아동관련기관</u> 4. <u>여성가족부장관: 제29조의3제1항제2호 · 제3호 · 제4호 · 제5호 · 제6호 · 제13호 · 제14호 · 제15호 · 제16호 · 제20호 · 제24호에 따른 아동관련기관</u> 5. <u>국토교통부장관: 제29조의3제1항제12호에 따른 아동관련기관</u> 6. <u>법무부장관: 제29조의3제1항제22호에 따른 아동관련기관</u> <u><신 설></u> <u><신 설></u>	<u>시설(「문학진흥법」 제18조의국립한국문학관에 한정한다)</u> 2. <u>보건복지부장관: 제29조의3제1항제1호의 기관 중 보장원, 같은 항 제23호의 비영리법인</u> 3. <u>여성가족부장관: 제29조의3제1항제15호의 기관 중 이주배경청소년지원센터, 같은 항 제16호의 청소년 보호·재활센터</u> 4. <u>법무부장관: 제29조의3제1항제22호의 소년원, 소년분류심사원</u> ② <u>제1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아동관련기관으로서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교육부, 문화체육관광부, 국토교통부 등 관계중앙행정기관이 설치하여 운영하는 아동관련기관의 경우에는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제1항에 따른 점검·확인을 하여야 한다.</u> ③ <u>시·도지사 또는 시장·군</u>
--	--

수·구청장은 아동학대관련범죄로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아동관련기관을 운영하거나 아동관련기관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고 있는지를 직접 또는 관계 기관 조회 등의 방법으로 연 1회 이상 점검·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제2항에 해당하는 아동관련기관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29조의3제1항제1호의 기관 중 지방자치단체, 취약계층 아동 통합서비스 수행기관, 아동보호전문기관, 다함께돌봄센터, 가정위탁지원센터, 아동복지시설
2. 제29조의3제1항제2호의 긴급전화센터,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3. 제29조의3제1항제3호의 건강가정지원센터
4. 제29조의3제1항제4호의 다문화가족지원센터
5. 제29조의3제1항제5호의 성매매피해자들을 위한 지원시설,

성매매피해상담소

6. 제29조의3제1항제6호의 성폭력피해상담소,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
7. 제29조의3제1항제7호의 어린이집, 육아종합지원센터, 시간제보육서비스지정기관
8. 제29조의3제1항제9호의 의료기관
9. 제29조의3제1항제10호의 장애인복지시설
10. 제29조의3제1항제11호의 정신건강복지센터, 정신건강증진시설, 정신요양시설, 정신재활시설
11. 제29조의3제1항제12호의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
12. 제29조의3제1항제13호의 청소년시설, 청소년단체
13. 제29조의3제1항제14호의 청소년활동시설(「평생교육법」 제2조제2호의 평생교육기관은 제외한다)
14. 제29조의3제1항제15호의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청소년쉼터, 청소년자립지원관, 청소년

<신 설>

년치료재활센터

15. 제29조의3제1항제17호의 체육시설

16. 제29조의3제1항제20호의 한
부모가족복지시설

17. 제29조의3제1항제21호의 아
동보호전문기관 또는 학대피
해아동쉼터를 운영하는 법인

18. 제29조의3제1항제24호의 서
비스제공기관

19. 제29조의3제1항제25호의 입양기관

20. 제29조의3제1항제26호의 산
후조리도우미 서비스를 제공
하는 사람을 모집하거나 채
용하는 기관

④ 교육감은 아동학대관련범죄
로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아동관련기
관을 운영하거나 아동관련기관
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고 있는지를 직접 또는
관계 기관 조회 등의 방법으로
연 1회 이상 점검·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제2항에 해당하는
아동관련기관의 경우에는 그러
하지 아니하다.

1. 제29조의3제1항제8호의 유치원

②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점검·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아동관련기관의 장 또는 그 감독기관에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③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점검·확인 결과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신 설>

2. 제29조의3제1항제14호의 청소년활동시설 중 「평생교육법」 제2조제2호의 평생교육기관

3. 제29조의3제1항제18호의 학교, 학습부진아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는 기관

4. 제29조의3제1항제19호의 학원, 교습소

⑤ 제1항 각 호 및 제2항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교육감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

-----.

⑥ 제1항 각 호 및 제2항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교육감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

⑦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 각 호 및 제2항에 따른 중앙행정

제29조의5(취업자의 해임요구 등)

① 제29조의4제1항 각 호의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29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취업하거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에 대하여 아동관련기관의 장에게 그의 해임을 요구하여야 한다.

② 제29조의4제1항 각 호의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아동관련기관의 장에게 제29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운영 중인 아동관련기관의 폐쇄를 요구하여야 한다.

③ 제29조의4제1항 각 호의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아동관련기관의 장이 제2항에 따른 폐쇄

기관의 장,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교육감에게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점검·확인 계획, 추진 현황, 결과 등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29조의5(취업자의 해임요구 등)

① 제29조의4제1항 각 호 및 제2항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교육감은-----

-----.

② 제29조의4제1항 각 호 및 제2항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교육감은-----

-----.

③ 제29조의4제1항 각 호 및 제2항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 시장·군수·

요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거나 1개월 이내에 요구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아동관련기관을 폐쇄하거나 그 등록·허가 등을 취소하거나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이를 요구할 수 있다.

제68조(권한의 위임·위탁) ① 이 법에 따른 보건복지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시·도지사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다만, 제26조, 제29조의4, 제29조의5, 제75조에 따른 교육부장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여성가족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 소방청장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교육

구청장 또는 교육감은-----

-----.

제68조(권한의 위임·위탁) ① --

-----.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

감·교육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생략) 제75조(과태료) ① ~ ③ (생략)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u>교육부장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보건복지부장관, 여성가족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도 및 도의 교육감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부과·징수한다.</u>	② (현행과 같음) 제75조(과태료)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 ----- -----<u>제26조, 제29조의</u> <u>4, 제29조의5에 따른 관계 중앙</u> <u>행정기관의 장</u>----- ----- ----- -----.
--	--

나. 주요 검토 사항

- 현행 「아동복지법」 제29조의4에서는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각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아동학대관련범죄로 취업제한명령을 선고받은 자가 아동관련기관을 운영하거나 아동관련기관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고 있는지를 직접 또는 관계 기관 조회 등의 방법으로 연 1회 이상 점검·확인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또한, 각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아동복지법」 제29조의5에 따라 취업제한명령을 위반한 경우 해당 아동관련기관의 장에게 그 취업자의 해임을 요구하거나 운영 중인 아동관련기관의 폐쇄를 요구하도록 하고 있으며, 폐쇄 요구를 받은 아동관련기관의 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1개월 이내에 요구사항을 이행하지 않으면 해당 아동관련기관을 폐쇄하거나 그 등록·허가 등을 취소할 수 있음.

-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설치 또는 설립 인가·허가·신고를 관할하는 다함께돌봄센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등에 대해서는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연 1회 이상 점검 및 확인하도록 하고(안 제29조의4제3항), 유치원, 청소년활동시설 중 평생교육기관, 학교 등은 교육감으로 하여금 연 1회 이상 점검 및 확인하도록 규정하는 것임(안 제29조의4제4항).

- 그 취지를 보면, 아동 관련 기관의 설치 또는 설립인가·허가·신고를 관할하는 주체와 그 아동관련기관을 점검·확인하는 등의 사무처리 주체가 상이하여, 이 과정에서 책임과 권한의 불일치로 행정 효

율성이 저하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바, 중앙행정기관의 권한·사무를 지방자치단체에 이양하고, 사무처리 주체를 명확하게 하여 자치분권 확대 및 지역 행정수요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고자 하는 것임.

< 개정안에 따른 취업제한 점검 등 절차 변화 >

구분	사무 유형	점검 방식	점검결과 공개 (보장원 홈페이지)	법 위반 시 조치
현행	중앙사무	복지부, 여가부, 문체부 교육부, 국토부, 법무부 → 직접 점검 점검 대상기관 (6개 기관)	중앙행정기관	중앙 행정기관
	지방이양 사무	보건복지부 점검계획 통보 ↔ 점검결과 제출 복지부, 여가부 문체부, 교육부 국토부, 법무부 자체점검계획 수립·통보 ↔ 점검결과 제출 관할 지자체 (시·도, 시·군·구 교육(지원)청) ↓ 점검 대상기관 (24개 기관)		관할 지자체
개선	중앙사무	상동	중앙행정기관	상동
	자치사무	관할 지자체 (시·도, 시·군·구, 교육(지원)청) 직접 점검 → 점검 대상기관 (25개 기관)	관할 지자체	

* 자료: 보건복지부

- 구체적으로 개정안에 따르면, 청소년활동시설 중 국립한국문화관, 아동권리보장원, 보건복지부장관의 설립 허가를 받아 아동복지 등 아동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법인, 이주배경청소년지원센터, 청소년 보호·재활센터, 소년원, 소년분류심사원과 이에 해당하지 않으면서 지방자치단체장 및 교육감의 소관 사무로 규정하지 아니한 아동관련기관 중 중앙행정기관이 설치하여 운영하는 아동관련기관(안 제29조의4제2항)에 한하여만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아동학대관련범죄로 취업제한명령을 선고받은 자의 아동관련기관 운영 및 취업 여부를 점검·확인하는 것으로 변경되게 됨.

< 개정안에 따른 점검·확인 사무 소관 변경 현황 >

제29조의3 제1항	아동관련기관	사무 수행 기관 구분	
		현행	개정안
제1호	아동권리보장원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
	지방자치단체	보건복지부	지자체장
	취약계층 아동 통합서비스 수행기관	보건복지부	지자체장
	아동보호전문기관	보건복지부	지자체장
	다함께돌봄센터	보건복지부	지자체장
	가정위탁지원센터	보건복지부	지자체장
	아동복지시설	보건복지부	지자체장
제2호	긴급전화센터	여성가족부	지자체장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	여성가족부	지자체장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여성가족부	지자체장
제3호	건강가정지원센터	여성가족부	지자체장
제4호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여성가족부	지자체장
제5호	성매매피해자들을 위한 지원시설	여성가족부	지자체장
	성매매 피해상담소	여성가족부	지자체장
제6호	성폭력피해상담소	여성가족부	지자체장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여성가족부	지자체장
	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	여성가족부	지자체장
제7호	어린이집	교육부	지자체장
	육아종합지원센터	교육부	지자체장
	시간제보육서비스지정기관	교육부	지자체장
제8호	유치원	교육부	교육감
제9호	의료기관	보건복지부	지자체장
제10호	장애인복지시설	보건복지부	지자체장
제11호	정신건강복지센터	보건복지부	지자체장
	정신건강증진시설	보건복지부	지자체장
	전신요양시설	보건복지부	지자체장
	정신재활시설	보건복지부	지자체장
제12호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	국토교통부	지자체장
제13호	청소년시설	여성가족부	지자체장
	청소년단체	여성가족부	지자체장
제14호	청소년활동시설	여성가족부	지자체장 (평생교육기관 제외)
			교육감 (평생교육기관에 한정)
			문화체육관광부 (국립한국문화관 에 한정)

제29조의3 제1항	아동관련기관	사무 수행 기관 구분	
		현행	개정안
제15호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여성가족부	지자체장
	이주배경청소년지원센터	여성가족부	여성가족부
	청소년쉼터	여성가족부	지자체장
	청소년자립지원관	여성가족부	지자체장
	청소년치료재활센터	여성가족부	지자체장
제16호	청소년 보호·재활센터	여성가족부	여성가족부
제17호	체육시설 중 아동의 이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체육시설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하는 체육시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지자체장
제18호	학교	교육부	교육감
	학습부진아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는 기관	교육부	교육감
제19호	학원	교육부	교육감
	교습소 중 아동의 이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학원과 교습소로서 교육부장관이 지정하는 학원·교습소	교육부	교육감
제20호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여성가족부	지자체장
제21호	아동보호전문기관 또는 학대피해아동쉼터를 운영하는 법인	-	지자체장
제22호	소년원	법무부	법무부
	소년분류심사원	법무부	법무부
제23호	보건복지부장관의 설립 허가를 받아 아동인권, 아동복지 등 아동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법인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
제24호	서비스제공기관	여성가족부	지자체장
제25호	입양기관(업무를 위탁받은 사회복지법인 및 단체)	보건복지부	지자체장
제26호	산후조리도우미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을 모집하거나 채용하는 기관	보건복지부	지자체장
제27호	산후조리원	보건복지부	-

□ 앞서 본 바와 같이, 현행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관련범죄로 취업제한명령을 선고받은 자에 대한 취업 등의 점검·확인 은 중앙 행정기관의 사무로 규정(제29조의4)되어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위임 규정(제68조 및 시행령)⁸⁵⁾에 따라 유관 공공기관인 아동권리보

85) 「아동복지법」 제68조(권한의 위임·위탁) ① 이 법에 따른 보건복지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시·도지사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다만, 제26조, 제29조의4, 제29조의5, 제75조에 따른 교육부장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여성가족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 소방청장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교육감·교육장에 게 위임할 수 있다.

「아동복지법 시행령」 제56조(권한의 위임 및 업무의 위탁)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68조제1항 본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위임한다.

1. 2. (생략)

장원 등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기관에 대한 점검·확인 업무가 각 지방자치단체장 또는 교육감 등에 위임하여 수행되고 있는 상황으로, 개정안과 같이 점검·확인 사무를 지방자치단체장 또는 교육감에게 이양할 경우 사무처리 주체를 명확히 하고, 지역 행정 수요에도 효율적으로 대응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57조⁸⁶⁾)에서도 개정안과 같은 체계로 성범죄 경력자 점검·확인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기도 함.

□ 아울러,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 각 점검 주체가 점검·확인 계획, 추진 현황, 결과 등에 관한 자료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3. 법 제29조의4제1항제3호에 따른 취업제한대상자 취업 등의 점검·확인

4. 법 제29조의5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취업제한대상자에 대한 해임요구 및 아동관련기관 폐쇄요구 등

5. (생략)

③ 교육부장관 및 여성가족부장관은 법 제68조제1항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교육감·교육장에게 위임한다.

1. (생략)

2. 법 제29조의4제1항제1호 및 제4호에 따른 취업제한대상자 취업 등의 점검·확인

3. 법 제29조의5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취업제한대상자에 대한 해임요구 및 아동관련기관 폐쇄요구 등

4. (생략)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및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68조제1항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위임한다.

1. 법 제29조의4제1항제2호 및 제5호에 따른 취업제한대상자 취업 등의 점검·확인

2. 법 제29조의5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취업제한대상자에 대한 해임요구 및 아동관련기관 폐쇄요구 등

3. (생략)

86)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7조(성범죄의 경력자 점검·확인) ① 여성가족부장관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성범죄로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받은 자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을 운영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고 있는지를 직접 또는 관계 기관 조회 등의 방법으로 연 1회 이상 점검·확인하여야 한다.

1. 교육부장관: 제56조제1항제2호의 기관 중 「고등교육법」 제2조의 학교

2. 행정안전부장관: 제56조제1항제20호의 공공시설

3. 여성가족부장관: 제56조제1항제4호의 청소년 보호·재활센터, 같은 항 제6호의 이주배경청소년지원센터 및 같은 항 제18호의 가정방문 등 학습교사 사업장

4. 삭제 <2023. 4. 11.>

5. 경찰청장: 제56조제1항제14호의 경비업을 행하는 법인

② (생략)

③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성범죄로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을 운영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고 있는지를 직접 또는 관계 기관 조회 등의 방법으로 연 1회 이상 점검·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제2항에 해당하는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 17. (생략)

④ 교육감은 성범죄로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을 운영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고 있는지를 직접 또는 관계 기관 조회 등의 방법으로 연 1회 이상 점검·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제2항에 해당하는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이하 생략)

한 개정안 제29조의4제7항의 내용은, 취업제한 명령이 범죄자에 대한 사회 내 처우의 한 유형으로서 형벌 그 자체가 아니라 보안 처분의 성격을 가지는 것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점에서 해당 사무가 지방 이양되더라도 정부에서 정한 엄격하고 통일된 기준에 맞추어 시행되도록 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이며, 이와 함께 점검 결과의 종합적 관리의 필요성도 있는 만큼, 긍정적인 입법조치로 보임.

□ 한편, 2024. 2. 6. 「아동복지법」 개정(시행 2024. 8. 7.)으로 아동 학대 관련 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은 경우 일정기간 취업을 제한하는 기관에 ‘산후조리원’이 추가되었으므로, 개정안 제29조의4제3항에도 이를 반영하여야 할 필요가 있겠고, 개정안 제29조의4제2항 중 관계 중앙행정기관이 설치하여 운영하는 아동관련기관의 경우 그 의미상 “관계 중앙행정기관이 설치하여 운영하거나 설립 인·허가 또는 신고를 관할하는 아동관련기관”으로 수정할 필요가 있겠음.

□ 개정안에 대하여 보건복지부는 중앙행정기관의 권한·사무를 자치단체에 이양하여 사무처리 주체를 명확히 하고 자치분권 확대 및 지역 행정수요에 효율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으로, 「아동복지법」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지자체장이 취업제한 점검·확인을 하여야 하는 기관에 산후조리원 추가가 필요하다는 입장임.

15. 아동학대에 정당한 사유 없이 아동에 대하여 편의 제공을 거부하거나 차별하는 것을 포함(한정애의원안 제17조의2 신설 및 제3조제7호, 제75조제2항)

가. 개정안의 주요 내용

□ 개정안은 ‘정당한 사유 없이 아동에 대하여 편의 제공을 거부하거나 차별하는 것’을 아동학대의 범위에 포함되도록 하고, 재화·용역 등의 제공에 있어서 아동차별금지의무를 위반한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7조의2 신설 및 제3조제7호, 제75조제2항).

현행	개정안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6. (생략) 7. “아동학대”란 <u>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u> <u><신설></u>	제3조(정의) ----- -----. 1. ~ 6. (현행과 같음) 7. ----- <u>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u> ----- -----. <u>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u>

<신 설> <신 설> 7의2. ~ 11. (생 략) <신 설> 제75조(과태료) ① (생 략) ② 아동관련기관의 장이 제29조의3제5항을 위반하여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을 확인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 설> <신 설> ③ · ④ (생 략)	<u>정신적 · 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u> <u>나.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u> <u>다. 정당한 사유 없이 아동에 대하여 편의 제공을 거부하거나 차별하는 것</u> 7의2. ~ 11. (현행과 같음) <u>제17조의2(재화 · 용역 등의 제공에 있어서 아동 차별 금지) 재화 · 용역 등의 제공자는 정당한 이유 없이 아동을 해당 재화 · 용역 등의 이용에서 배제하여서는 아니 된다.</u> 제75조(과태료) ① (현행과 같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 1. 제17조의2를 위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아동을 재화 · 용역 등의 이용에서 배제한 자 2. 제29조의3제5항을 위반하여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을 확인하지 아니한 아동관련기관의 장 ③ · ④ (현행과 같음)
---	--

나. 주요 검토 사항

□ 노키즈존(No Kids Zone)은 아동의 출입을 금지하는 곳으로서 일반적으로 아동을 동반하는 고객의 출입을 제한하는 음식점, 카페 등을 의미하는데, 2022년 현재 노키즈존으로 운영한다고 밝힌 카페, 음식점 등 사업장은 전국적으로 542곳(경기 80곳, 제주 78곳, 서울 65곳 등)으로 조사한 연구⁸⁷⁾가 있고, 노키즈존에 대한 신고나 허가 절차가 없어 조사에 포함되지 않은 곳이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실제로는 이보다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되는 실정임.

□ 노키즈존 운영에 대해서는 영업의 자유, 아동으로 인한 사고 및 피해 발생과 배상책임 예방, 매장 환경 및 분위기 유지 등을 이유로 찬성하는 입장과, 아동 및 동반 고객에 대한 차별, 아동 양육에 부정적 환경 조성 및 저출산 대응 정책에 역행, 아동의 정서 발달에 악영향 등을 이유로 반대하는 입장이 나뉘고 있는바, 유엔 아동권리위원회는 아동의 출입을 제한하는 노키즈존을 차별로 간주한 바 있고, 국가인권위원회 역시 일정 연령 이하의 아동을 일률적으로 제한하는 영업장에 대하여 합리적 이유가 없는 차별행위로 판단한 바 있음⁸⁸⁾.

- 구체적으로, 2017년 국가인권위원회는 파스타, 스테이크 등 아동들이 선호하는 음식을 판매하는 식당에서 13세 이하 아동의 이용을 일률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나이를 이유로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차별행위라고 판단하였으며, 2023년 백화점 휴게시설에 10세 미만

87) 제주연구원, 「우리나라 노키즈존 현황과 쟁점」, 2023. 8.

88) 김아름, 「노키즈존 운영 실태와 향후 과제」, 『육아정책포럼』, 2023.

유·아동에 대한 일률적 출입 제한에 대해서도 이는 차별이라는 판단을 내린 바 있음.

- 한편, 현행 「아동복지법」(제3조제7호)은 ‘아동학대’를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음.
- 개정안은 이에 더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아동에 대하여 편의 제공을 거부하거나 차별하는 것’을 ‘아동학대’로 포함시키도록 정의 규정을 개정(안 제3조제7호 다목)하고, 재화·용역 등의 제공자로 하여금 정당한 이유 없이 아동을 해당 재화·용역 등 이용에서 배제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원칙 규정(안 제17조의2)과 함께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여 실효성을 담보하고 있는바, 아동 친화적 환경 조성으로 사회 구성원 간 공존을 지향하는 취지로 이해됨.
- 다만, 노키즈존을 둘러싸고 사회적으로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아동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편의 제공을 거부·차별하는 행위를 ‘아동학대’로 규정하여 제재하기보다는 사회의 각 구성원이 상생·공존하면서 아동에게 친화적인 문화를 조성하는 방안을 먼저 모색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이러한 관점에서 아동학대 및 과태료 규정은 현행대로 하면서, 개정안 중 안 제17조의2(재화·용역 등의 제공에 있어서 아동차별 금지)만을 반영하는 것도 가능할 것으로 보임.

□ 참고로, 서울시에서는 키즈 오케이존 사업을 추진하여 업체를 대상으로 어린이용 식기 및 의자 등 물품 구입비를 일부 지원하는 것을 추진하고 있으며,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2023년 9월 “제주특별자치도 아동출입제한업소 확산 방지 및 인식개선을 위한 조례”를 통과시킨 바 있음.

< 제주특별자치도 아동출입제한업소 확산 방지 조례 주요 내용 >

실태조사(제5조)	· 제한업소 지정실태와 아동의 차별 해소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원사업(제6조)	· 제한업소 확산 방지를 위한 활동 · 아동의 공공장소 이용에 대한 보호자 교육 및 홍보 · 아동의 차별을 해소하기 위한 인식 개선 활동 · 아동에 친화적인 업소 활성화 사업 등

□ 개정안에 대하여 보건복지부는 아동에게 편의 제공을 거부·차별하는 행위를 아동학대로 규정하는 것은 아동학대 범위를 과도하게 확대할 수 있고, 노키즈존에 대한 사회적으로 다양한 의견을 고려하여 이를 일괄 금지하기보다 여러 당사자가 상생·공존하고 아동에게 친화적인 사회문화를 조성하는 방안을 우선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임.

그리고, 충청남도는 개정 취지에 공감하나 아동 생활에 필수가 아닌 재화·용역을 배제하는 것까지 아동학대로 개입·처벌하려는 것은 사적 경제 영역에서 시장의 자유나 활동을 위축시킬 우려가 있다는 입장임.

문 의 처
02)6788-5500

참고 1) 여성가족부 소관 보호시설 퇴소 청소년 자립지원제도 현황(정춘생의원안, 김남희의원안 관련)				
지원대상	지원기준	경제적 지원	사후관리	법적근거
보호종료 청소년	청소년쉼터·청소년자립지원생활관 퇴소일로부터 3년 이내인 자로서 과거 3년 동안 2년 이상 보호받고 (직전 6개월은 연속보호) 18세 이후 퇴소한 자	▲자립지원 수당 (월40만원 5년)	자립생활관 기반 사례관리, 자립지원 실시 (6개월)	「청소년복지지원법」 제32조의3(자립지원)
가정폭력 피해자	가정폭력피해여성 및 동반가족(보호시설 입소 후 퇴소자) 중 입소기간이 4개월 이상 ※ 조건 미충족 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선정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 가능	▲자립정착금 (500만원)	미실시	「가정폭력방지법」 제 7조의5(보호시설에 대한 보호비용 지원)
성폭력 피해자	19세 미만으로 입소 후 6개월 이상 경과하고, 퇴소 당시 나이가 19세에 도달한 자 ※ 취업 또는 대학 입학 등으로 조기퇴소 하는 경우, 18세 이상인 자에게 지급 가능	▲자립지원금 1인당 500만원 ▲자립지원수당 월 50만원, 최대 5년	미실시	「성폭력방지법 및 동법 시행령」 제5조(보호시설에 대한 보호비용 지원)
성매매 피해자	(시설퇴소기준) 19세 미만까지 시설 이용 가능, 1회에 한하여 2년 연장 ※ 입소자 희망 및 법정대리인의 동의로 지원시설 상담원의 의견을 들어 입소기간 연장	지원제도 없음	미실시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등에 관한법률」 제11조

[참고 2]	보건복지부 소관 보호시설 퇴소 아동 자립지원제도 현황(김남희의원안 관련)			
법안 대상	입소대상 (아동 입소 가능여부)	지원 가능여부	퇴소 후 지원내역	법적근거
장애인복지 시설	○ 장애인 중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부양자가 없거나 부양을 받을수 없는 자 중 조건*을 충족한 자 * (아동) 서비스지원종합조사 기능제한점수 190점(중증장애인거주시설) 혹은 110점(장애유형별 거주시설 등) 이상 점수	지원 가능 * (시설내) 자립훈련비 지급, 자립지원팀 운영 등 ** (시설외) 자립생활센터 등 운영	▲ 장애수당 * 자립준비청년 특화 지원제도 부재 ▲ 장애인 자립생활지원센터	▲ 「장애인복지법」 제53조(자립생활 지원) ▲ 「장애인복지법」 제54조(자립생활 지원센터) ▲ 「장애인복지법」 제85조(장애인복지시설) 중 장애인자립생활 지원시설 설치 예정 *2025.7.3.시행
노숙인 재활시설· 복지시설	○ 「노숙인복지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노숙인* * 상당한 기간 동안 일정한 주거 없이 생활하는 사람 중 18세 이상인 자 ○ (아동 입소 여부) 불가능 * 노숙인 자녀 등이 거주하는 경우가 있으나, 법적으로 지원 미대상	해당사항 없음 (아동입소 불가능)	해당사항 없음 (아동입소 불가능)	해당사항 없음 (아동입소 불가능)
정신건강 요양시설 및 재활시설	○ (요양시설)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에 의하여 정신질환자로 진단된 자 ○ (재활시설) 15세 이상으로 정신의료기관의 정기치료를 받고 있는 정신질환자로서 사회적응훈련이 필요하고 자해 및 타해의 우려가 적은 자 *아동청소년정신건강지원시설: 아동·청소년법 연령기준에 의해 실시	지원제도 없음 * 정신질환자 중 장애인에 해당하는 경우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지원 가능	(장애인해당시) ▲ 장애수당 * 단, 자립청년 특화 지원제도 부재 ▲ 장애인 자립생활지원센터	▲ 근거법(「정신건강복지법」) 상 퇴소 아동·청소년 대상 자립지원 규정 부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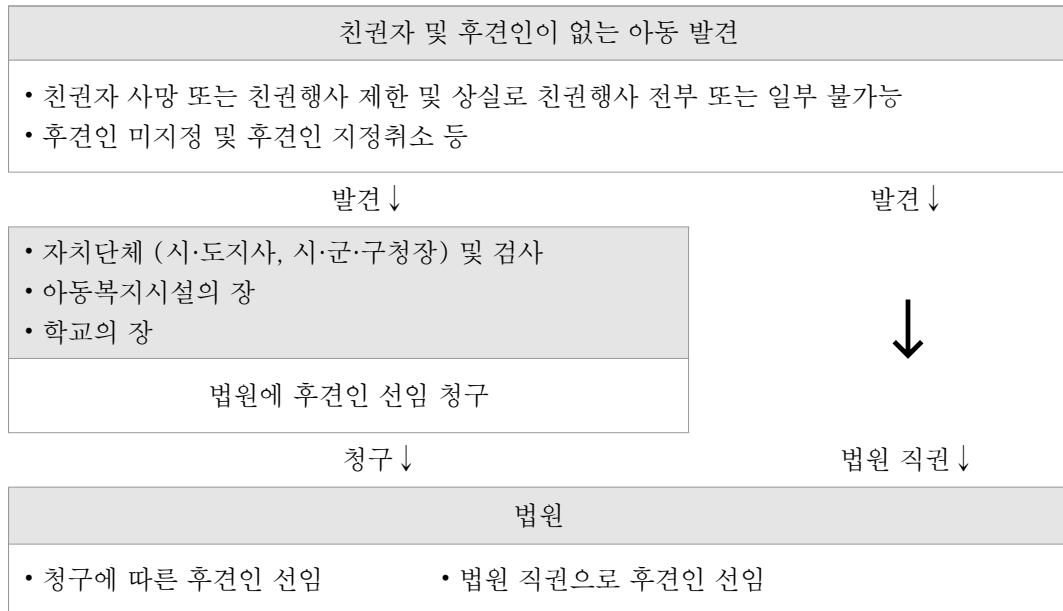
【참고3】

미성년후견인 선임 청구 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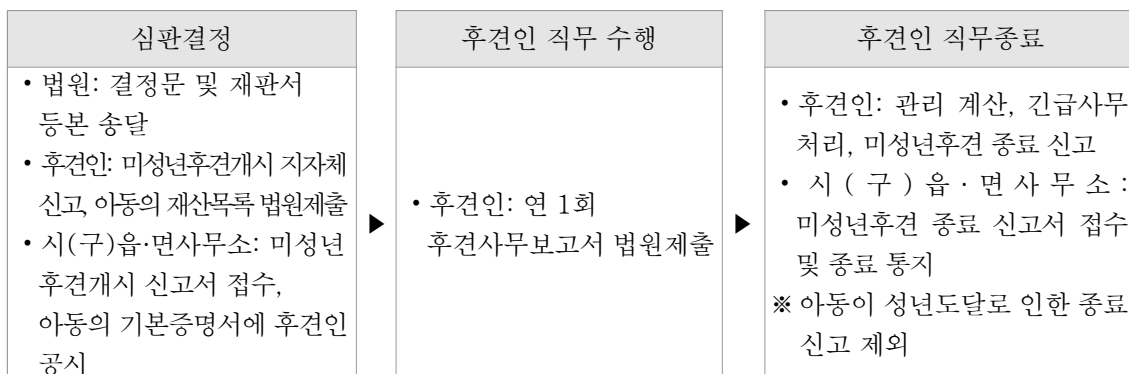
(「민법」 제928조, 제932조, 「아동복지법」 제19조, 제20조)

- (후견개시) 친권자가 없거나 친권의 전부 또는 일부 행사 불가능 시 미성년후견인 선임
- (청구)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검사, 아동복지시설의 장, 학교의 장은 친권자 및 후견인 없는 아동을 발견한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법원에 후견인 선임청구
- (임시 후견인) 법원은 후견인이 없는 아동의 후견인을 선임하기 전까지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아동보호 전문 기관의 장, 가정위탁지원센터의 장 및 보장원의 장이 임시로 그 아동의 후견인 역할을 하게 할 수 있음

[미성년후견인 선임 청구]



□ 미성년후견인 선임 이후 절차



【참고4】	후견인 선임 없이도 위탁 부모에게 제한된 범위의 법정대리권을 부여하는 해외 사례(독일 및 영국)
--------------	--

□ 독일

- 위탁부모가 후견인이 아니더라도 ‘작은 친권(Kleines Sorgerecht)’ 행사가 가능한바, 작은 친권에는 일상적 사무 결정·대리권, 사회보장급여 청구권, 긴급대리권 등이 포함됨.

□ 영국

- 실제 아동을 양육하는 자는 친권이나 후견권과 무관하게 아동을 위해 합리적인 행위라면 무엇이든 가능함. 일본은 위탁부모는 재판 없이도 신상에 관한 권한 일부 행사가 가능함⁸⁹⁾.

< 위탁보호자의 법정대리권 관련 독일 및 영국의 입법례 >

구분	입법례
독일 민법	1688절 위탁보호자의 의사결정권 (1) 아동이 장기간 위탁 양육에서 생활하는 경우, 위탁 양육자는 일상생활에 관한 사항을 결정하고 그러한 문제에서 부모의 책임을 질 권리가 있다. 그것은 아동의 근로소득을 관리하고 아동에 대한 유지보수, 보험, 연금 및 기타 사회보장수당을 청구 및 관리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다. 제1629조 (1)항 문장은 그에 따라 적용된다.
영국 1989 아동법	3 Meaning of "parental responsibility". (5) A person who- (a) does not have parental responsibility for a particular child; but (b) has care of the child, may (subject to the provisions of this Act) do what is reasonable in all the circumstances of the case for the purpose of safeguarding or promoting the child's welfare. (a) 특정 아동에 대한 부모의 책임이 없고, (b) 아이를 돌보는 사람은 아동의 복지를 보호하거나 증진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건의 모든 상황에서 합리적인 행위를 할 수 있다.

89) 보건복지부, 보호대상아동 후견제도 개선방안(2023. 4. 13.)